함께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433호
2017. 10. 19.(목)





서울특별시

목 차

◈고 시

제2017-365호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4
제2017-366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1
제2017-368호 도시관리계획(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34
제2017-36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40
제2017-370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지형도면 고시 (연세대학교) ····· 42
제2017-37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 인가 고시 ····· 48
제2017-372호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 49
제2017-374호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56

◈공 고

제2017-2095호 가변차로 및 가로변버스전용차로 폐지 행정예고 ····· 58
제2017-2116호 2017년도 제14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 59
제2017-2129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 61
제2017-2144호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안 행정예고 ····· 63
제2017-2145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 64
제2017-2152호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 및 등록변경 사항 공고 ····· 65
제2017-2155호「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 행정예고 ····· 69
제2017-2156호 변상금 및 행정대집행비용 체납금 등 공시송달 공고 ····· 70
제2017-2158호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동작구 노량진동 37-1번지 일원 역세권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 76
제2017-2165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 83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17-211호 서울특별시의회 안건 제출 공고 ····· 84

◈ 구 고 시

제2017-11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성동구) ····· 85
제2017-104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 인가 고시(노원구) ····· 86
제2017-146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마포구) ····· 87
제2017-72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양천구) ····· 88
제2017-16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구로구) ····· 89
제2017-89호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금천구) ····· 92
제2017-76호 도시관리계획 [서울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관악구) ····· 94
제2017-13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강남구) ····· 96
제2017-14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폐지) 고시(송파구) ····· 101
제2017-173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강동구) ····· 103

◈ 구 공 고

제2017-128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용산구) ····· 104
제2017-1136호 도시계획시설(북한산 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강북구) ····· 106
제2017-842호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노원구) ····· 113
제2017-845호 도시계획시설사업(경춘제2녹지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노원구) ····· 115
제2017-1030호 도시계획시설(경의제2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서대문구) ····· 116
제2017-1229호 도시관리계획[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양천구) ····· 119
제2017-1446호 문래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안) 열람공고(영등포구) ····· 122
제2017-119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금천구) ····· 132
제2017-1302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서초구) ····· 136

◈ 사업소고시

제2017-19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137
제2017-19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 137

◈ 기 타

제2017-219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138
제2017-220호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 139

◈ 정 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63호 ····· 140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5호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4호(2009.01.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08호(2011.04.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8호(2011.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16호(2011.10.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4호(2012.08.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62호(2014.07.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21호(2015.05.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31호(2015.10.2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및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 제5항,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변경)

명 칭	유 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주거지형	성북구 길음동 624, 971 일대	1,248,888.93	감) 35.6	1,248,853.33	기존지구 : 950,143.13㎡ (변경없음) 확장지구 : 298,745.80㎡ → 298,710.20㎡ (변경 : 35.6㎡ 감소)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변경)
○ 당 초 : 2015년 12월 → 변 경 : 2020년 12월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4.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가. 확장지구(298,710.2㎡)외 기타 촉진계획은 변경사항 없음
나. 확장지구(298,710.2㎡)내 길음2 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

1)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98,745.8	감) 35.6	298,710.2	100.0	-
주거	소 계	224,639.5	-	224,639.5	75.2	-
	주거용지	209,415.5	-	209,415.5	70.1	존치관리구역 2, 3포함
	복합용지	15,224.0	-	15,224.0	5.1	-
기반 시설	소 계	66,829.7	감) 121.9	66,707.8	22.3	-
	도 로	29,724.8	증) 221.8	29,946.6	10.0	-
	공 원	19,036.8	-	19,036.8	6.4	3개소(근린공원 421내 어린이도서관 798㎡ 포함)
	경관녹지	5,430.0	감) 343.7	5,086.3	1.7	5개소
	공공공지	11,536.6	-	11,536.6	3.9	5개소 (1개소 :공공공지와 주차장 중복결정)
	사회복지시설	1,101.5	-	1,101.5	0.3	1개소
기타	소 계	7,276.6	증) 86.3	7,362.9	2.5	-
	종교시설	7,014.6	증) 75.0	7,089.6	2.4	8개소
	근린생활시설	262.0	증) 11.3	273.3	0.1	1개소

※ 길음2 재정비촉진구역 구역계 조정에 따른 변경 (감 35.6㎡)

2) 인구 · 주택수용계획 (변경없음) : 17,152인 / 6,352세대

3) 기반시설 설치계획(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변경없음)

4) 공원 · 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변경)

구 분		명 칭	개 소	면 적(㎡)	비 고
기 정	합 계		14개소	36,003.4	-
	공원 시설	소 계	3개소	19,036.8	-
		근린공원	1개소	14,675.4	-
		소공원	2개소	4,361.4	-
	녹지 시설	경관녹지	5개소	5,430.0	-
	공공공지 시설	공공공지	6개소	11,536.6	공공공지 1개소 : 주차장 중복결정 공공공지 2개소 : 미래형 공공용지
변 경	합 계		13개소	35,659.7	-
	공원 시설	소 계	3개소	19,036.8	-
		근린공원	1개소	14,675.4	-
		소공원	2개소	4,361.4	-
	녹지 시설	경관녹지	5개소	5,086.3	1개소 면적감소
	공공공지 시설	공공공지	5개소	11,536.6	공공공지 1개소 : 주차장 중복결정 공공공지 2개소 : 미래형 공공용지

※ 길음2 재정비촉진구역 내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경관녹지 축소 (감 343.7㎡)
※ 공공공지 개소 오기정정 (6개소 → 5개소)

5) 교통계획 (변경없음)

6) 경관계획 (변경없음)

7)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주택재개발 부문 (변경없음)

8)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 분		면적(㎡)			사업방식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298,745.8	감) 35.6	298,710.2	-
촉진구역	소계	212,115.8	감) 35.6	212,080.2	-
	길음1촉진구역	107,165.5	-	107,165.5	주택재개발
	길음2촉진구역	104,950.3	감) 35.6	104,914.7	주택재개발
존치구역	소계	86,630.0	-	86,630.0	
	길음1존치관리구역	19,023.0	-	19,023.0	자체개발
	길음2존치관리구역	7,769.0	-	7,769.0	
	길음3존치관리구역	59,838.0	-	59,838.0	주택재개발사업완료 (동부센트레빌)

※ 길음2 재정비촉진구역 구역계 조정에 따른 변경 (감 35.6㎡)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가)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나) 길음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04,950.3	감) 35.6	104,914.7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04,950.3	감) 35.6	104,914.7	100.0

※ 길음2 재정비촉진구역 구역계 조정에 따른 변경 (감 35.6㎡)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 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가) 기반시설 설치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30,873.3	감) 121.9	30,751.4	100.0	-
정비 기반 시설	도로	17,374.8	증) 221.8	17,596.6	57.2	-
	공원	7,769.5	-	7,769.5	25.3	공원 내 도서관 포함 (조성 후 기부채납)
	녹지	5,430.0	감) 343.7	5,086.3	16.5	5개소
	공공공지	299.0	-	299.0	1.0	1개소

나) 기반시설 설치비용 분담기준 (변경없음)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14) 기타계획(에너지순환계획, 방재계획, 특성화계획) (변경없음)

15)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없음)

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7) 구역별 재정비촉진계획

가)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나) 길음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구분	촉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길음2 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성북구 길음동 498번지 일원	104,950.3	감) 35.6	104,914.7	-

(2) 인구 · 주택수용계획 (변경없음)

(3) 재정비촉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104,950.3	감) 35.6	104,914.7	100.0	-
정비 기반 시설	소계	30,873.3	감) 121.9	30,751.4	29.3	-
	도로	17,374.8	증) 221.8	17,596.6	16.8	-
	공원	7,769.5	-	7,769.5	7.4	공원 내 도서관 포함 (조성 후 기부채납)
	녹지	5,430.0	감) 343.7	5,086.3	4.8	5개소
	공공공지	299.0	-	299.0	0.3	1개소
택지	2-1	71,423.0	-	71,423.0	68.1	-
기타	소계	2,654.0	증) 86.3	2,740.3	2.6	-
	2-2	709.0	-	709.0	0.7	종교시설
	2-3	1,193.0	-	1,193.0	1.1	종교시설
	2-4	490.0	증) 75.0	565.0	0.5	종교시설
	2-5	262.0	증) 11.3	273.3	0.3	근린생활시설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변경)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502	20~23	집산도로	476	길음동 1262-276	길음동 21-86	일반도로		서고 504 (2009.1.2)	-
변경	중로	1	502	20~23	집산도로	476	길음동 1262-276	길음동 21-86	일반도로		서고 504 (2009.1.2)	도로선형 변경
기정	중로	1	503	20~21	보조간선	724 (630)	미아동 560-30	미아동 126-337	일반도로		서고 387 (1978.8.3)	-
기정	중로	2	504	15	집산도로	25	길음동 21-278	길음동 21-257	일반도로		서고 504 (2009.1.2)	-
변경	중로	3	504	12	집산도로	25	길음동 21-278	길음동 21-257	일반도로		서고 504 (2009.1.2)	도로폭원 변경
기정	중로	2	505	12~15	집산도로	719 (424)	길음동 486-7	길음동 1044	일반도로		서고 263 (2002.6.27)	-
변경	중로	2	505	12~15	집산도로	719 (424)	길음동 486-7	길음동 1044	일반도로		서고 263 (2002.6.27)	도로선형 변경
기정	중로	3	515	12	국지도로	37	길음동 1263-2	길음동 1278-1	일반도로		서고 504 (2009.1.2)	-
기정	소로	3	530	4~9	국지도로	245	길음동 478-28	길음동 489-77	일반도로		서고 504 (2009.1.2)	-
변경	소로	3	530	4~9	국지도로	245	길음동 478-28	길음동 489-77	일반도로		서고 504 (2009.1.2)	도로선형 변경

※ 연장의 ( )는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내 편입연장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1-502	중로1-502	• 일부구간 도로선형 변경	• 길음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일부 도로선형 및 폭원 조정
중로2-505	중로2-505	• 일부구간 도로선형 변경	
중로2-504	중로3-504	• 도로폭원 변경 - 15m→12m(감 3m)	• 연접한 도로폭원에 맞춰 폭원축소
소로3-530	소로3-530	• 일부구간 도로선형 변경	• 구역외 중로2-505의 장기미집행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획지2-3(종교시설)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선형조정

□ 공원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421	공원	근린공원	길음동 909 일원	14,675.4 (5,196.5)	-	14,675.4 (5,196.5)	서고 504 (2009.1.2)	근린공원421내 어린이도서관 798㎡ 포함
기정	422	공원	소공원	길음동 499-21 일원	2,573.0	-	2,573.0	〃	-

※ 면적의 ( )는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내 편입면적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7	녹지	경관녹지	길음동 478-14 일원	230.0	-	230.0	서고 504 (2009.1.2)	-
기정	38	녹지	경관녹지	길음동 1278-5 일원	2,848.4	-	2,848.4	〃	-
기정	가	녹지	경관녹지	길음동 476-6 일원	700.1	-	700.1	서고 108 (2011.4.28)	-
변경	나	녹지	경관녹지	길음동 485-6 일원	958.0 (853.5)	-	895.0 (853.5)	〃	지구외 41.5㎡
변경	다	녹지	경관녹지	길음동 489-17 일원	798.0	감) 343.7	454.3	〃	-

※ 면적의 ( )는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내 편입면적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나	경관녹지	• 변경 - 면적 : 958.0㎡ → 895.0㎡	• 면적오기 정정
다	경관녹지	• 변경 - 면적 : 798.0㎡ → 454.3㎡	• 소로3-530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감 343.7㎡)

□ 공공공지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86	공공공지	길음동 509-6 일원	292.0 (6)	-	292.0 (6)	서고 504 (2009.1.2.)	-
기정	라	공공공지	길음동 21-60 일원	293.0	-	293.0	서고 108 (2011.4.28)	-

※ 면적의 ( )는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내 편입면적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없음)

□ 건축시설계획 (변경)

<table>
<tr><th rowspan="3">결정
구분</th><th colspan="2">구역구분</th><th colspan="2">가구 또는
획지구분</th><th rowspan="3">위치</th><th rowspan="3">용적률
산정용
연면적(㎡)</th><th rowspan="3">주된용도</th><th rowspan="3">건폐율
(%)</th><th rowspan="3">용적률
(%)</th><th colspan="2">높이(층)</th></tr>
<tr><th rowspan="2">명칭</th><th rowspan="2">면적
(㎡)</th><th rowspan="2">명칭</th><th rowspan="2">면적
(㎡)</th><th>평균</th><th>최고</th></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5">기정</td><td rowspan="5">길음2
재정비
촉진
구역</td><td rowspan="5">104,950.3</td><td>2-1</td><td>71,423.0</td><td>길음동
498 일원</td><td>213,835.04</td><td>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td><td>30%
이하</td><td>300%</td><td>-</td><td>39</td></tr>
<tr><td>2-2</td><td>709.0</td><td>길음동
503-55 일대</td><td rowspan="4">건축법규에
따름</td><td>종교시설</td><td colspan="4" rowspan="4">건축법규에 따름</td></tr>
<tr><td>2-3</td><td>1,193.0</td><td>길음동
487-10 일대</td><td>종교시설</td></tr>
<tr><td>2-4</td><td>490.0</td><td>길음동
21-64 일대</td><td>종교시설</td></tr>
<tr><td>2-5</td><td>262.0</td><td>길음동
21-62 일대</td><td>근린생활시설</td></tr>
<tr><td rowspan="5">변경</td><td rowspan="5">길음2
재정비
촉진
구역</td><td rowspan="5">104,914.7</td><td>2-1</td><td>71,423.0</td><td>길음동
498 일원</td><td>213,835.04</td><td>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td><td>30%
이하</td><td>300%</td><td>-</td><td>39</td></tr>
<tr><td>2-2</td><td>709.0</td><td>길음동
503-55 일대</td><td rowspan="4">건축법규에
따름</td><td>종교시설</td><td colspan="4" rowspan="4">건축법규에 따름</td></tr>
<tr><td>2-3</td><td>1,193.0</td><td>길음동
487-10 일대</td><td>종교시설</td></tr>
<tr><td>2-4</td><td>565.0</td><td>길음동
21-64 일대</td><td>종교시설</td></tr>
<tr><td>2-5</td><td>273.3</td><td>길음동
21-62 일대</td><td>근린생활시설</td></tr>
<tr><td colspan="3">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9">• 총세대수 : 2,352세대(임대 353세대 : 역세권 완화분 280세대 제외)
- 전용면적 60㎡ 이하 : 1,632세대(69.4%)[장기전세주택 199세대 포함]
- 전용면적 60~85㎡ 이하 : 671세대(28.5%)[장기전세주택 81세대 포함]
- 전용면적 85㎡ 초과 : 49세대(2.1%)
※ 장기전세주택 280세대</td></tr>
<tr><td colspan="3">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td><td colspan="9">•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td></tr>
</table>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없음)

(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4,950.3	감) 35.6	104,914.7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04,950.3	감) 35.6	104,914.7	100.0

※ 길음2 재정비촉진구역 구역계 조정에 따른 변경 (감 35.6㎡)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502	20~23	집산도로	476	길음동 1262-276	길음동 21-86	일반도로		서고 504 (2009.1.2)	-
변경	중로	1	502	20~23	집산도로	476	길음동 1262-276	길음동 21-86	일반도로		서고 504 (2009.1.2)	도로선형 변경
기정	중로	2	504	15	집산도로	25	길음동 21-278	길음동 21-257	일반도로		서고 504 (2009.1.2)	-
변경	중로	3	504	12	집산도로	25	길음동 21-278	길음동 21-257	일반도로		서고 504 (2009.1.2)	도로폭원 변경
기정	중로	2	505	12~15	집산도로	719 (424)	길음동 486-7	길음동 1044	일반도로		서고 263 (2002.6.27)	-
변경	중로	2	505	12~15	집산도로	719 (424)	길음동 486-7	길음동 1044	일반도로		서고 263 (2002.6.27)	도로선형 변경
기정	소로	3	530	4~9	국지도로	245	길음동 478-28	길음동 489-77	일반도로		서고 504 (2009.1.2)	-
변경	소로	3	530	4~9	국지도로	245	길음동 478-28	길음동 489-77	일반도로		서고 504 (2009.1.2)	도로선형 변경

※ 연장의 ( )는 재정비촉진구역 내 편입연장
※ 상기 사항 외 변경사항 없음

□ 공원 (변경없음)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나	녹지	경관녹지	길음동 485-6 일원	958.0 (853.5)	-	895.0 (853.5)	서고 108 (2011.4.28)	지구외 41.5㎡
변경	다	녹지	경관녹지	길음동 489-17 일원	798.0	감) 343.7	454.3	〃	-

※ 연장의 ( )는 재정비촉진구역 내 편입면적
※ 상기 사항 외 변경사항 없음

□ 공공공지 (변경없음)

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길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 변경 결정 도서」에 명시 : 게재생략

6.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7) 및 성북구청 주거정비과(☎02-2241-2854)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재정비촉진지구결정도(기정)



■ 재정비촉진지구결정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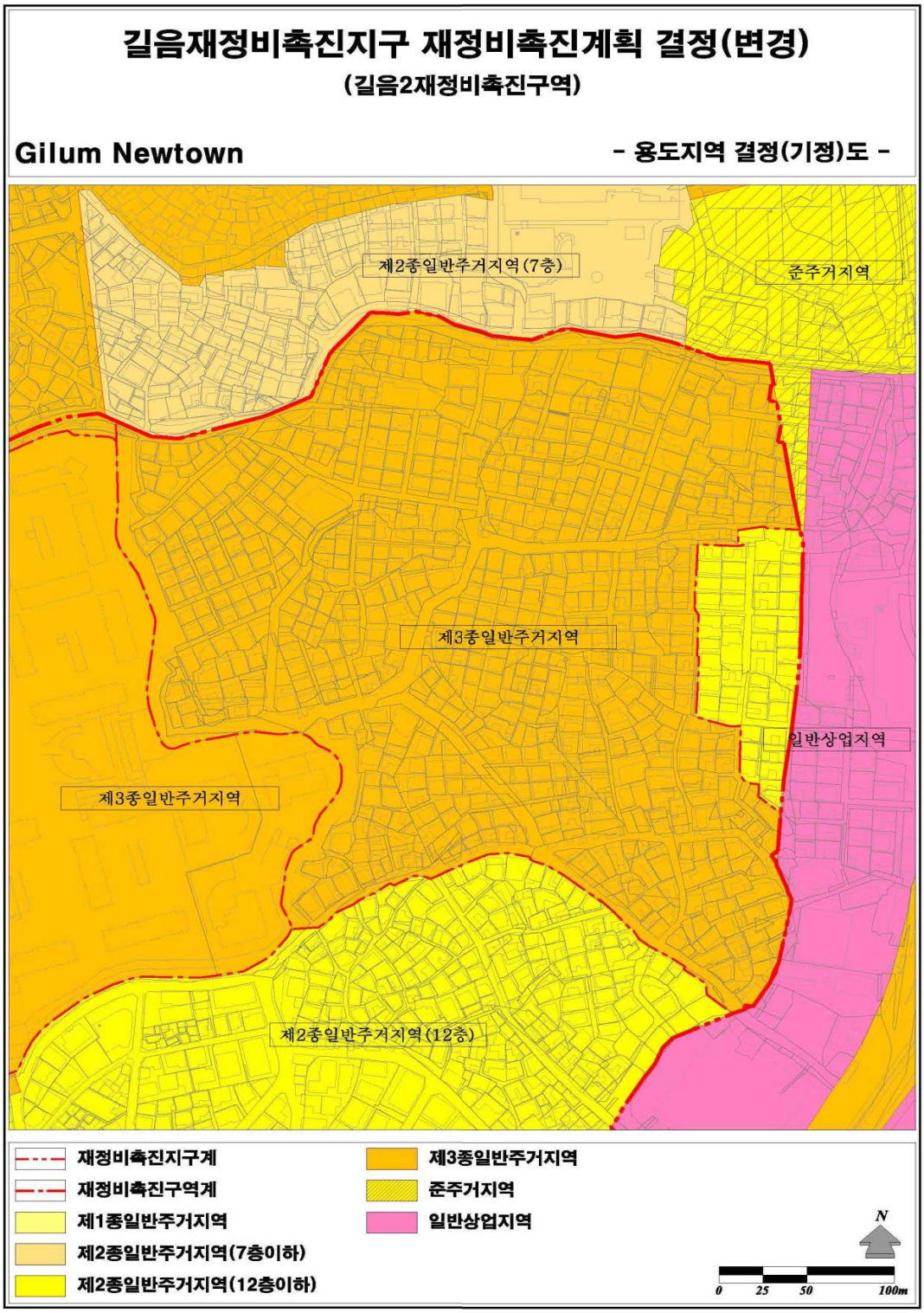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기정)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Gilum Newtown
- 토지이용계획(기정)도 -
숭 인 로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길음2존치관리구역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길음3존치관리구역
공
공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지구계
재정비촉진구역계
주거용지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경관녹지
공공공지
복 사회복지시설
공 공 원
N
0 25 50 1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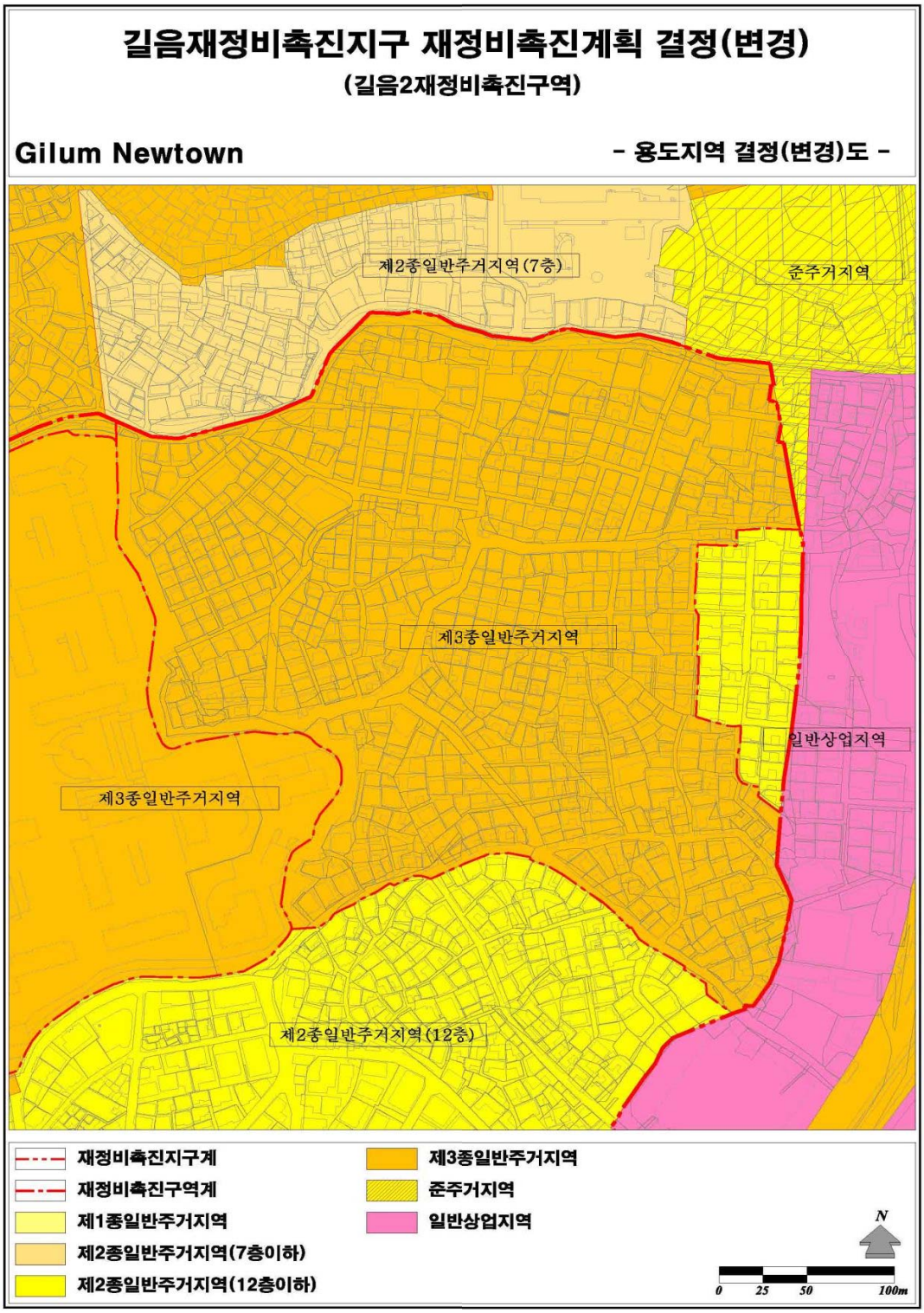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Gilum Newtown
- 토지이용계획(변경)도 -
승 인 로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길음2존치관리구역
동부센트레빌 아파트
길음3존치관리구역
공
공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지구계
재정비촉진구역계
주거용지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경관녹지
공공공지
복 사회복지시설
공 공 원
N
0 25 50 1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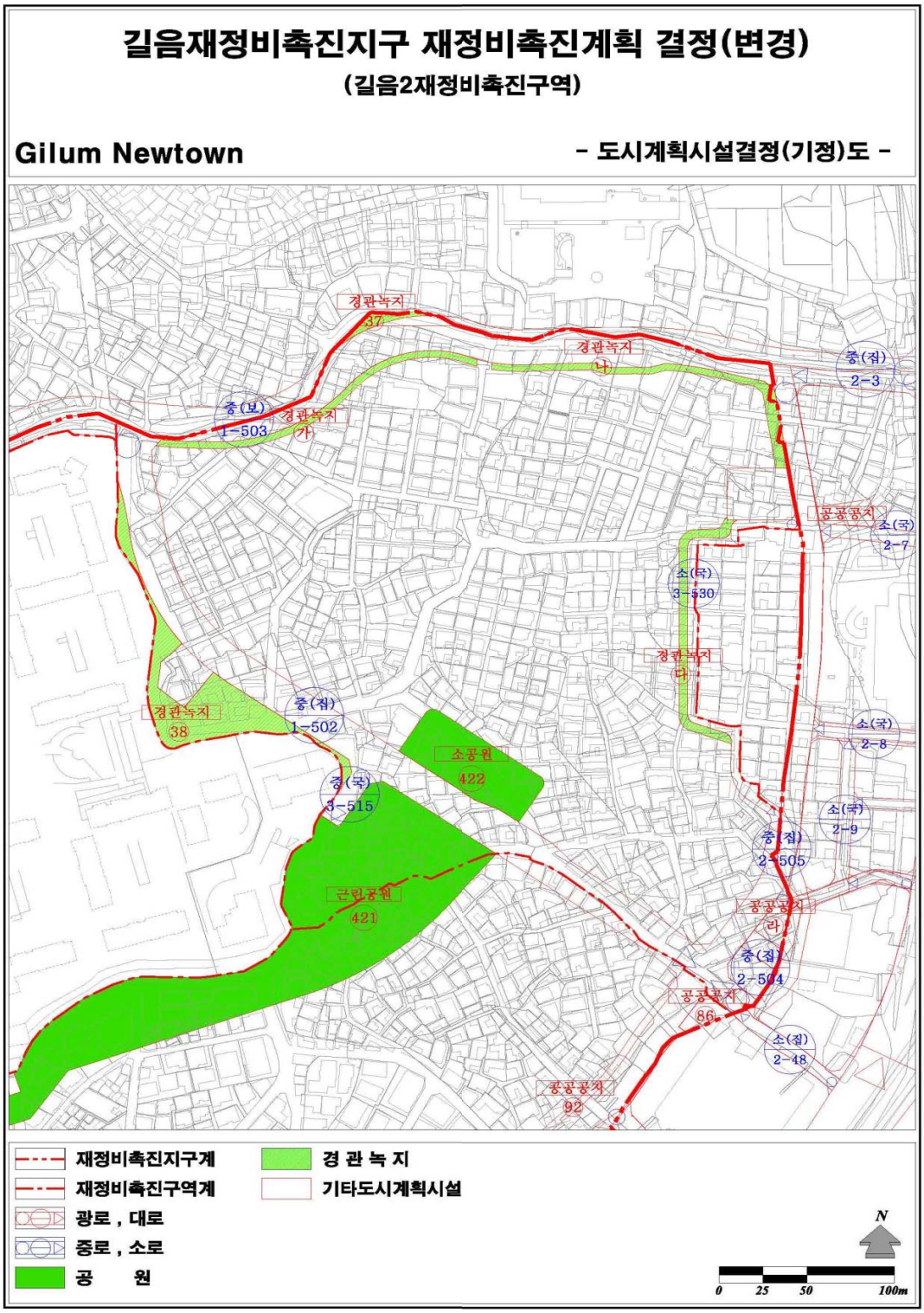
■ 용도지역결정도(기정)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Gilum Newtown
-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재정비촉진지구계
재정비촉진구역계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N
0 25 50 1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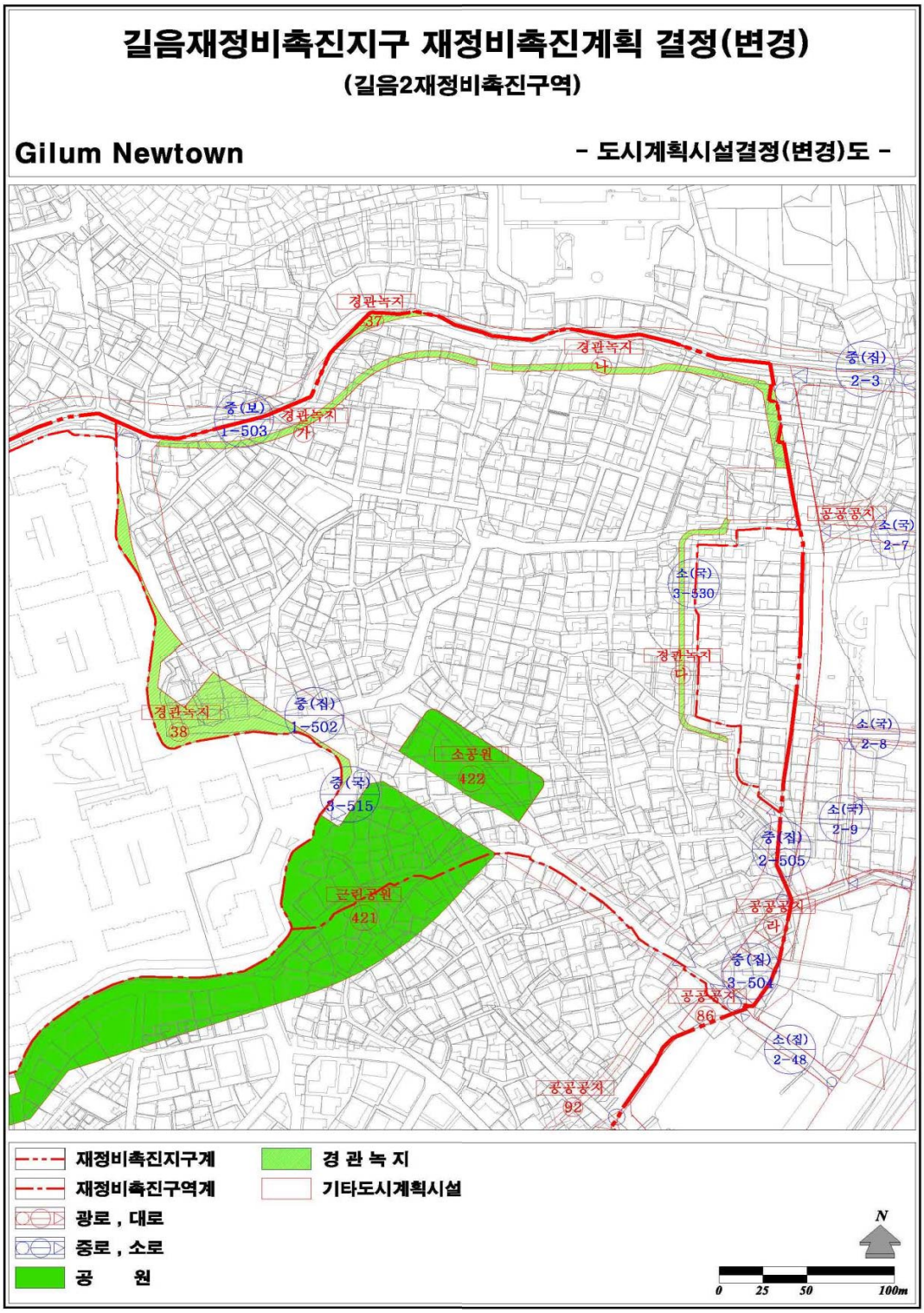
■ 용도지역결정도(변경)


길음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길음2재정비촉진구역)
Gilum Newtown
-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준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재정비촉진지구계
재정비촉진구역계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N
0 25 50 100m

■ 도시계획시설결정도(기정)



■ 도시계획시설결정도(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6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 357호(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25호(2009.6.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8호(2010.3.1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6호(201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1호(2011.1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43호(2012.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1호(2013.2.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1호(2013.5.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0호(2014.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15호(2015.5.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9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6호(2017.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3(2017.7.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32(2017.9.14)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자양4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하여,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자양4재정비촉진구역)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3.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

명칭	유형	위치	면적(㎡)			지정목적
			기정	변경	변경후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중심지형	광진구 구의동246번지, 자양동680번지 일대	385,356.7	감)4.2	385,352.5	• 도시정비체계 및 기반시설 재정비로 지역중심의 개발여건을 마련하고 상업·업무·문화기능 등의 복합시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자양4 재정비 촉진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구역면적 오차정정

Ⅱ.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년도 (변경없음)

- 기준년도 : 2015년
- 목표년도 : 2025년

Ⅲ.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Ⅳ.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85,356.7	감)4.2	385,352.5	100.0	
개발용지	소계	244,173.5	-	244,173.5	63.4	
	첨단업무복합	73,247.0 [5,684.0]	-	73,247.0 [5,684.0]	19.0	광진구 통합청사 (복합화)
	첨단업무지원	38,551.0	-	38,551.0	10.0	
	상업업무복합	94,995.0	-	94,995.0	24.7	
	주거복합	37,380.5	-	37,380.5	9.7	
공공용지	소계	141,183.2	감)4.2	141,179.0	36.6	
	공공문화복합	14,411.0	-	14,411.0	3.7	現 광진구청
	공원	14,177.7	-	14,177.7	3.7	
	광장	1,897.1	-	1,897.1	0.5	
	공공공지	543.4	-	543.4	0.1	
	주차장	1,037.0	-	1,037.0	0.3	
	입체공공시설	1,500.0	-	1,500.0	0.4	복합문화시설
	도로	107,617.0	감)4.2	107,612.8	27.9	

※ [ ]는 용지내 공공청사(광진구 통합청사)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 면적임
※ 자양4 재정비 촉진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구역면적 오차정정

2) 인구·주택 수용계획 (변경없음)

3)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

구 분		면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41,183.2	감)4.2	141,179.0	36.6	
교통 시설	소계	108,654.0	감)4.2	108,649.8	28.2	
	도로	107,617.0	감)4.2	107,612.8	27.9	
	주차장	1,037.0	-	1,037.0	0.3	
공간 시설	소계	16,618.2	-	16,618.2	4.3	
	공원	14,177.7	-	14,177.7	3.7	
	광장	1,897.1	-	1,897.1	0.5	
	공공공지	543.4	-	543.4	0.1	
공공·문화 체육시설	소계	15,911.0 (5,684)	-	15,911.0 (5,684)	4.1	
	입체공공시설 (복합문화시설)	1,500.0	-	1,500.0	0.4	
	광진구청	14,411.0	-	14,411.0	3.7	
	입체적공공시설 (공공청사)	(5,684)	-	(5,684)	(1.5)	

※ ( )는 공공청사(광진구 통합청사)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 면적임
※ 자양4 재정비 촉진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구역면적 오차정정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존계획 (변경없음)

5) 교통계획 :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공람도서(Ⅰ.교통계획)에 명시」

6) 경관계획 :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공람도서(Ⅰ.경관계획)에 명시」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변경)

지구명	구분	구역명	동명	지번	면 적(㎡)			정비유형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680-63일대	78,147	-	78,147	전면개발	
	변경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778-6 일대	10,816.4	감)4.2	10,812.2	전면개발	확정측량에 따른 구역면적 오차정정
	기정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구의동	244-5 일대	9,871.6	-	9,871.6	전면개발	

※ 자양4 재정비 촉진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구역면적 오차정정

○ 구역별 계획 (변경)

구역명	위 치	면적(㎡)			건폐율 (%)	용적률(%)		최고 높이 (m)	주용도	사업방식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준	최대				
자양1재정비 촉진구역	자양동 680-63번지 일원	78,147.0	-	78,147.0	60이하	173	492.9	150	업무, 주거	도시환경 정비사업	변경없음
자양4재정비 촉진구역	자양동 778-6번지 일원	10,816.4	감)4.2	10,812.2	60이하	321	500	100	주거	도시환경 정비사업	변경
구의3재정비 촉진구역	구의동 244-5번지 일원	9,871.6	-	9,871.6	60이하	250	400	100	주거	도시환경 정비사업	변경없음

※ 자양4 재정비 촉진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구역면적 오차정정

8)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변경)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사업의 종류	비고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85,356.7	감)4.2	385,352.5	-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114,101.0	감)4.2	114,096.8	-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680-63번지 일원	78,147.0	-	78,147.0	도시환경정비	
	자양3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777번지 일원	15,266.0	-	15,266.0	도시계획시설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자양동 778-6번지 일원	10,816.4	감)4.2	10,812.2	도시환경정비	확정측량에 따른 구역면적 오차정정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구의동 244-5번지 일원	9,871.6	-	9,871.6	도시환경정비	
존치정비구역	소계		55,151.0	-	55,151.0	-	
	자양1 존치정비구역	자양동 680-81번지 일원	55,151.0	-	55,151.0	도시환경정비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적 (㎡)			사업의 종류	비고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존치 관리 구역	소계		151,091.0	-	151,091.0	-	
	자양1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769-10번지 일대	1,133.0	-	1,133.0	개별건축사업	
	자양2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779-11번지 일대	1,805.0	-	1,805.0	〃	
	자양3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779-5번지 일대	9,506.0	-	9,506.0	〃	
	자양4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219-35번지 일대	5,823.0	-	5,823.0	〃	
	자양5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219-2번지 일대	1,098.0	-	1,098.0	〃	
	자양6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26-4번지 일대	2,024.0	-	2,024.0	〃	
	자양7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27-3번지 일대	6,100.0	-	6,100.0	〃	
	자양8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80-68번지 일대	3,491.0	-	3,491.0	〃	
	자양9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80-65번지 일대	47,824.7	-	47,824.7	〃	
	자양10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219-25번지 일대	2,649.0	-	2,649.0	〃	
	자양11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216-11번지 일대	7,821.9	-	7,821.9	〃	
	자양12 존치관리구역	자양동 680-88번지 일대	7,331.4	-	7,331.4	〃	
	구의1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52-14번지 일대	7,718.0	-	7,718.0	〃	
	구의2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52-16번지 일대	7,593.0	-	7,593.0	〃	
	구의3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6-14번지 일대	10,611.0	-	10,611.0	〃	
	구의4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6-36번지 일대	8,379.0	-	8,379.0	〃	
	구의5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3-4번지 일대	17,706.0	-	17,706.0	〃	
	구의6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4-15번지 일대	2,068.0	-	2,068.0	〃	
	구의7 존치관리구역	구의동 244-6번지 일대	409.0	-	409.0	〃	
기타 존치구역	도로 등	-	65,013.7	-	65,013.7	-	

※ 자양4 재정비 촉진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구역면적 오차정정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변경)

○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없음)

○ 자양3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없음)

○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816.4	감)4.2	10,812.2	100.0
주거지역	준주거	9,698.1	감)4.2	9,693.9	89.7
상업지역	일반상업	1,118.3	-	1,118.3	10.3

※ 자양4 재정비 촉진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구역면적 오차정정

○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변경없음)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 계획 (변경)

○ 기 정

구역명		구역면적 (㎡)	획지면적 (㎡)	계획기반시설(㎡)						국공유지(㎡)		순부담 면적 (㎡)	순부담률 (%)
				합 계	도 로	공 원 및 광 장	공공 공지	공공 청사	입체 공공시설	계획 기반 시설내	기존 기반 시설내		
합 계		169,252	113,373.8	61,562.2	30,387.7	9,036.1	543.4	20,095 [5,646]	1,500 [4,028]	972.6 (18,550.6)	14,482.4 (57,291.4)	46,107.2 (−14,279.8)	27.2 (−8.4)
촉진 구역	소 계	114,101	74,822.8	44,962.2	18,811.7	5,512.1	543.4	20,095 [5,646]	−	972.6 (5,084.6)	14,482.4 (26,876.4)	29,507.2 (13,001.2)	25.8 (11.3)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78,147	58,614	25,217 {26,584}	15,401	4,132	−	5,684 [5,646] {7,051}	−	− (4,112)	− (12,394)	25,217 (8,711) {26,584}	32.2 (11.1) {34.0}
	자양3 재정비촉진구역	15,266	−	15,266	855	−	−	14,411	−	948	14,318	−	−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10,816.4	8,315.4	2,501	1,566	소공원 862	73	−	−	24.6	164.4	2,312	21.4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9,871.6	7,893.4	1,978.2	989.7	518.1	470.4	−	−	−	−	1,978.2	20.04
존치 정비 구역	소 계	55,151	38,551	16,600	11,576	3,524	−	−	1,500 [4,028]	− (13,466)	− (30,415)	16,600 (−27,281)	30.1 (−49.5)
	자양1 존치정비구역	55,151	38,551	16,600	11,576	3,524	−	−	1,500 [4,028]	− (13,466)	− (30,415)	16,600 (−27,281)	30.1 (−49.5)

주1) [ ]:입체공공시설 연면적

주2) ( ):공공청사(동부지원, 우편집중국, 지식정보센터)를 기존 국공유지로 간주하여 산정한 순부담률

주3) { }:자양1촉진구역 입체공공시설 건립비용 중 기부채납에 대한 부지환산 면적(1,367㎡)을 포함한 면적임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서울특별시, 2014.8)

○ 변 경

구역명		구역면적 (㎡)	획지면적 (㎡)	계획기반시설(㎡)						국공유지(㎡)		순부담 면적 (㎡)	순부담률 (%)
				합 계	도 로	공 원 및 광 장	공공 공지	공공 청사	입체 공공시설	계획 기반 시설내	기존 기반 시설내		
합 계		169,247.8	113,373.8	61,558	30,383.5	9,036.1	543.4	20,095 [5,646]	1,500 [4,028]	972.6 (18,550.6)	14,482.4 (57,291.4)	46,103 (−14,284)	27.2 (−8.4)
촉진 구역	소 계	114,096.8	74,822.8	44,958	18,807.5	5,512.1	543.4	20,095 [5,646]	−	972.6 (5,084.6)	14,482.4 (26,876.4)	29,503 (12,997)	25.8 (11.3)
	자양1 재정비촉진구역	78,147	58,614	25,217 {26,584}	15,401	4,132	−	5,684 [5,646] {7,051}	−	− (4,112)	− (12,394)	25,217 (8,711) {26,584}	32.2 (11.1) {34.0}
	자양3 재정비촉진구역	15,266	−	15,266	855	−	−	14,411	−	948	14,318	−	−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10,812.2	8,315.4	2,496.8	1,561.8	소공원 862	73	−	−	24.6	164.4	2,307.8	21.3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9,871.6	7,893.4	1,978.2	989.7	518.1	470.4	−	−	−	−	1,978.2	20.04
존치 정비 구역	소 계	55,151	38,551	16,600	11,576	3,524	−	−	1,500 [4,028]	− (13,466)	− (30,415)	16,600 (−27,281)	30.1 (−49.5)
	자양1 존치정비구역	55,151	38,551	16,600	11,576	3,524	−	−	1,500 [4,028]	− (13,466)	− (30,415)	16,600 (−27,281)	30.1 (−49.5)

※ 자양4 재정비 촉진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구역면적 오차정정

12)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변경없음)

13)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변경)

○ 기정

구분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대상	비고
1단계	2009년	2011년	2017년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010년	2013년	2017년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2단계	2018년	2019년	2024년	자양1, 자양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 변경

구분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대상	비고
1단계	2009년	2011년	2017년	구의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010년	2013년	2018년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2단계	2018년	2019년	2024년	자양1, 자양3 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14) 광고물 관리계획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Ⅰ. 17 광고물관리계획)에 명시(변경없음)

15)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Ⅰ. 18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에 명시(변경없음)

16) 방재계획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Ⅰ. 19 방재계획)에 명시(변경없음)

17) 정보화계획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Ⅰ. 20 정보화계획)에 명시(변경없음)

18) 에너지 순환계획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도서」(Ⅰ. 21 에너지순환계획)에 명시(변경없음)

19)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 (변경)

가) 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나) 자양3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다)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변경)

(1)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변경)

구분	재정비촉진사업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778-6번지 일대	10,816.4	감)4.2	10,812.2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오차 정정

※ 자양4 재정비 촉진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구역면적 오차정정

(2) 정비계획 (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0,816.4	감)4.2	10,812.2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계	2,501	감)4.2	2,496.8	23.1	
	도 로	1,566	감)4.2	1,561.8	14.4	
	소 공 원	862	-	862	8.0	
	공공공지	73	-	73	0.7	
택지 (획지)	소계	8,315.4	-	8,315.4	76.9	
	획 지	8,315.4	-	8,315.4	76.9	

※ [ ]는 공공청사(광진구 통합청사)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 면적임
※ 자양4 재정비 촉진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구역면적 오차정정

○ 도로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위치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기정	소로	2	구의 1	8	국지 도로	100 (170)	자양동779-2 (자양동779-2)	자양동779 (자양동779-24)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기정	소로	3	구의 1	6~8	국지 도로	216 (346)	자양동778-18 (자양동778-18)	자양동776 (자양동777-1)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오차 정정

※ [ ]는 재정비촉진지구내 연장을 의미함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변경)

○ 건축시설계획 (기정)

<table>
<tr><td colspan="2">구역구분</td><td colspan="2">가구 또는
획지구분</td><td rowspan="2">위치</td><td rowspan="2">연면적
(㎡)</td><td rowspan="2">주된용도</td><td rowspan="2">건폐율
(%)</td><td rowspan="2">최대
용적률
(%)</td><td rowspan="2">높이(m)</td></tr>
<tr><td>명칭</td><td>면적(㎡)</td><td>명칭</td><td>면적(㎡)</td></tr>
<tr><td>자양4
재정비
촉진구역</td><td>10,816.4</td><td>A-1</td><td>8,315.4</td><td>자양동
778-6
번지 일대</td><td>64,779.31
이하</td><td>판매,업무,
공동주택</td><td>60
이하</td><td>500
(444)
이하</td><td>100이하</td></tr>
<tr><td rowspan="3">건축물
용도별 비율</td><td colspan="2">구분</td><td>주거</td><td>상업</td><td colspan="3">업무</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합계</td><td>오피스텔</td><td>사무소</td></tr>
<tr><td colspan="2">SHIFT 포함</td><td>73.12%</td><td>17.18%</td><td>9.70%</td><td>8.92%</td><td>0.78%</td></tr>
<tr><td colspan="2">SHIFT 미포함</td><td>69.98%</td><td>19.18%</td><td>10.84%</td><td>9.97%</td><td>0.87%</td></tr>
<tr><td>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8">○건립규모
•일반주택: 215세대
– 전용면적 60㎡미만: 8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183세대
– 전용면적 85㎡초과: 24세대
•임대주택: 27세대
– 전용면적 60㎡이하(임대주택): 27세대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밀도계획의 증가용적률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22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13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 9세대

○건설비율
•일반주택: 81.4%
•임대주택: 18.6%

○건립예정세대수: 264세대</td></tr>
<tr><td>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td><td colspan="8">○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구의로변: 5m
-소로2-구의1, 소로3-구의1변: 3m
○구의·자양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td></tr>
</table>

※주택의 규모는 사업시행인가 시 관련 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는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안) 미 적용시 최대용적률

○ 건축시설계획 (변경)

<table>
<tr><td colspan="2" rowspan="2">구역구분</td><td colspan="2">가구 또는
획지구분</td><td rowspan="2">위치</td><td rowspan="2">연면적
(㎡)</td><td rowspan="2">주된용도</td><td rowspan="2">건폐율
(%)</td><td rowspan="2">최대
용적률
(%)</td><td rowspan="2">높이(m)</td></tr>
<tr><td>명칭</td><td>면적(㎡)</td><td>명칭</td><td>면적(㎡)</td></tr>
<tr><td>자양4
재정비
촉진구역</td><td>10,812.2</td><td>A-1</td><td>8,315.4</td><td>자양동
778-6
번지 일대</td><td>64,779.31
이하</td><td>판매,업무,
공동주택</td><td>60
이하</td><td>500
(444)
이하</td><td>100이하</td></tr>
<tr><td colspan="2" rowspan="3">건축물
용도별 비율</td><td colspan="2">구분</td><td>주거</td><td>상업</td><td colspan="3">업무</td></tr>
<tr><td colspan="2"></td><td></td><td>합계</td><td>오피스텔</td><td>사무소</td></tr>
<tr><td colspan="2">SHIFT 포함</td><td>73.12%</td><td>17.16</td><td>9.72%</td><td>8.92%</td><td>0.80%</td></tr>
<tr><td colspan="2">SHIFT 미포함</td><td colspan="2">69.98%</td><td>19.16</td><td>10.86%</td><td>9.96%</td><td>0.90%</td></tr>
<tr><td colspan="2">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td><td colspan="8">○건립규모
•일반주택: 215세대
– 전용면적 60㎡미만: 8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183세대
– 전용면적 85㎡초과: 24세대
•임대주택: 27세대
– 전용면적 60㎡이하(임대주택): 27세대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밀도계획의 증가용적률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22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13세대
– 전용면적 85㎡이하 : 9세대

○건설비율
•일반주택: 81.4%
•임대주택: 18.6%

○건립예정세대수: 264세대</td></tr>
<tr><td colspan="2">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td><td colspan="8">○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함
-구의로변: 5m
-소로2-구의1, 소로3-구의1변: 3m
○구의 • 자양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td></tr>
</table>

※주택의 규모는 사업시행인가 시 관련 법규상의 세부건축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는 재정비촉진지구 역세권 건축물 밀도계획 조정기준(안) 미 적용시 최대용적률
※ 자양4 재정비촉진구역 확정측량에 따른 구역면적 오차정정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0호(2014.06.26.) 당시 건축설계 중 오피스텔, 판매시설 변경 내용에 따른 건축물 용도별 비율 미반영하여 금회 고시에 수치 정정

라) 구의3재정비촉진구역 (변경없음)

20)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조서 (변경)

구분	지구명	위치	면적(㎡)			최종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광진구 구의동 246번지, 자양동 680번지 일대	385,356.7	감)4.2	385,352.5	서울시고시 제2006-357호 (2006.10.19.)

(2)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	광진구 구의동246번지, 자양동 680번지 일대	385,352.5	재정비촉진지구내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오차에 따른 변경

나)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

(1) 용도지역 결정조서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85,356.7	감)4.2	385,352.5	100.0
소 계		314,132.7	감)4.2	314,128.5	81.5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89,732	-	89,732	23.3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2,953	-	2,953	0.8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	22,933	-	22,933	5.9
	제3종일반주거지역	53,359.2	-	53,359.2	13.8
	준주거지역	145,155.5	감)4.2	145,151.3	37.7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71,224	-	71,224	18.5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	광진구 구의동246번지, 자양동 680번지 일대	준주거지역 : 145,155.5㎡	준주거지역 : 145,151.3㎡	385,352.5	재정비촉진지구내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오차에 따른 변경

다) 용도지구 결정조서 (변경없음)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변경없음)

(1)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구의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구의동 246-1일대	181,187.9	감)4.2	181,183.7	서울시고시 제1996-154호 (1996.6.7)
기정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9존치관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680-65일대	47,824.7	-	47,824.7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기정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 자양1존치정비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광진구 자양동 680-81일대	55,151	-	55,151	서울시고시 제2009-225호 (2009.6.4)

(2)구의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위치	면적(㎡)	변경사유
변경	-	광진구 구의동 246-1일대	181,183.7	재정비촉진지구내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확정측량에 의한 면적오차에 따른 변경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1) 도 로 (변경없음)

(2) 주차장 (변경없음)

(3) 철도 (변경없음)

(4) 광장 (변경없음)

(5) 공원 (변경없음)

(6) 공공공지 (변경없음)

(7) 공공청사 (변경없음)

(8) 문화시설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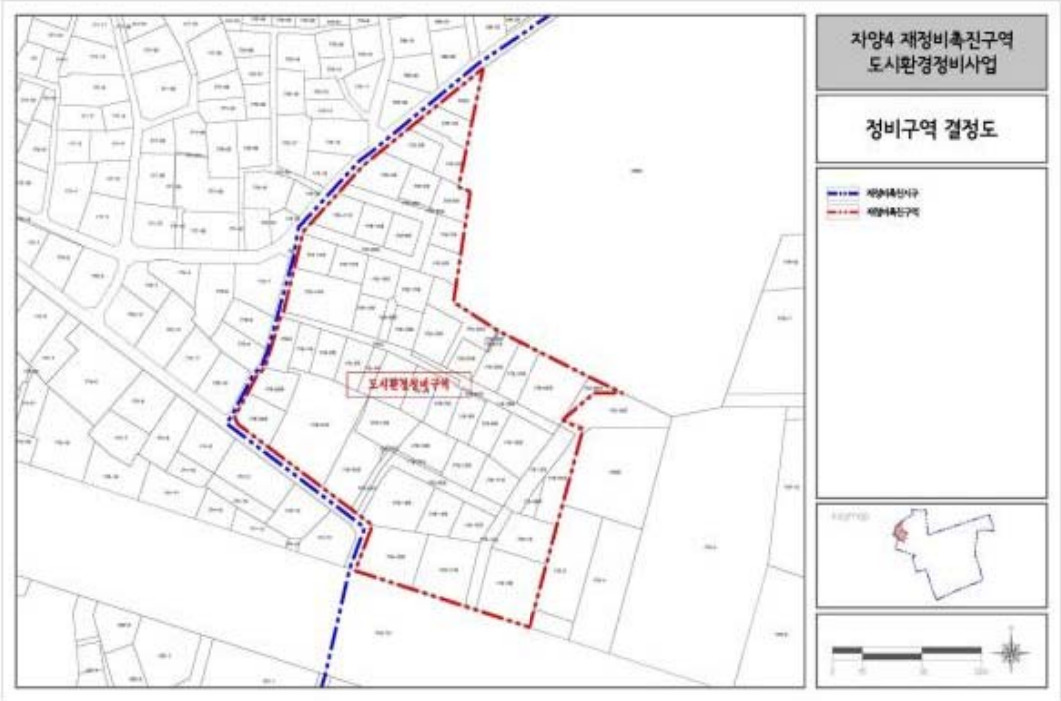
Ⅴ.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도서」에 명시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지형도면(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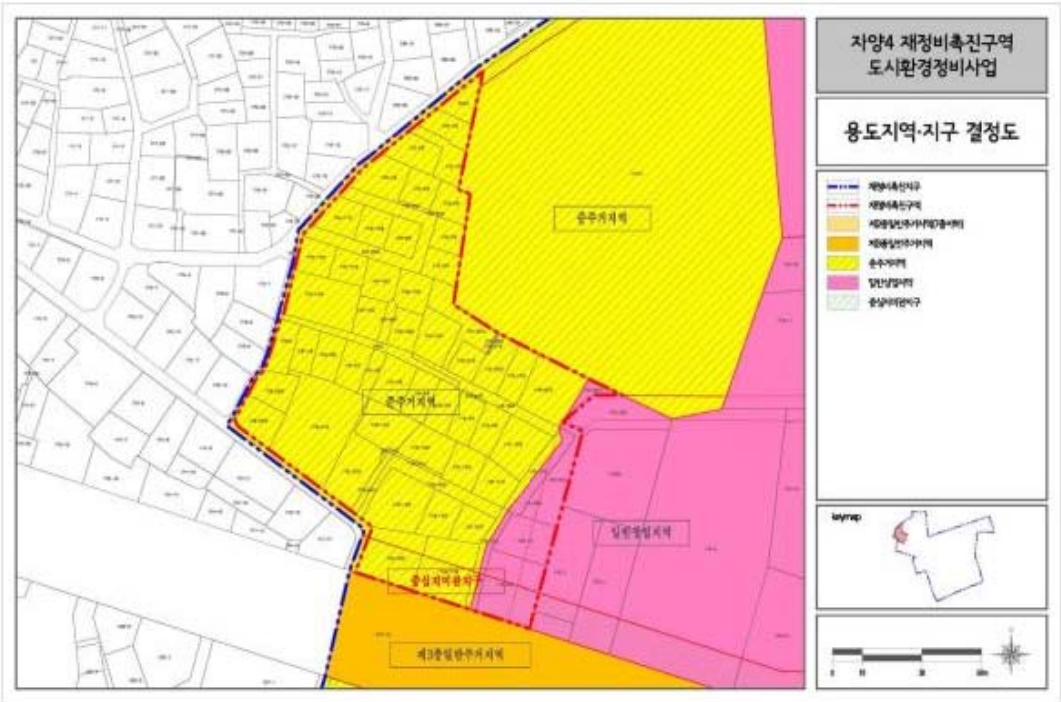
Ⅵ.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 참조 : 생략(비치도서로 갈음)

Ⅶ.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2) 및 광진구 도시계획과(☎02-450-7694)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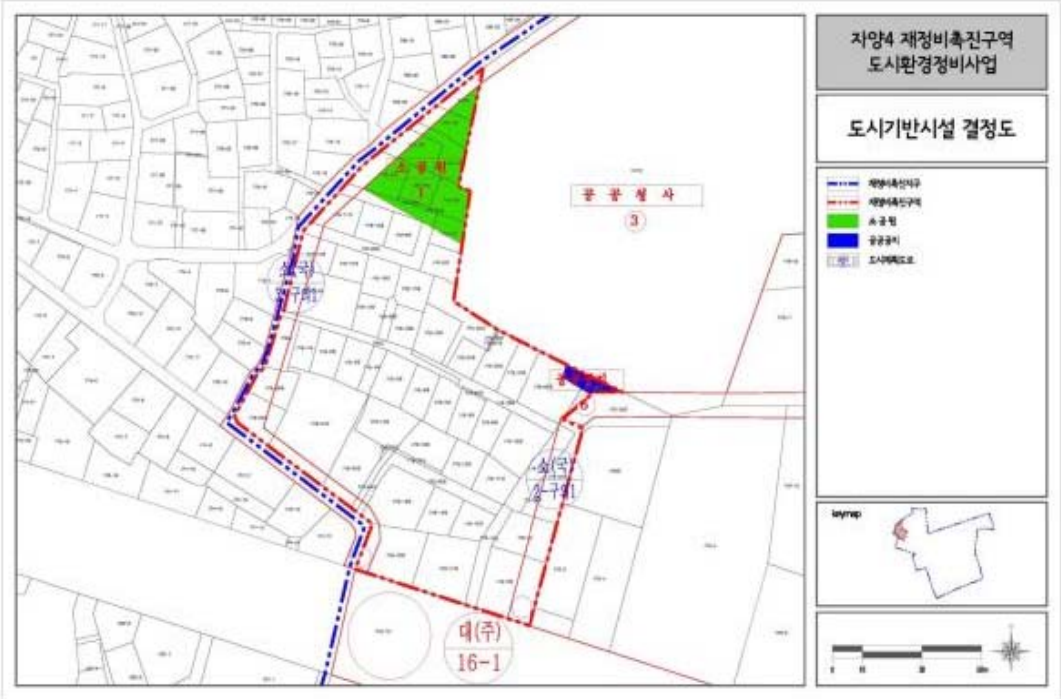
■ 정비구역 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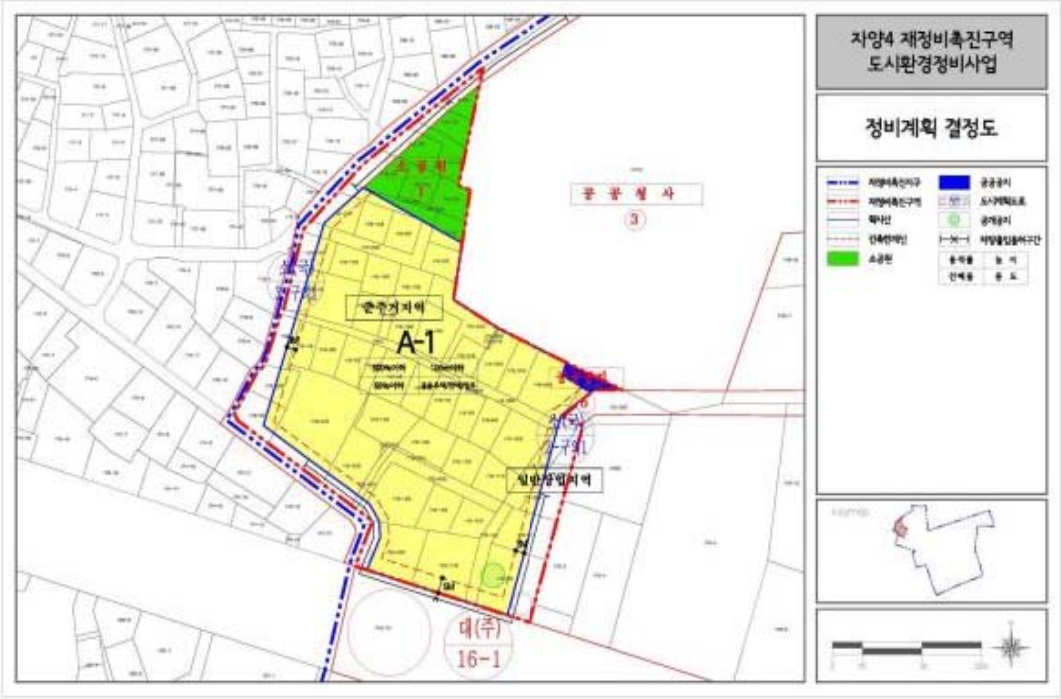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변경없음)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변경없음)



■ 정비계획 결정도(변경없음)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8호

도시관리계획(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1456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7년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9.27.)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양동 1494-3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지하1층 주차장의 기능이 상실되어 주차장(도시계획시설, 공간적범위 결정)을 변경(폐지)하고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가양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강서구 가양동 1456번지 일원	976,515.4	서울시고시 제1996-171호 (1996.06.25.)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976,515.4	-	976,515.4	100.0	
주거지역	소 계	836,740.8	-	836,740.8	85.7	
	제1종일반주거지역	108,203.9	-	108,203.9	11.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103,103.8	-	103,103.8	10.5	
	제2종일반주거지역	36,043.4	-	36,043.4	3.7	
	제3종일반주거지역	589,389.7	-	589,389.7	60.5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21,723.3	-	21,723.3	2.2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540.0	-	540.0	0.1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117,511.3	-	117,511.3	12.0	

2)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시설보호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	시설보호 지 구	공항시설 보호지구	가양동 일원	57,931,000 (847,108)	서고시120 (77.4.22)	

주) ( )는 가양택지개발지구내 면적임

나) 고도지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고도제한 내 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	고도지구	최 고 고도지구	김포공항 주변일대	수평표면 (57.86미만)	29,129,000 (2,384)	서고시120 (77.4.22)	
기정	-	고도지구	최 고 고도지구	김포공항 주변일대	원추표면 (112.86미만)	12,804,000 (844,724)	서고시120 (77.4.22)	

주) ( )는 가양택지개발지구내 면적임

2)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결정(변경)조서

(1) 주차장 : 폐지

■ 주차장 공간적범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높이(m)	최 초 결정일	비고
폐지	④	주차장	가양동 1494-3	1,261.8	지하층 (평균해수면기준 4.09m~11.1m)	서고시 제2013-124호	

■ 주차장 변경(폐지)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④	주차장	• 주차장 폐지	• 당초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건립 시 조성된 지하1층 주차장(도시계획시설, 공간적범위)이 임대주택 입주 후 공영주차장 본연의 기능이 상실되어 주차장을 폐지하고자 함

※ 기타 도시기반시설계획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기정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가양택지 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강서구 가양동 1494-3번지	용도	지정 용도	주차장, 공동주택	
			불허 용도	관련법상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150% 허용용적률 : 200%	
		높이		25m이하	

나) 변경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가양택지 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강서구 가양동 1494-3번지	용도	지정 용도	공동주택	
			불허 용도	관련법상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기준용적률 : 150% 허용용적률 : 200%	
		높이		25m이하	

3)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가)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양택지 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강서구 가양동 1494-3 번지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 – 강서로변 : 3m – 양천길 및 허준길변 : 2m • 이면도로변 : 2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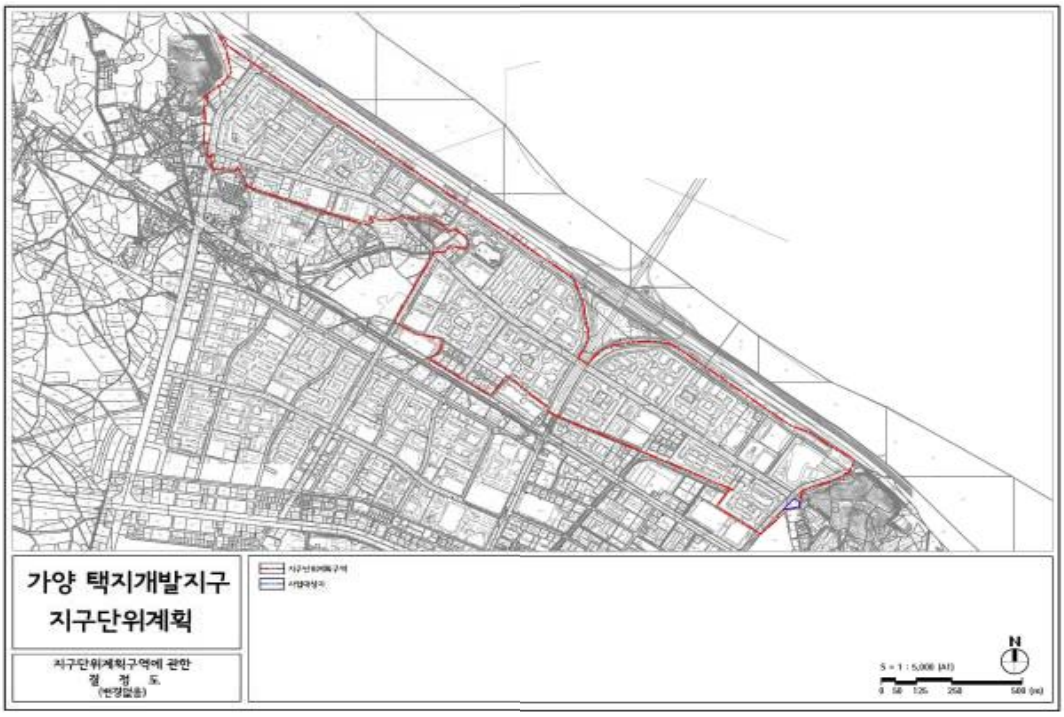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비고
가양택지 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강서구 가양동 1494-3 번지	옥외 광고물 및 간판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준을 준수	※간선도로변 -강서로 양천길 허준길
		외장·재료·색채	• 통일성 유지 • 인접건축물과 조화된 색조사용	
		담장·벽면녹화	• 6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생울타리·투시형휀스 설치 및 차폐식재 권장 • 인공구조물 설치시 전면부에 최소 20~30cm정도의 선형 식재공간확보 • '서울특별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활성화' 기법 준수	
		기타구조물	• 폭15m이상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옥탑, 냉각탑, 에어컨실외기 등의 건축설비 도로변 노출금지	

라.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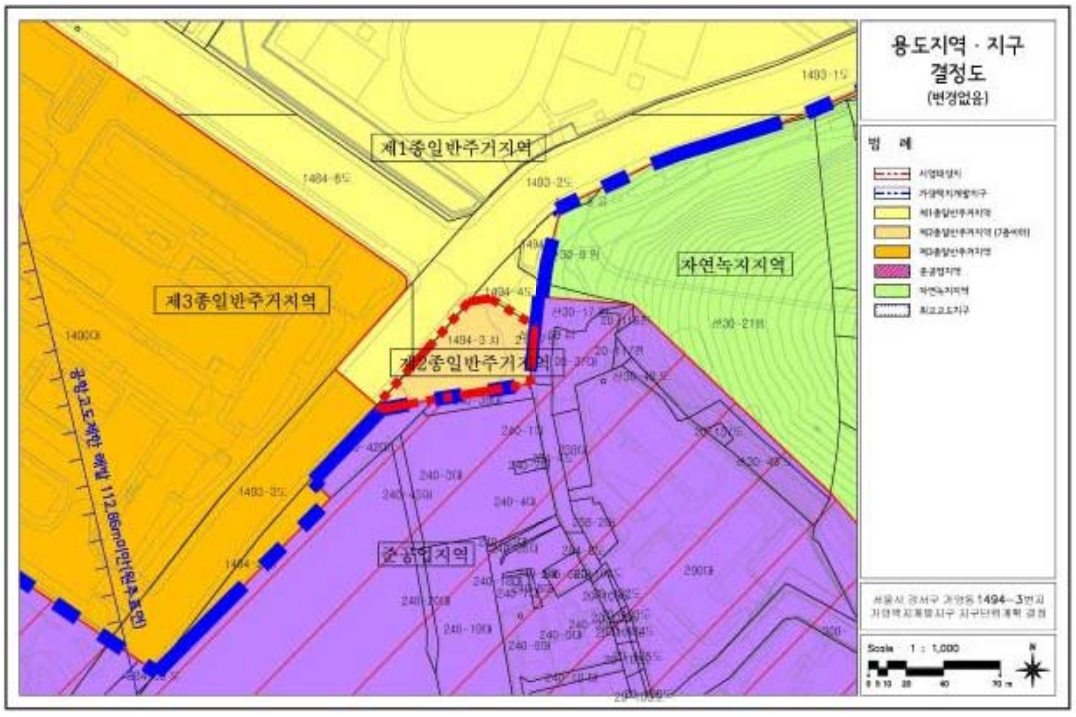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참조 (세부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참조)
※ 첨부된 결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02-2133-705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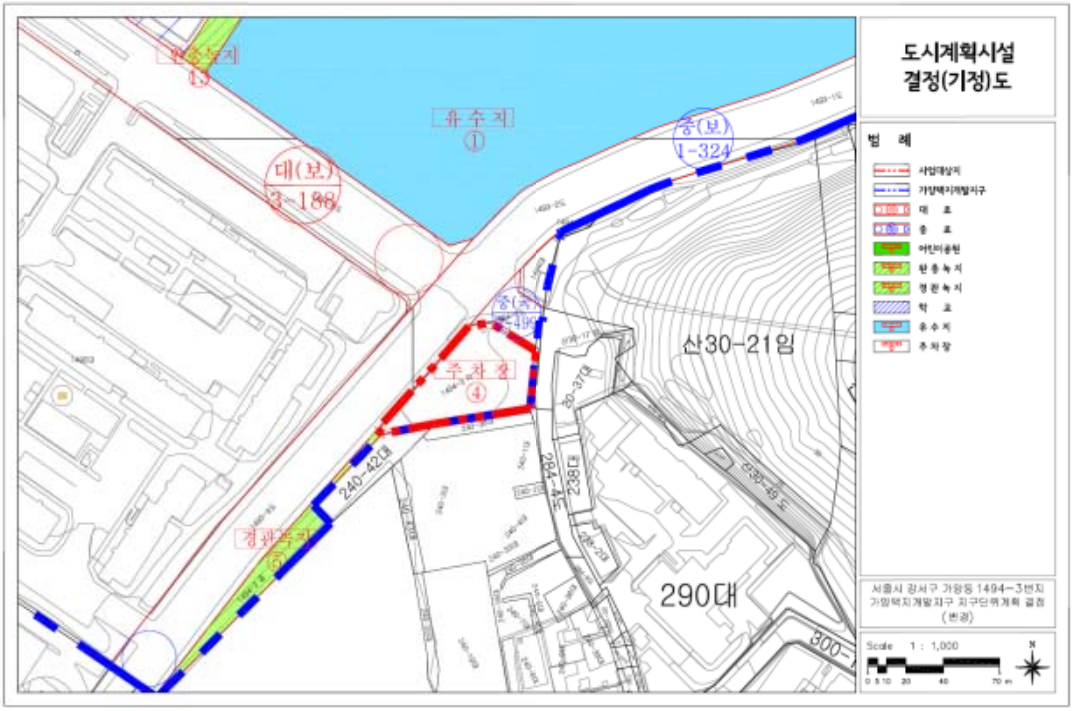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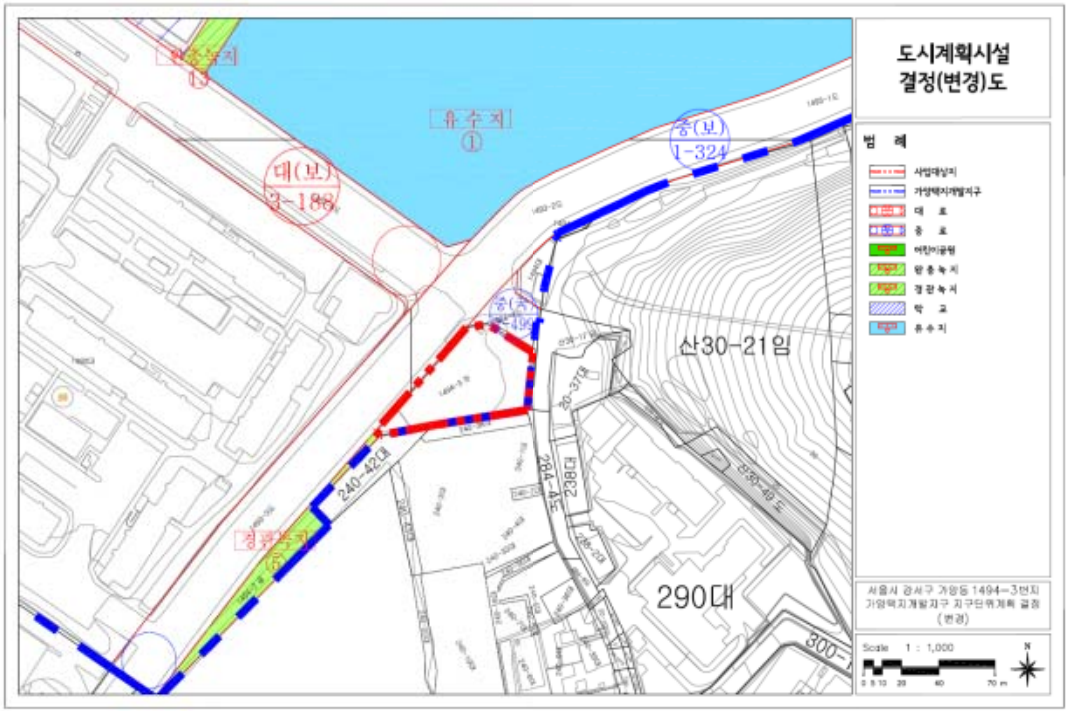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9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41-41외 2필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을 결정 고시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결정취지
국가보훈처가 현재 서대문구의회 청사부지로 사용 중인 현저동 산5-5에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연희동 141-41외 2필지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하여 구의회 청사를 이전 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서대문구 연희동 141-41외 2필지	-	증) 4,637	4,637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서대문구의회 청사

- 건축물의 범위 결정조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30% 이하	150% 이하	4층, 20m 이하

3. 관계도면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면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2133-8413), 서대문구 도시관리과(☎330-164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에도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및 지형도면

도시계획시설결정도

Scale = None

0 5 10 25 50 100m

구역계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서대문구 연희동 141-41외 2필지	-	증)4,637	4,637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서대문구의회 청사

- 건축물의 범위

건 폐 율	건 폐 율	건 폐 율
30% 이하	150% 이하	4층, 20m 이하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70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지형도면 고시(연세대학교)

서울특별시고시 제61호(1974.5.14.)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96호(2016.4.7.)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15호(2016.12.22.)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일대 연세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변경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일대에 위치한 연세대학교내 교육환경개선 및 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건축물 신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세부시설조성계획을 변경결정 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시설결정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학 교	대학 (연세대학교)	전체 (A+B)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일대	859,425.8	-	859,425.8	서고시 제61호 (1974.5.14.)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A구역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일대	752,720.8	-	752,720.8		
		B구역	서대문구 연희동 7번지 일대	106,705.0	-	106,705.0		

2)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구역계획

구역	구분	면적(㎡)			구역	구분	면적(㎡)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상징경관 구역	①	80,338.8	-	80,338.8	일반관리 구역	⑦	102,177	-	102,177
소계		80,338.8	-	80,338.8		⑧	54,383	-	54,383
외부활동 구역	②	3,516	-	3,516		⑨	42,000	-	42,000
	③	34,151	-	34,151		⑩	19,150	-	19,150
	④	11,078	-	11,078		⑪	111,583	감)2,263	109,320
	⑯	6,250	-	6,250		⑫	87,001	증)2,263	89,264
소계		54,995	-	54,995		⑬	52,448	-	52,448
녹지보존 구역	⑤	40,667	-	40,667		⑮	89,609	-	89,609
	⑥	112,653	-	112,653					
	⑭	8,658	-	8,658					
	⑰	1,575	-	1,575					
	⑱	2,188	-	2,188					
소계		165,741	-	165,741	소 계		558,351	-	558,351
합 계							859,425.8	-	859,425.8

(2) 밀도계획(건폐율)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법 정 건폐율(%)	사용건폐율(%)		관 리 건폐율(%)	비 고
				기정	변경		
A구역 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	49,489.6	60.00	27.0	27.7	35	○ 밀도 산정시 제외한 면적 - 비오톱1등급지: 99,777㎡ ※ 산정기준 면적 계산(㎡) 859,425.8-99,777=759,648.8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287,668.2	3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315,786.0	60.00				
	소계	652,943.8	46.78				
B구역 캠퍼스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06,705.0	30.00	15.2	15.2	26	
	소계	106,705.0	30.00				
합 계		759,648.8	44.43	25.36	25.93	34	

※ 학교용지 면적(859,425.8㎡) 대비 법정건폐율 39.3%, 사용건폐율(변경) 22.92%

※ 기정 사용건폐율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415호(2016.12.22.)의 결정(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함

(3)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높이)

구역 구분	용적률 (%)								높이(m)	비고
	법정용적률		사용용적률		계획용적률	이전용적률		관리용적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①	197.96	197.96	50.90	50.90	50.90	−142.96	−142.96	55	•지표로부터 최대 24~32m이하 •국가지정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이하 •백양로(폭원 21m) 건축행위 불가	상징경관구역
②	200.00	200.00	4.03	4.03	41.64	−155.00	−155.00	45	•지표로부터 최대 16m 이하	외부활동구역
③	150.00	150.00	0.00	0.00	67.33	−80.00	−80.00	70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외부활동구역
④	153.31	153.31	15.96	15.96	59.68	−93.31	−93.31	60	•지표로부터 최대 16m 이하 •국가지정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이하	외부활동구역
⑤	174.40	174.40	0.00	0.00	0.00	−174.40	−174.40	−	•건축행위 원칙적 불가 •추가 건축시 별도 심의 •기존 건축물은 현 범위 내 활용	녹지보존구역 (비오톱1등급지 28,779.5㎡, 용적률산정에서 제외함)
⑥	150.00	150.00	0.00	0.00	0.00	−150.00	−150.00	−		녹지보존구역 (비오톱1등급지 69,422.5㎡ 용적률산정에서 제외함)
⑦	172.07	172.07	134.33	134.33	156.98	−	−	160	•지표로부터 최대 28~55m 이하	일반관리구역
⑧	184.48	184.48	159.81	159.81	174.91	−	−	180	•국가지정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이하 •지표로부터 최대 16~55m 이하	일반관리구역
⑨	178.66	178.66	113.88	113.88	113.88	−	−	120	•국가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검토구역 해당기준 이하 •지표로부터 최대 20~32m 이하	일반관리구역
⑩	200.00	200.00	47.54	47.54	47.54	−	−	55	•지표로부터 최대 55m 이하	일반관리구역
⑩	200.00	200.00	47.54	47.54	47.54	−	−	55	•지표로부터 최대 55m 이하	일반관리구역
⑪	184.11	183.84	297.99	304.16	309.05	+125.89	+126.16	310	•지표로부터 최대 16~70m 이하	1~6구역에서 용적이전받음(137,917㎡)
⑫	165.21	166.02	72.68	97.16	196.85	+34.79	+33.98	200	•국가지정문화재주변 건축물 높이기준 이하 •지표로부터 최대 12~55m 이하	1~6구역에서 용적이전받음(30,330㎡)
⑬	150.00	150.00	122.41	122.41	122.41	−	−	130	•지표로부터 최대 20~40m 이하	일반관리구역
⑭	150.00	150.00	0.00	0.00	0.00	−150.00	−150.00	−	•⑤⑥구역과 동일함	녹지보존구역
⑮	150.00	150.00	71.29	71.29	86.82	−	−	90	•지표로부터 최대 20~28m 이하	일반관리구역
⑯	150.00	150.00	0.00	0.00	0.00	−150.00	−150.00	−	•지표로부터 최대 28m 이하	외부활동구역
⑰	200.00	200.00	0.00	0.00	0.00	−200.00	−200.00	−	•⑤⑥구역과 동일함	녹지보존구역 (비오톱1등급지 1,575㎡, 용적률산정에서 제외함)
⑱	150.00	150.00	0.00	0.00	0.00	−150.00	−150.00	−	•⑤⑥구역과 동일함	녹지보존구역

※ 상징경관구역, 외부활동구역에 부여된 여유 관리용적률은 해당 구역의 특성을 강화하거나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

※ ⑤구역 밀도산정면적 : 40,667㎡−28,779.5㎡=11.887.5㎡, ⑥구역 밀도산정면적 : 112,653㎡−69,422.5㎡=43,230.5㎡, ⑰구역 밀도산정면적 : 1,575㎡−1,575㎡=0㎡

(4) 변경 건축물조서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연면적(㎡)						지상연면적(㎡)						높이계획		비고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층수 (지하)	높이 (m)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⑫구역	미래관	-	22.79	-	-	-	3,259.87	-	211.60	-	-	-	34,400.7	-	108.07	-	-	-	21,534.11	7 (4)	31.85	신축
	법인 사무처	-	1,103.64	-	-	-	-	-	1,851.32	-	-	-	-	-	1,851.32	-	-	-	-	2	13.5	신축
⑬구역	Y숙사 → 미우관	-	-	1,166.00	1,166.00	-	-	-	-	15,970.00	15,970.00	-	-	-	-	9,270.00	9,270.00	-	-	10(3)	10(3)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명칭변경
증감		증 4,386.3						증 36,463.62						증 23,493.50								

※ 음악대학 이전계획이 취소 될 경우 정책이사회 의결 내용대로 미래관의 지상층 규모를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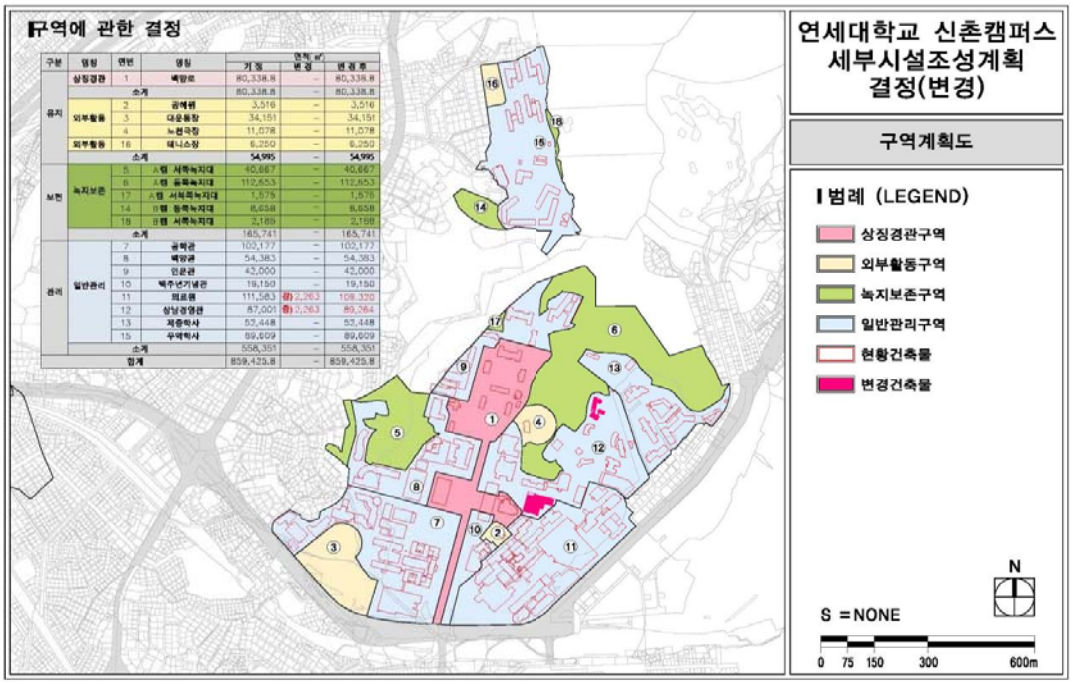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도면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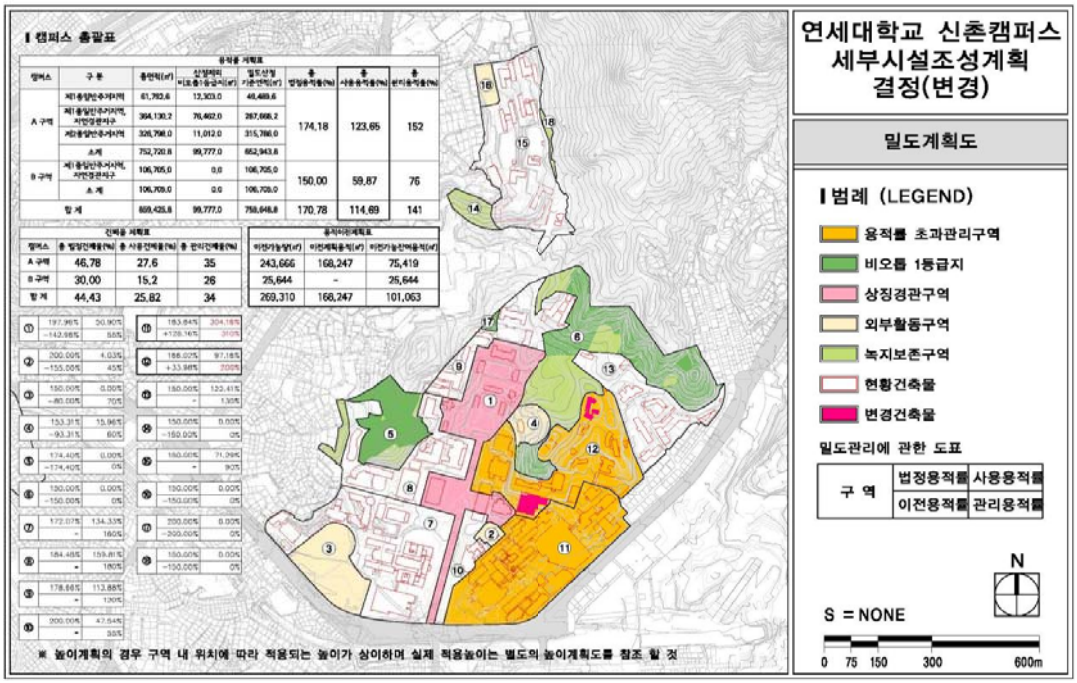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2133-8413) 및 서대문구 도시관리과(전화 330-1588)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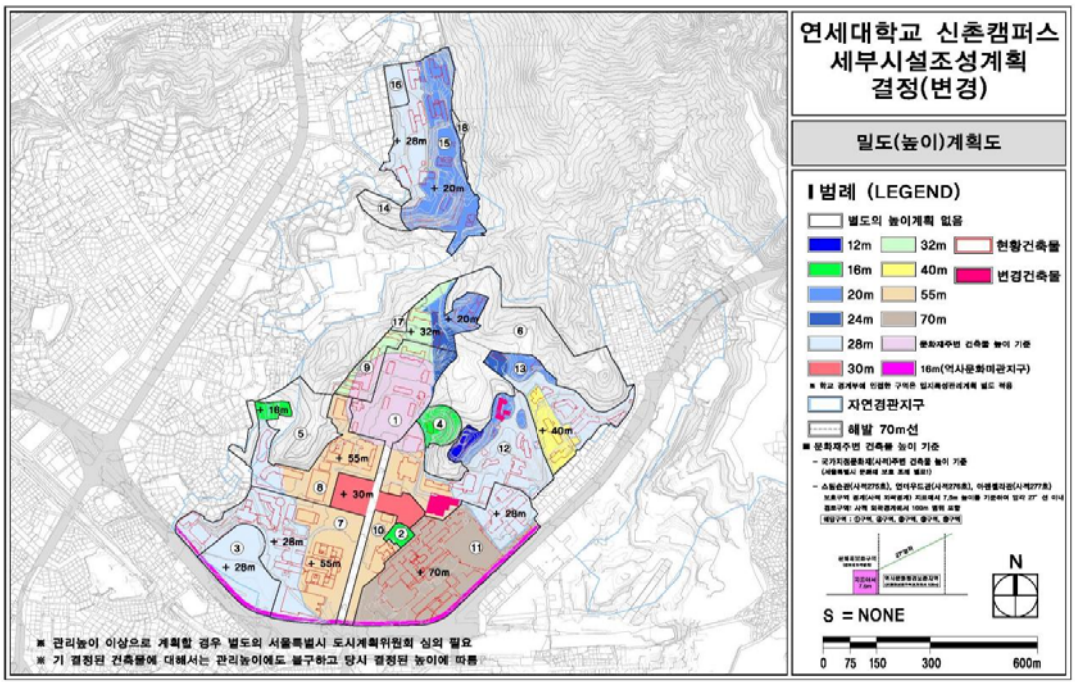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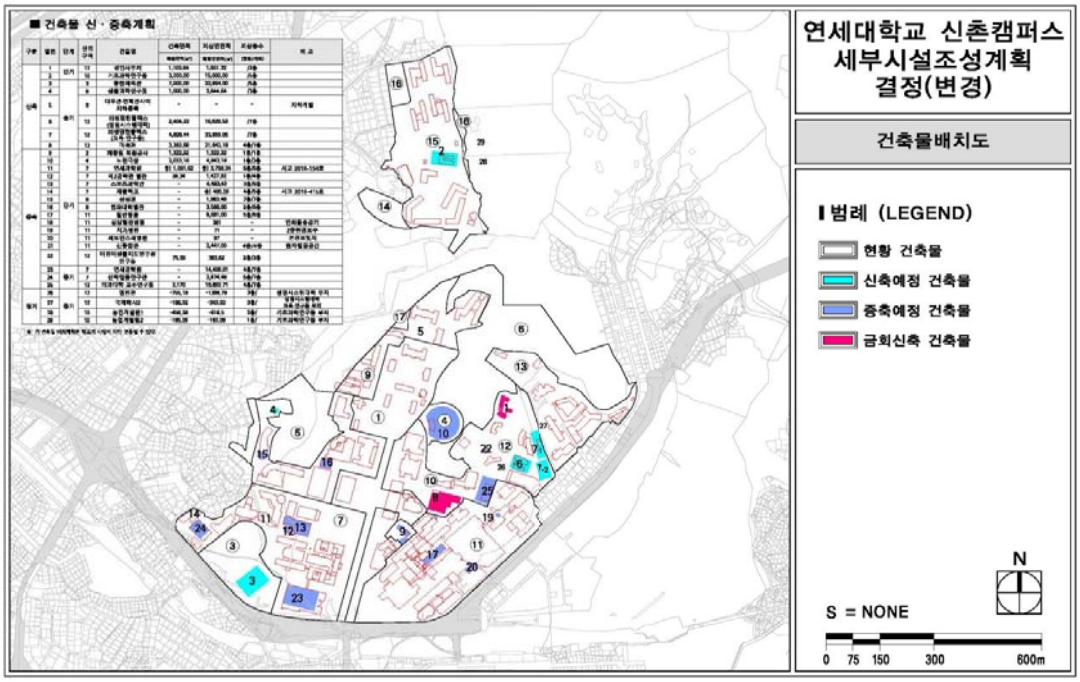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 (건폐율 · 용적률)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 (높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물배치계획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71호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12호('17. 8. 31.)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 결정」 되고,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2039호('17. 9. 21.)로 열람공고 한 종로구 창신동 23-322번지 일대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9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위치 : 종로구 창신동 23-322번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수도공급설비)
다. 사업의 명칭 : 낙산배수지 건설공사
라. 사 업 규 모 : 배수지 건설 5,600㎥
마. 면 적 : 4,317㎡
바.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사.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7. 11. ~ 2019. 12.
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 따로붙임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따로붙임
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3146-14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용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사용 또는 수용면적 (㎡)	소 유 자		비 고
					성 명	주 소	
계		5필지		4,317			
1	종로구 창신동	산6-13	임야	1,380.0	서울특별시		
2	종로구 창신동	23-322	대지	2,011.2	〃		
3	종로구 창신동	23-320	대지	575.3	〃		
4	종로구 창신동	23-323	대지	14.2	〃		
5	종로구 창신동	23-313	대지	336.3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72호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15호('08.11.20.)로 최초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267호('09.5.28)로 사업계획 승인되었고,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500호('10.7.2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758호('10.11.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27호('11.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79호('12.10.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 - 43호(2013.2.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5호(2013.10.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7호('14.8.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87('15.9.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73 ('15.11.26)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0 ('17.2.13.)로 사업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계획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철도) 변경 결정 고시 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조서

1) 본 선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규모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기정	철도	도시철도 (9호선)	강남구 역삼동 800번지 일대	강동구 둔촌동 566번지 일대	선정릉역(분당선) 종합운동장역(2호선) 석촌역(8호선) 올림픽공원역(5호선) 한국체육대학교 동북중고등학교 서울보훈병원	연장:13,753 *하남시구간 230m포함 폭 :11~42m	190,471.88 *하남시국간 1,491㎡ 포함	'08.11.20	
변경	철도	도시철도 (9호선)	강남구 역삼동 800번지 일대	강동구 둔촌동 566번지 일대	선정릉역(분당선) 종합운동장역(2호선) 석촌역(8호선) 올림픽공원역(5호선) 한국체육대학교 동북중고등학교 서울보훈병원	연장:13,753 *하남시구간 230m포함 폭 :11~42m	190,237.68 *하남시국간 1,491㎡ 포함	'08.11.20	감)234.2 *정거장, 환기구 조정 등

※ 본선 면적산출은 정거장 부분을 뺀 부분임.

2) 정거장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철도	도시철도(926정거장)	강남구 역삼동 800번지 일대	6,763	-	6,763	서울시고시 41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927정거장)	강남구 역삼동 802-1번지 일대	2,303	-	2,303	서울시고시 41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928정거장)	강남구 삼성동 111-147번지 일대	6,965	-	6,965	서울시고시 41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929정거장)	강남구 삼성동 172번지 일대	8,783	-	8,783	서울시고시 41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930정거장)	송파구 잠실동 123번지 일대	7,850.9	-	7,850.9	서울시고시 415 ('08.11.20)	
변경	철도	도시철도(931정거장)	송파구 잠실동 289번지 일대	8,237	감) 24	8,213	서울시고시 41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932정거장)	송파구 삼전동 157번지 일대	6,002	-	6,002	서울시고시 41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933정거장)	송파구 석천동 209번지 일대	9,536.4	-	9,536.4	서울시고시 41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934정거장)	송파구 방이동 95번지 일대	7,986	-	7,986	서울시고시 41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935정거장)	송파구 방이동 88-17번지 일대	8,644.2	-	8,644.2	서울시고시 415 ('08.11.20)	
기정	철도	도시철도(936정거장)	송파구 방이동 88-2번지 일대	6,884.8	-	6,884.8	서울시고시 415 ('08.11.20)	
변경	철도	도시철도(937정거장)	강동구 둔촌동 227-7번지 일대	7,122	증)146.9	7,268.9	국토부고시 758 ('10.11.04)	
변경	철도	도시철도(938정거장)	강동구 둔촌동 8-1번지 일대	7,608	감)136	7,472	국토부고시 758 ('10.11.04)	
계				94,685.3	감) 13.1	94,6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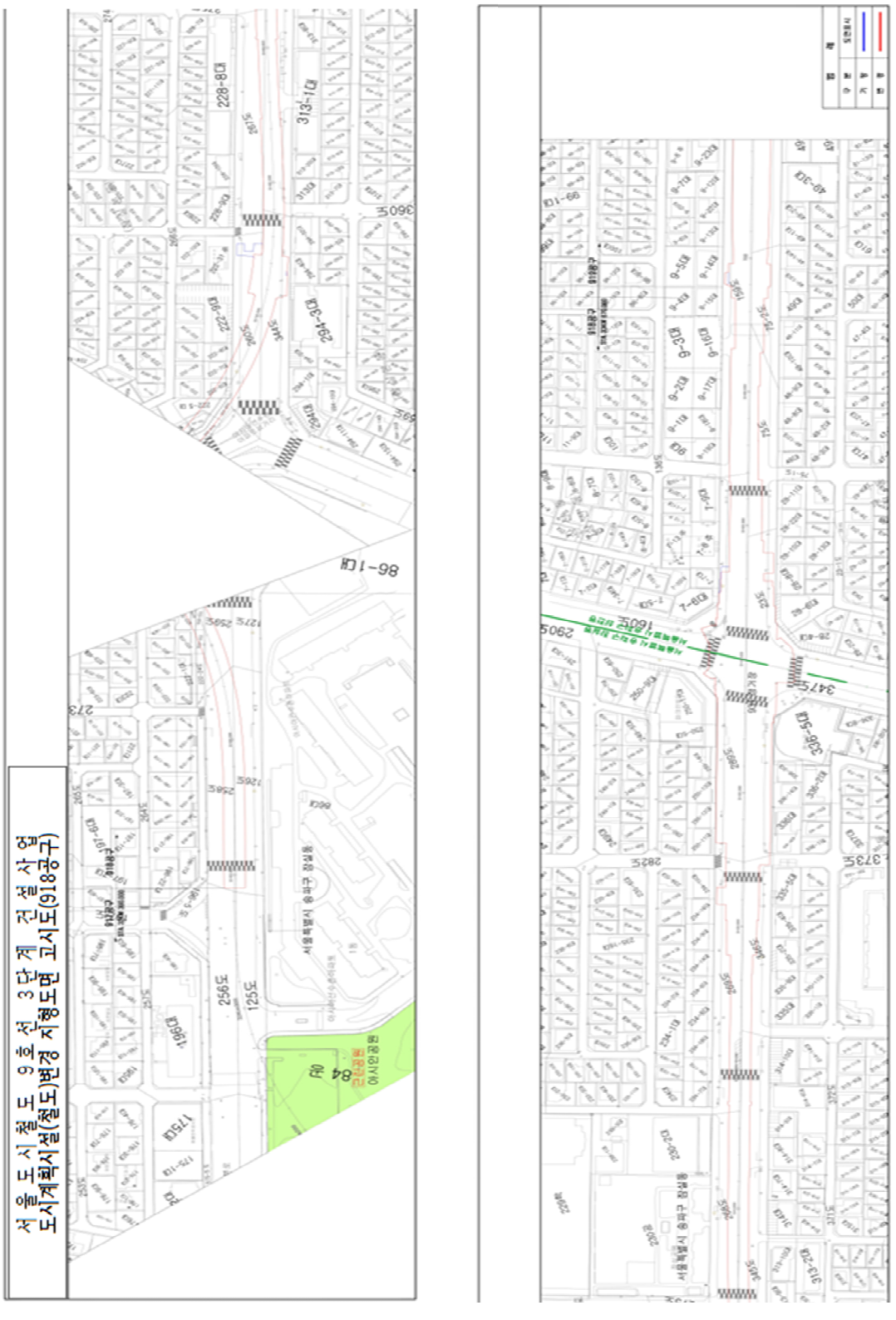
2.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 결정 지형도면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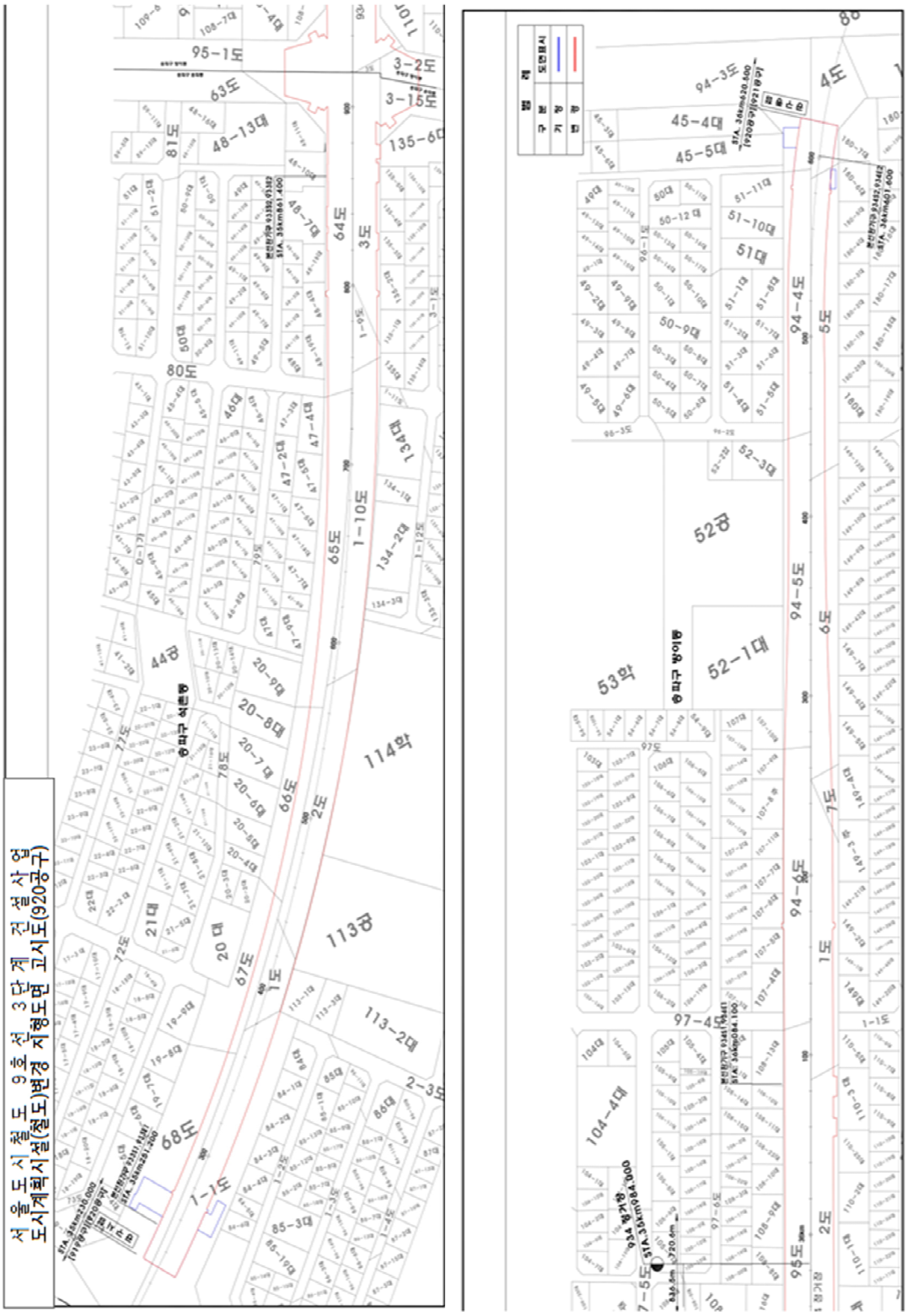
3.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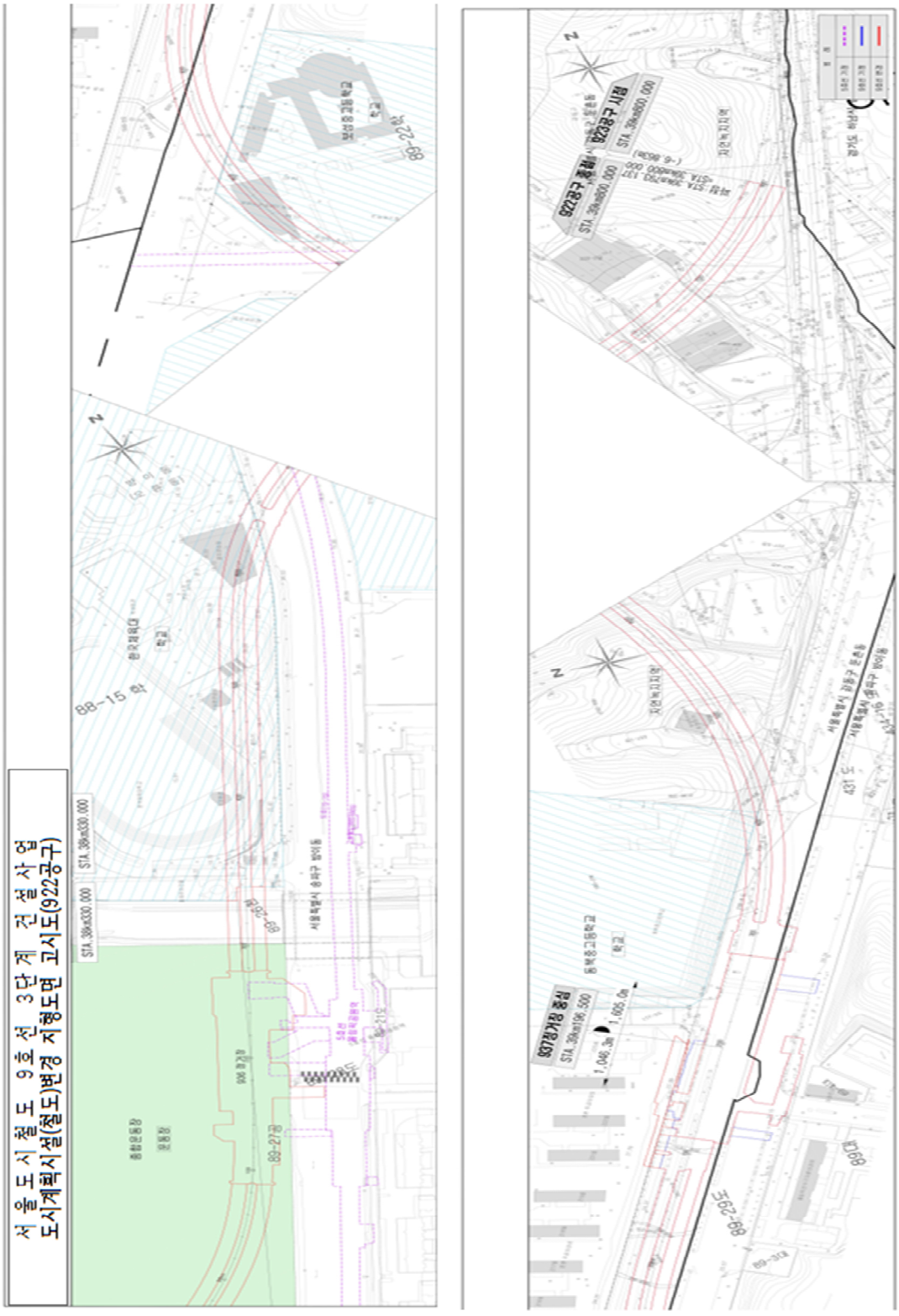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2133-8423) 및 송파구 도시계획과(☎ 2147-2995), 강동구 도시계획과(☎ 3425-6022)에 각각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 지형도면 고시도(918공구)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 지형도면 고시도(919공구)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 지형도면 고시도(920공구)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건설사업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 지형도면 고시도(922공구)
922공구 시점
STA. 39k650.000
923공구 종점
STA. 39k650.000
937정거장 종점
STA. 39k196.500
STA. 39k330.000
STA. 39k330.000
88-15 유
88-22유
89-27유
89-29도
89-31도
89-32도
지적측량기준점
학교
도로
공원
431.2


서 울 도 시 철 도 9호 선 3단 계 건 설 사 업
도시계획시설(철도)변경 지형도면 고시도(923공구)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74호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99호(2010.8.19.)로 결정된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2017년 제15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09.2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삼성동 159-8 일대의 가로활성화를 위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조서

1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 건축물에 관한 계획 중 지정용도 외 변경없음

○ 지정용도

<table>
<tr><td rowspan="3">건축물에 관한 계획</td><td rowspan="3">지정용도</td><td rowspan="3">○최상층 지정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단, 관광호텔은 최상층 및 지상3~4층)
•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단, 관광호텔에 한함)</td><td>삼성동
159-7호</td><td>○최상층 지정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td><td></td></tr>
<tr><td rowspan="2">삼성동
159-8호</td><td>○지상3~4층 지정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td><td>601㎡
이상</td></tr>
<tr><td>○지상1층 지정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공공도서관</td><td>303㎡
이상</td></tr>
</table>

※ 삼성동 159-8호 지상1층 지정용도인 공공도서관, 공연장 등의 공공기여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조성·운영 등 그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운영토록 하되,
공공기여 계획 변경으로 당초 공공기여 공간을 수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이익량을 고려하여, 1층과 연계된 저층부에 공공기여 면적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1층 공공도서관 및 공연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강남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이 담보된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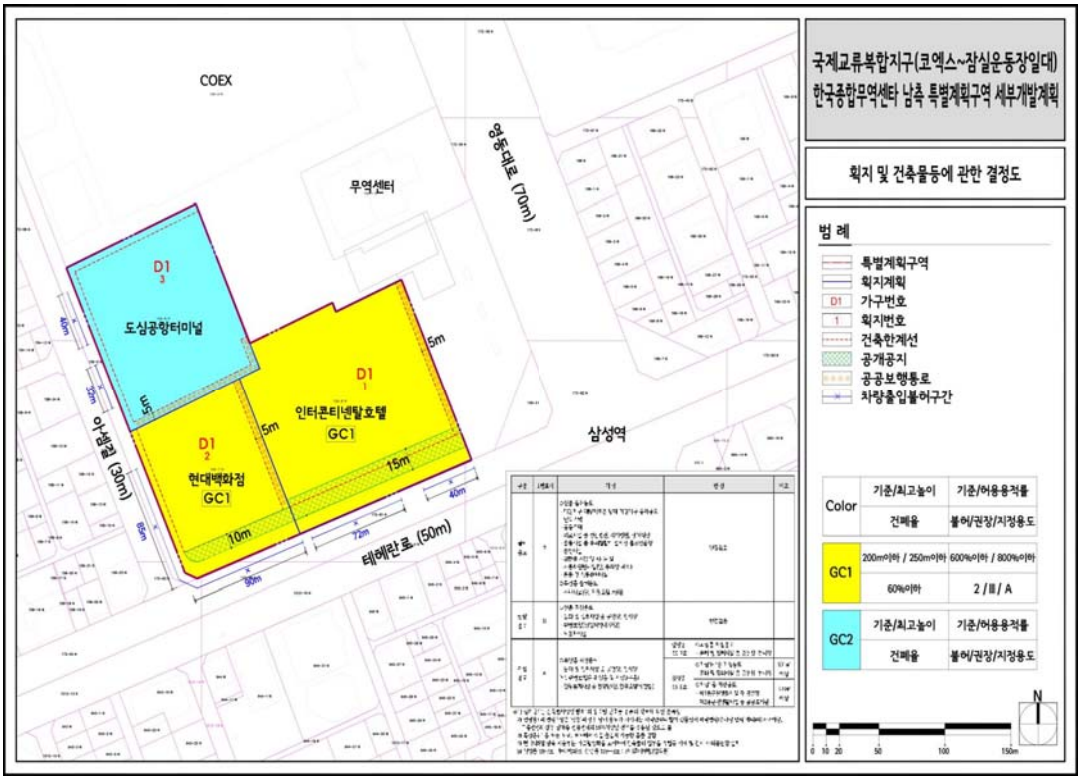
Ⅲ. 관계도면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자료 참조)

Ⅳ. 열람장소 : 고시관련 세부내용은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02-2133-8381), 동남권계획반(☎02-2213-8229), 강남구 도시계획과(☎02-3423-6112)에 관계도서를 비치 및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도시관리계획(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내 한국종합무역센타 남측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도(변경없음)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변경)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095호

가변차로 및 가로변버스전용차로 폐지 행정예고

도로교통법 제14조에 의해 운영 중인 가변차로와 가변차로 구간에 있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의한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구간의 일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 사유
   가. 중구 한양공고 앞(퇴계로) ~ 성동구 상왕십리역(왕십리로) 구간에 오전 출근 시간대 도심 방향의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했던 가변차로가 도로 폭이 협소하고, 차로 오인 등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여 우리 시 평균 사고 건수의 10배에 이르며,
   나. 주요한 교차로에서 좌회전이 불가하고 별도의 노면표시가 없는 좌회전 신호로 인해 사고의 위험이 있는 등 민원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다. 가변차로 폐지 후 적정한 도로 폭의 확보에 따라 차로 수가 줄어 부득이 외곽 방향의 가로변버스전용차로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가변차로 폐지
      ○ 위치: 중구 한양공고 앞(퇴계로) ~ 성동구 상왕십리역(왕십리로)
      ○ 도심 방향 3개 차로, 외곽 방향 2개 차로 등 5개 차로 운영
      ○ 폭이 넓은 성동고교교차로 ~ 상왕십리역 구간은 6개 차로 운영
   나. 주요 교차로 좌회전 및 유턴 허용
      ○ 신당역사거리 : 양 방향 좌회전, 외곽 방향 유턴
      ○ 성동고교사거리 : 양 방향 좌회전, 유턴
      ○ 상왕십리역삼거리 : 외곽 방향 좌회전, 유턴
   다. 가로변버스전용차로
      ○ 도심 방향 존치, 외곽 방향 폐지

구분	도로 구분	운영 구간	가로명	연장 (㎞)	전용차로 종 류	운영시간
당초	일반 도로	한양공고앞4 ~ 성동교 북단	왕십리길	3.4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시간제)	07:00~10:00, 17:00~21:00 토요일 · 공휴일 제외

구분	도로 구분	운영 구간	가로명	연장 (㎞)	전용차로 종 류	운영시간
변경	일반 도로	한양공고 앞 교차로 ~ 성동교 북단	퇴계로 및 왕십리로	3.4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시간제)	07:00~10:00, 17:00~21:00 토요일 · 공휴일 제외 외곽 방향 폐지

라. 무단횡단방지시설 설치

○ 한양공고 앞 ~ 성동고교 구간 약 1㎞

3. 의견 제출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7. 11. 8.(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교통운영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 별관 1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통운영과(☎ 2133-2465, FAX 2133-1053, E-mail : ppark@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116호

2017년도 제14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제14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심의일시 : 2017. 9. 27.(수) 10:00 ~ 12:30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4층 회의실

다. 심의작품 : 총 5건 8작품 (조각 7, 회화 1)

라. 심의결과 : 승인 6작품, 부결 2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제1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7년 제1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1	동대문구 신설동 지웰홈스	조각	ECOFLOW-Singnature	○		
2-1	서대문구 DMC 2차 I`PARK	조각	illusion	○		
2-2		조각	Moving dream		○	안정성 보완 (작품의 접근성 측면에서 다칠 수 있는 구조)
3-1	강서구 서브원 마곡 호텔	조각	무한주 Endless Column		○	아크릴 소재로 된 내부조명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아크릴 소재보다 안정적인 소재로 변경 요망
3-2		조각	꿈꾸는 城_지혜의 탑	조건부 ○		글자가 새겨진 부분의 설명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서류 제출
3-3		회화	view forest 2	○		
4	강동구 고덕 숲 I'PARK	조각	숲속의 이야기	조건부 ○		구조적 하중에 대해서 안정성 검토 후 서류 제출 (숲 속의 이야기-Sheep)
5	서대문구 지웰에스테이트	조각	동심의 재현	○		

※ 승인된 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민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129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공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제29조 제3항에 따라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변경 신고사항

1) 다단계판매업 변경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주)리브퓨어코리아	서울-제678호	대런 호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8, 10층 11층 (역삼동, 나래빌딩) (02-2055-2191)	소재지 ('17.08.28)	(주)제네시스퓨어코리아	(주)리브퓨어코리아
(주)젬마코리아	서울-제766호	이우종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34, 2층 204-212호 (문래3가) (1899-4765)	소재지 ('17.08.18)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4길 27, 905호(구로동, 대륭포스트타워3차)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34, 2층 204-212호 (문래3가)
				전화번호	02-2028-0567	1899-4765
앤앤비코리아(주)	서울-제752호	정인효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92, 301호 (잠실동) (02-415-3129)	소재지 ('17.08.18)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0, 202호 (석촌동, 보정빌딩)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92, 301호 (잠실동)
(주)좋은효소	서울-제790호	정승선 구금숙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20층1호(가산동,에스티엑스브이타워) (02-862-4175)	전화번호	070-8656-1305	02-862-4175
				이메일	wellzyme@wellzyme.co.kr	wellzyme@naver.com
(주)헤베니케	서울-제837호	이형규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30, 2,4,5층 (수서동, 에이펙스빌딩) (1644-8703)	상 호 ('17.08.31)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637, 53동 903호(광장동, 워커힐아파트)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30, 2,4,5층(수서동, 에이펙스빌딩)
애릭스코리아(주)	서울-제820호	제프리 예이츠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18, 5층 (대치동, 다봉타워빌딩) (1800-8563)	이메일	hc496@naver.om	ariixkorea@ariix.com

2) 후원방문판매업 변경사항

신 고 인				변 경 내 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구분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알즈너공감 대리점	서울 후-제660호	조미령	서울시 강북구 덕릉로 4, 1층 우측 (수유동) (010-3194-6767)	소재지 ('17.08.26.)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29길 23, (쌍문동)	서울시 강북구 덕릉로 4, 1층 우측 (수유동)
웃음꽃	서울 후-제703호	강은주	서울시 은평구 불광로13길 1, 1층 (불광동) (010-7116-3466)	소재지 ('17.08.21.)	서울시 도봉구 방학로5길 9-39, 3층 A호(방학동, 범경빌딩)	서울시 은평구 불광로13길 1, 1층 (불광동)
성 도	서울 후-제452호	박충우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95, 지하1층 126,127호(현대@상가) (02-2671-4000)	소재지 ('17.08.31.)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0길 23-1, 2층 (당산동1가)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95, 지하1층 126,127호(현대@상가)
오휘대림점	서울 후-제484호	오승택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57, 3층 (대림동, 일승빌딩) (02-6082-5249)	전화번호 ('17.09.12.)	02-3661-5249	02-6082-5249
강서제일 지사	서울 후-제578호	강미옥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36길 12, 201동 지층3호(당산동4가,당산2차삼성아파트) (070-4870-1903)	전화번호 ('17.09.20.)	070-4870-1903	02-2632-1903
바이오 플래넷(주)	서울 후-제654호	김시후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71, 503호(서초동,엘지서초에클라트) (02-561-0013)	소재지 ('17.08.2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4, 11층(삼성동,인화빌딩)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71, 503호(서초동,엘지서초에클라트)

3) 후원방문판매업 폐업사항

신 고 인				신고사항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연락처)	폐업일자	폐업사유
한 강	서울 후-제456호	이광철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248, 11-303호(이촌동) (010-4920-3383)	'17.09.05.	개인사정
오휘신월지사	서울 후-제657호	손경석	서울시 양천구 화곡로 103, 2층 201호(신월동) (02-2691-5289)	'17.08.29.	사업부진
금강문화허브	서울 후-제422호	김호철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456, 9층(역삼동,한석타워) (02-1544-4945)	'17.09.07.	영업부진
아모레 성수특약점	서울 후-제182호	이승운	서울시 성동구 연무장13길 9, 6층(성수동2가, 아이템플빌딩) (02-461-3253)	'17.09.12.	사업부진
오휘응암점	서울 후-제653호	문승준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 4층 (역촌동, 다인빌딩) (02-305-5249)	'17.09.19.	영업부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민봉사담당관(☎ 02-2133-7917) 또는 공정경제과(☎ 02-2133-5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144호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안 행정예고

「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행정안전부에서 전담하는 긴급재난문자의 송출·승인 업무중 일부를 시·도에 이양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제정 운영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긴급재난문자 운영 책임관(자) 지정 및 임무 부여
      · 긴급재난문자 운영책임관 - 안전총괄본부장
      · 긴급재난문자 운영책임자 - 안전총괄본부 상황대응과장
   나. 사용부서(기관)지정 및 송출요청 대상 정보 명시
      . 재난대응 행동매뉴얼 재난수습부서
      · 25개 자치구 (관리책임 : 안전담당부서)
   다. 우리시 별도 추가 사항
      · 미지정 또는 복합재난의 경우 상황대응과 우선 조치후 통보
      · 지역별 자연재난에 따른 초동대응이 필요한 정보
      · 산불 등 현장상황 판단결과 시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라.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규정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 방송기준 및 운영규정」을 적용
3. 의견제출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장(참조: 상황대응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황대응과(☎ 2133-8535, FAX 2133-0867, E-mail : leeban@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서울특별시 긴급재난문자 운용규정」제정 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홈페이지(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145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6조,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자에 관한 등록 및 말소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부동산개발업 등록 및 말소 현황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말소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천원)/폐업사유	비 고
1	㈜천산건축사사무소	하인철	2017.09.05	서울170089	성동구 아차산로7나길 18, 1205호(성수동2가)	600,000	신규등록
2	범계역모비우스 피에프브이(주)	박도업	2017.09.06	서울170090	강남구 봉은사로 418 (삼성동, 조양빌딩)	500,000	신규등록
3	㈜리치스타	문영인	2017.09.14	서울170091	강남구 테헤란로63길 12, 비동 218호 (삼성동, 엘지선릉에클라트)	3,860,000	신규등록
4	㈜에이치지이니셔티브	정경선	2017.09.20	서울170092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지202호 (성수동1가, 헤이그라운드)	500,000	신규등록
5	㈜티아이건설	한영호	2017.09.21	서울150008	강남구 봉은사로44길 31(역삼동)	750,000	전 출 (경기)
6	(주)삼일기업공사	박종웅	2017.08.30	서울140001	강남구 언주로 329(역삼동,삼일빌딩)	사업실적 없음	폐업
7	㈜산하건설산업	이병원	2017.09.06	서울130051	서초구 동산로19길 48(양제동)	사업종료	폐업
8	㈜케이디도시개발	안태일	2017.09.07	서울140066	송파구 정의로8길 70(문정동, 케이디유타워)	사업부진	폐업
9	아주네트웍스㈜	정 진	2017.09.11	서울150069	용산구 한남대로 98(한남동)	사업미시행	폐업
10	㈜샤보이상암 피에프브이	김재민	2017.09.11	서울130033	서초구 매헌로8길 9	사업종료	폐업
11	㈜동익인베스트먼트 피에프브이	이상헌	2017.09.11	서울140057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1(여의도동)	기타	폐업
12	㈜건생씨앤디	이승은	2017.09.15	서울100062	서대문구 통일로 348, 상가동 203호(홍제동,무악청구아파트)	사업부진	폐업

연번	상 호	대표자	등록/말소일	등록번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본금(천원)/폐업사유	비 고
13	신성씨앤디㈜	조순관	2017.09.18	서울130048	강북구 도봉로98길 33, 202호(번동,삼성아파트상가)	기타	폐업
14	㈜국제일호디앤씨	최종학	2017.09.19	서울080511	강남구 테헤란로 128(역삼동)	기타	폐업
15	아산종합건설㈜	김영윤	2017.09.21	서울140074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28, 208호(가산동, 에스티액스브이타워)	전문인력 부족	폐업
16	㈜근복공영	김종철	2017.09.27	서울110103	서초구 방배로 111,1호(방배동)	전문인력 부족	폐업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지관리과(☎2133-4684~4686)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152호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 및 등록변경 사항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신규등록 및 등록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1. 대상 기간 : 2017.07.01. ~ 2017.09.30. 11개 단체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부서
2158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45 (연건동) 임호빌딩 4, 6층	안순호 외 2인	2017-07-11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활동 ○4.16 세월호 참사 미수습 실종자를 찾고 세월호의 온전한 선체 인양을 위한 활동 ○재난 및 안전, 진상규명 및 치유 관련 정책, 법제 및 관행을 개선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 ○4.16 세월호참사 후 국민의 존엄과 권리,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활동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정당한 추모와 지원, 배상 및 보상을 위한 활동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부서
2159	서울시 실버통일축구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81 (수송동, 두산위브파빌리온) 714호	허윤정	2017-07-12	○실버스포츠의 진흥발전 및 활성화 사업 ○노인일자리 및 복지사업 ○유소년, 중장년 축구단 교육 및 스포츠지도자 양성교육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2160	청년문화포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39길 13 (천호동, 정문빌딩) 지하1층 02호	황희두	2017-07-20	○청년문화 공연행사 진행 ○기성세대와 청년세대간 만남을 통한 문화계승 추진 ○재능과 열정이 있는 청년 인재 양성 및 발굴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2161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내사랑 바둑이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35 (목동) 프라자빌딩 302호	정경순	2017-08-08	○유기동물 구조, 보호, 입양센터 운영 ○유기동물 예방교육 홍보 ○동물보호활동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162	공익단체 국민경제사회 협의회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63 (장교동, 장교빌딩) 2601호	장명숙	2017-08-09	○국민통합과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운동 ○공정경제와 사회정의에 관한 시민사회운동 ○가짜뉴스 예방과 감시활동 ○불법행위, 불공정 거래 등 감시 활동 ○대외경제협력사업 및 개선활동 ○UNSDGs관련참여사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2163	비영리민간단체 한국패션타투협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26길 4 (대조동, 학송빌딩) 3층	임보란	2017-08-14	○타투·헤나의 청년 해외일자리 취업지원 및 관련 정보제공 사업 ○패션타투의 해외파트너 발굴 및 청년취업자의 정착지원 사업 ○일자리창출을 위한 타투 이스트의 직업인 양성사업 ○국제대회 및 관련 컨벤션 참가업무 지원 등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2164	한국뷰티총연합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58길 13 (신림동, S-빌딩) 302호	조선아	2017-08-21	○뷰티산업에 관한 전문 인력, 지도자 양성 및 민간자격 도입 ○뷰티문화엑스포 사업 ○뷰티산업 연구,학술지원, 논문제작 등 교육사업 ○뷰티 관련 창업에 따른 경영지원 및 출판, 간행물 사업 ○국내 각 대학 및 단체 사회교육원 및 평생교육원 연계사업 등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	주된사업	주관부서
2165	추억의통일예술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솔샘로5길 62-7 (정릉동)	노동일	2017-08-30	○정기연주회 사업 ○지역별 공연사업 ○민속춤 공연사업 ○각 구청, 각 복지관 등 순회공연 등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166	경제지식 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73 (화곡동, 터보빌딩) 2층	이병태	2017-08-31	○경제지식네트워크 홈페이지 운영 ○경제자료 수집 및 분석, 연구 ○해외 유수의 기관과 협력 ○경제교육 및 콘텐츠개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글로벌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젊은 인재 육성 등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2167	허준작은사랑 나눔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43-36 (가양동, 성지빌딩), 4-1호	이광주	2017-09-18	○식품등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식품 제공 및 나눔 사업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기기의 정비 및 세척 지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에 의한 (1)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2)범죄예방 및 선동에 관한 활동 (3)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등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2168	평화이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81-1 (동자동, 대길취업) 5층	박현철	2017-09-22	○남북 바로알기 콘텐츠 지원 및 청년·학생 통일캠프 지원사업 ○평화·통일문화예술체육교류·지원 및 해외동포·탈북자교류·지원사업 등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담당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사항 -

대상 기간 : 2017.07.01. ~ 2017.09.30. 16개 단체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일	변경사유	주관부서
90	사단법인 자연보호 중앙연맹 서울시 협의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진흥로 432 (구기동, 요진오피스텔쉐레이) 6층	이석기	2017-08-14	대표자, 소재지 변경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일	변경사유	주관부서
121	나와 우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4가길 16 (동숭동, 대보스위트빌) 2-9 대보스위트빌 A동 101호	조진석	2017-09-28	대표자 변경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190	살기좋은우리구(금천) 만들기 여성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11 (시흥동, 무지개아파트) 109-1 무지개상가 401호	박양숙	2017-08-23	대표자 변경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479	4.19혁명희망연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11 (한남동, 한남빌딩) 912호	송효익	2017-09-27	소재지 변경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653	사람사랑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로 267 (신정동, 양천벤처타운) 603호	이상호	2017-08-03	소재지 변경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708	장애인문화공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28길 5 (당산동1가, 당산동코오롱주.상복합아파트) 지하1층 33호	최재호	2017-09-25	소재지 변경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892	한국방범기동순찰대 중앙본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97길 7 (수유동) 1층	심상팔	2017-07-05	소재지 변경	행정국 자치행정과
910	장애여성네트워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385 (마곡동, 우성에스비타워) 511호	김효진	2017-08-03	대표자 변경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1201	난민인권센터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 서울혁신센터 미래청 401A호	김규환	2017-08-22	대표자, 소재지 변경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1248	이사랑나눔도서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 58 (마천동) 마천빌딩 3층	장재완	2017-09-08	소재지 변경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1419	양천인력개발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8 (신정동) 재승빌딩 4층	박문순	2017-08-28	소재지 변경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1726	공감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나길 5 (성수동1가, 헤이그라운드(HEYGROUND)) G207호	하효열	2017-07-28	소재지 변경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등록번호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변경일	변경사유	주관부서
1807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84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416호	박옥순	2017-09-11	소재지 변경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1860	한국생활효실천 운동본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 45 (서초동, 실버타운오피스텔) 806호	조은섭	2017-09-27	소재지 변경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1913	광산진폐권익연대 서울경기인천지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9 (영등포동2가) 1층	양우석	2017-09-06	소재지 변경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1949	숲여울기후환경넷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516 (대치동, 삼성상가) 지하층 3호	박상인	2017-08-28	소재지 변경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155호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행정예고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의한 실시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업의 취지와 그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내지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사업취지 및 주요내용

1. 사업의 취지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은 도시철도 서비스 취약지역인 서울 동북부 지역의 도시철도망 확충을 통해 대중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시 균형발전 및 친환경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건설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이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 의한 관계절차를 거쳐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의 명칭 :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나. 사업의 추진계획
○ 사업구간 : 왕십리역~제기동역~고려대역~미아사거리역~월계역~하계역~상계역

○ 사업규모 : 총연장 13.4km, 정거장 15개소, 차량기지 1개소
※ 향후 서울특별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개월
○ 추진방식 : 민간투자사업(BTO 방식)
○ 사업시행자 : 가칭)동북선경전철주식회사

다. 실시협약안
○ 총칙, 기본약정,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1조～제44조)
○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수익률 및 통행료,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45조～제60조)
○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협약의 종료,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분쟁의 해결, 기타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1조～제97조)

3. 의견제출

실시협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장,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전화 : 772-7130, FAX : 772-7304, E-mail : fian070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실시협약안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서울소식 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 2017-2156호

변상금 및 행정대집행비용 체납금 등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거 2015년 5월, 6월 시유재산변상금 2건 31,636,950원 및 「행정대집행법」 제6조 의거 2015년 6월 행정대집행비용 1건 94,773,350원 총 126,410,300원을 부과, 납부고지 하였고 또한 행정대집행 수거물품에 대하여 찾아가도록 수차례(5차) 안내하였으나 아직까지 변상금 및 행정대집행비용 체납금 납부와 행정대집행 수거물품 수령이 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주민등록주소지에 납부 및 수령 독촉, 향후 체납처분일정에 대하여 고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　　명 : 변상금 및 행정대집행비용 체납금 납부 및 행정대집행 수거물품 수령요청
2. 체납금 및 수거물품 내역 : 별첨1,2 참조
3. 법적근거
   가.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나.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다. 행정대집행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체납금 및 수거품	공시송달 내용	송달주소	공시송달 사유
민○홍 (○○.01.22생)	- 시유재산변산금 (2건 32,786천원) 및 행정대집행비용 (94,773천원) 총 127,559천원, - 천막 등 85개품목	변상금 및 행정대집행비용 체납금 납부 및 행정대집행 수거물품 수령요청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지로 113번길 9 반석빌라 301호 (세류동)	수취인 불명 등

5. 민○홍께서는 2017년 11월 16일까지 상기 체납금액을 우리은행1006-480-188723(예금주 서울특별시) 납부 및 행정대집행 수거물품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만약 이 기한까지 납부·수령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매각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6. 또한 행정대집행 수거물품 중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과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되는 물품 등 반드시 열람이 필요한 경우, 그 자료 요청일시, 구체적 품목 및 인출해야 할 내용, 그리고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2017년 11월 16일까지 서울특별시청으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요청한 자료가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일시와 방법에 대하여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참고로 개인정보인 경우 내방하시어 자료 열람만 가능하며, 열람이후 자료 삭제후 매각예정임)
7. 본 체납처분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2017년 11월 16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 주시고, 체납처분에 대하여 기타 다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청 총무과(담당 엄삼용주무관, 전화 02-2133-566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체납내역
　　2. 수거물품 내역

<붙임1> 체납내역

세목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체납자	최초 납기일자	납기금액(원)	가산금(원)	체납금액(원)	과세대상	부과근거(점유내용)
합 계					126,410,300	1,148,960	127,559,260		
시유재산변상금	2017.05	000020	민○홍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	2017.06.23	23,290,020	884,380	24,174,400	서울광장무단사용에따른 변상금(5차)	2017.03.29.(수) 00:00~ 5.12(금)24:00, 1,451~12,910㎡
시유재산변상금	2017.06	000023		2017.07.14	8,346,930	264,580	8,611,510	서울광장무단사용에따른 변상금(6차)	2017.05.13.(xh) 00:00~ 5.30(화) 07:00, 1,000~1,451㎡
기타잡수입	2017.06	002246		2017.07.14	94,773,350	0	94,773,350	행정대집행비용	-

<붙임2>

행정대집행 수거(보관) 물품 목록

□ 대집행 일시 : 2017.5.30.(화) 06:30
□ 대집행 위치 : 서울광장
□ 보 관 장 소 : 1개소(서울특별시 물품보관창고)
□ 물 품 목 록

연번	수거(보관)물품	규 격(단위)	수 량	비 고
1	천 막	자바라텐트	8	
2	천 막	몽골텐트	4	
3	천 막	소형텐트	29	
4	보온물통	대	3	
5	보온물통	소	4	
6	커피포트		3	
7	매 트	대	13	
8	매 트	소	71	
9	쌀	20kg	9	
10	쌀	10kg	7	
11	롤 티 슈	30개입	10	세트
12	키친타올	6개입	1	세트
13	나무젓가락		3	박스
14	1회용접시		1	박스
15	1회용밥그릇		1	박스
16	1회용종이컵		8	박스
17	햇 반		2	박스
18	컵라면		35	박스
19	휴대용버너		15	
20	플라스틱접시		10	
21	냄 비		9	
22	주전자		4	
23	투명테이프		2	박스
24	프라이팬		6	
25	들 통		2	

연번	수거(보관)물품	규 격(단위)	수 량	비 고
26	식 판		30	
27	1회용 숫가락		1	묶음
28	드럼통		6	
29	차광막		6	
30	도 서		65	권
31	경광봉		14	
32	건전지		1	박스
33	홈키퍼		1	박스
34	부탄가스		2	박스
35	전기장판		32	
36	이 불		204	
37	베 개		14	
38	무릅담요		18	
39	생 수	중	195	병
40	생 수	대	3	병
41	생 수	소	25	병
42	핫 팩		1	박스
43	의 자	대	48	
44	의 자	소	10	
45	의 자	(기 타)	4	
46	등받이의자	대	3	
47	접이식의자		2	
48	꼴 대		4	
49	접이식테이블	대	17	
50	접이식테이블	중	7	
51	접이식테이블	소	1	
52	접이식테이블		5	
53	정수기통		3	
54	휠체어		1	
55	지팡이		3	
56	김치냉장고		1	

연번	수거(보관)물품	규 격(단위)	수 량	비 고
57	화이트보드		2	
58	가습기		1	
59	수납장		1	
60	접이식침대		1	
61	대형난로	대형	7	
62	전기난로	중형	2	
63	전자렌인지		4	
64	난 로	소형	11	
65	소화기	소	19	
66	발광판(조명)		4	
67	대형선풍기		2	
68	전 선		5	
69	발전함단자		2	
70	트렁크		1	
71	소화기	대	4	
72	캐비넷		1	
73	발전기	소	1	
74	확성기		1	
75	사다리		3	
76	식료품		3	박스
77	벨 트		1	박스
78	휘발유통		24	(빈통10개포함)
79	전화기		1	
80	북		3	
81	점 퍼		2	
82	의 류		2	박스
83	침 낭		2	박스
84	장 갑		2	박스
85	하드보드		2	박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158호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 동작구 노량진동 37-1번지 일원 역세권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7-1번지 외 7필지(37-4, 37-6, 37-7, 37-15, 39-13, 39-14, 39-39)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사업 관련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 및「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열람 기간 : 2017. 10.20 ~ 2017. 11.2

Ⅱ.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TF팀(☎02-2133-4945)

Ⅲ.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원	87,123 (923.0)	1996.11.20. (서울시고시 제1996-317호)	

주 : 항목 중( )의 숫자는 사업대상지(동작구 노량진동 37-1번지외 7필지)면적임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 용도지역 총괄(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87,123	-	87,123	100.0	
주거지역	소 계	10,990	-	10,990	12.6	
	제1종일반주거지역	10,490	-	10,490	12.0	
	제3종일반주거지역	500	-	500	0.6	
상업지역	소 계	76,133	-	76,123	87.4	
	일반상업지역	76,133	-	76,123	87.4	

■ 대상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23.0	-	923.0	100.0	
일반상업지역	923.0	-	923.0	100.0	

나. 용도지구

■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나.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가구에 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가구 및 획지계획 : 변경없음

구 분	계획기준	비 고
공동개발(규제)	• 기공동개발된 필지, 계획적 개발유도가 필요한 경우	

■ 가구에 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가구번호	면적(㎡)	비 고
기정	F	923.0	

나.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구번호		위치	면적(㎡)	계획내용	비 고
F	기정	• 노량진동 37-6, -7, -8, 39-14	555	공동개발 권장	
		• 노량진동 37-1, -4, -15, 39-12, -13, -39	678	공동개발 권장	
	변경	• 노량진동 37-1, -4, -6, -7, -15, 39-13, -14, -39	923	공동개발 지정	
		• 노량진동 37-8, 39-12	310	공동개발 폐지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기정(공동개발 권장) - 노량진동 37-6, -7, -8, 39-14 - 노량진동 37-1, -4, -15, 39-12, -13, -39 • 변경(공동개발 지정 및 폐지) - 공동개발 지정 : 노량진동 37-1, -4, -6, -7, -15, 39-13, -14, -39 - 공동개발 폐지 : 노량진동 37-8, 39-12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공동개발 변경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전 층		비 고
		기정	변경	
용도	지정용도 (1)	-	• 공동주택(주거복합)주1	·신설 ·노량진동 37-1번지 외 7필지 (37-4, 37-6, 37-7, 37-15, 39-13, 39-14, 39-39)에 한함
	불허용도 (B)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변경없음	
	권장용도 (2)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서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학원 및 독서실(당해 용도 바닥 면적 500㎡ 미만인 것)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 변경없음	

주1)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역세권 2030청년주택(오피스텔 등 준주택 제외)

■ 용도에 관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지정용도 신설 : 공동주택(주거복합)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을 위한 지정용도 신설

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 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건폐율	• 60% 이하	• 63.0% 이하	• 노량진동 37-1번지 외 7필지 (37-4, 37-6, 37-7, 37-15, 39-13, 39-14, 39-39)에 한함 • 「서울특별시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적용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50% 이하 • 허용용적률 : 500% 이하 • 상한용적률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내용을 따름	• 계획용적률 : 806.0% 이하 • 상한용적률 : 법정용적률 이하	
최고높이	• 40m 이하	• 60m 이하	

■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	• 건폐율 변경 - 기정 : 60%이하 - 변경 : 63.0%이하 • 용적률 변경 - 기정 : 기준용적률 250%이하, 허용용적률 500%이하 - 변경 : 계획용적률 806.0%이하, 상한용적률 법정용적율 이하 • 높이 변경 - 기정 : 40m이하 - 변경 : 60m이하	•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에 따라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른 운영기준 준용

■ 용적률 완화항목에 대한 계획

1) 용적률 인세티브운용기준(이면도로) : 변경없음

구 분		완화조건	완화기준	내 용
공동개발 및 맞벽건축	공동개발 (지정/권장)	지정 및 권장사항 준수시	• 기준용적률 × α	• 2필지 : α=0.1 • 3~4필지 : α=0.15 • 5필지 이상 : α=0.2
	맞벽건축	-	• 기준용적률 × 0.15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전층권장	• 기준용적률 × (권장용도면적 ÷ 주차장을 제외한 건축 연면적) × 0.2	• 건축연면적의 20% 이상시

구 분		완화조건	완화기준	내 용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의무면적 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 α	• 피로티구조 : α=0.5 • 개방형구조 : α=1.2
	쌈지형, 침상형공지	조성형태 및 규모 준수시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α	• 피로티구조 : α=0.5 • 침상형구조 : α=1.0 • 개방형구조 : α=1.2
	건축한계선	지침 준수시	•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전면공지 및 규모 준수시	•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α	• 피로티구조 : α=0.5 • 개방형구조 : α=1.2
대지내 통로	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α	• 피로티구조 : α=0.5 • 개방형구조 : α=1.0 ※ 지하 및 고가공공보행통로는 지하철, 지하 광장,지하보도, 보도육교와 연계 시 부여
		보차혼용통로	• 기준용적률 × (조성면적 ÷ 대지면적) × α	
환경 친화적 건축물	자연지반 보존	보존시	• 기준용적률 × (자연지반보존면적 ÷ 대지면적) × 0.2	
	옥상녹화	준수시	• 기준용적률 × (녹화면적 ÷ 대지면적) × 0.1	• 녹화면적은 대지면적의 20%이내적용(법정 조경면적은 제외)
	중수도시설 설치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4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관련법에 의한 의무설치 시 미적용
	빗물이용 시설 설치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4	• 빗물저류탱크용량(ton)이 건축면적 × 0.05 또는 대지면적 × 0.02이상 설치 시 적용
	녹색주차장, 투수성 포장	준수시	•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 ÷ 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 0.05이내
	신재생에너지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5	• 건축공사비의 1%이상 또는 총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 부담
	에너지절약	1등급(3개항목중 1개항목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8	• 에너지절감율 33.5%이상 • 에너지성능지표 81점이상 • 친환경건축물인증 85점이상
		2등급(3개항목중 1개항목 준수시)	• 기준용적률 × 0.05	• 에너지절감율 23.5~33.5%미만 • 에너지성능지표 74-81점미만 • 친환경건축물인증 75-85점미만
최고높이계획		준수시	• 기본용적률 인센티브 항목	

주) 1. 허용용적률 산출 : 기준용적률 + ∑(각 항목별 용적률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
2.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용적률 완화시 공지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외 추가 건축선 후퇴 부분은 전면공지로 인센티브를 적용.
3. 기본항목(건축한계선, 최고높이계획)을 모두 준수 시 기본용적률 인센티브(100%)를 부여.
4. 권장용도면적이란 실제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부분과 계단실,엘리베이터,화장실 등 공용부분을 포함한 면적을 말함.
5.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20%는 친환경계획요소 사용시에만 제공되며, 기타의 일반계획요소에 의해 대체 불가함.

2) 역세권 청년주택 운용기준에 따른 용적률 완화항목에 대한 계획

사업조건 항목		내용	계획사항	비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공공기여율 10%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	• 공공기여 10.07%(89.28㎡)[1]	• 노량진동 37-1번지 외 7필지 (37-4, 37-6, 37-7, 37-15, 39-13, 39-14, 39-39)에 한함 • 모든 항목을 충족할 경우 기본용적률 800% 부여
주택건설 기준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45㎡ 이하 • 준공공임대주택 : 전용 60㎡ 이하	• 공공임대주택 : 전용 14.02㎡ 계획 • 준공공임대주택 : 전용 14.02㎡, 전용 28.04㎡ 계획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이상 목적으로 이행	• 에너지 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이행 적용	
주민공동 시설	커뮤니티시설	• 100㎡이상 설치	• 지상2층에 102.65㎡ 계획	

1) 총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 : 허용용적율 미확보 부속토지에 의한 공공임대 확보 비율 7.48%(66.32㎡)를 포함하여 총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17.56%(155.60㎡) 확보하여 계획 [(10.07%(89.28㎡) + 7.48%(66.32㎡) = 17.56%(155.60㎡)]

다. 건축물의 건축선 배치 형태 : 변경없음

적용대상		건축 한계선	벽면 한계선	비고
간선도로변	노량진로, 장승배기길	3m	-	• 보도형 조성(간선부 보행구간 확보)
이면도로변	6m 도로변	1m	-	• 보행공간의 안전 및 확보를 위하여 건축한계선 추가
	8m미만 도로변	1~2m	-	• 차도형 조성(이면부 차도구간 6m이상 확보)
	이투스학원 이면부통로	4~6m 미만	-	• 차도형 조성(이면부 차도구간 6m이상 확보)
	KTF이면부 고시원밀집지일대	1m 미만		• 차도형 조성(이면부 차도구간 6m이상 확보)
	만안로 신한은행 이면부일대	1m	-	• 보차혼용형 조성(이면부 보행 및 차도 구간확보)
	공공보행통로 조성부분	-	3m	• 보도형 조성(노량진동 56-9 일대 이면부 보행구간 확보)

3.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쌈지형 공지	보행통로 및 가각부		26개소	• 개발규모 확대에 따른 쌈지형공지 추가 지정
전면 공지	구역전체	간선 도로변	3m	• 보도 및 오픈스페이스로 조성
		이면 도로변	1~4m 이하	• 이면도로여건을 감안한 차도 및 보도로 조성 - 도로(소(국)3-2) 일부분 추가
공공 보행 통로	보행동선 단절부 및 보행공간 확보 필요 지역	E	4m	• 노량진로와 이면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의 연계를 위하여 공공보행통로 신설
		G	3m	• 이면부의 원활한 보행연결을 위해 종전계획사항 존치
차량출입금지구간			• 간선변 가각부 및 주요전면도로변(노량진로 및 장승배기길)차량출입금지구간 지정 • 교차로에 면한 대지(획지)의 경우 교차로에서 10m이내에 주차출입구 설치 금지	• 간선변으로의 차량 직접출입 규제로 안전한 교통소통 및 차량흐름의 효율성 상승 도모
보행자우선도로			• 동작구청과 대성학원 사이의 이면도로를 지역주민들의 통행 편의성제고를 위해 동서방향 보행자우선도로 지정(폭원6m) • 노량진로와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계획의 보행녹지축을 연결하는 이면도로 2개소에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폭원 6m,8m) • 만양로 이면도로변의 보행자를 위주로 한 통행체계 확립	• 보행자를 중심으로 한 쾌적한 통행공간 확보 및 차량과 보행자의 조화로운 소통 유도 • 주요지역 및 이면도로체계와 보행흐름 연계
보차혼용통로			• 노량진동 40-31일대의 획지단위 개발시기에 따른 맹지발생방지를 위해 한시적 보차혼용 통로 운영 • 노량진동 116-2일대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유도를 위하여 8m폭원의 보차혼용통로 운영 • 노량진동 57-1일대의 노량진로와 이면도로간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6m폭원의 보차혼용통로 운영	• 노량진로, 만양로 및 이면도로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보차혼용통로 신설로 차량과 보행자의 보다 원활한 통행 유도

Ⅳ.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7-2165호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부의안건의 공고)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구분	연번	부의 안건명	주관 부서
동의안 (2건)	1	서울특별시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자립 지원과
	2	서울특별시 소공인 특화지원 광역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경제정책과

서울시교육청공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17-211호

서울특별시의회 안건 제출 공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연번	의 안 명	제 출 자	의안번호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감사관)	2157
2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감사관)	2158
3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관리담당관)	2159
4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관리담당관)	2160
5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관리담당관)	2161
6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관리담당관)	2162
7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학교지원과)	2163
8	2017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재정과)	2164
9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재정과)	2165
10	서울특별시교육청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재정과)	2166
11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재정과)	2167

구 고 시

◈ 성동구고시 제2017-11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69-3호(1969.1.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50호(2011.2.17)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정비구역 내 도로가 폐지된 성동구 성수1가1동 26-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성 동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05	10	국지도로	290	성수1가 1동 26-1	성수1가 1동 72-14	일반도로	-	서고3호 (69.1.18)	서고2011-50호(2011.2.17) '성수전략정비구역' 지형도면 고시 시 정비구역 내 도로(900m) 폐지
변경	소로	1	105	9~10	국지도로	290	성수1가 1동 26-1	성수1가 1동 72-14	일반도로	-	서고3호 (69.1.18)	일부도로 폭원변경 (경미한 변경)

- 변경사유서

변경전	변경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성수1가 26-1 ~ 성수1가 72-14	성수1가 26-1 ~ 성수1가 72-14	도로폭원 (폭 10m ~ 9~10m)	현황도로 폭원과 도시계획시설(도로) 일치화 (전체연장 290m 중 79m 구간)

나. 주민들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계획과(☎2286-5555)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원구고시 제2017-104호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5호(1979.01.09.)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84호(2011.3.31)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55호(2017.4.27)호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아래 지상의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97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건축허가[2017-건축과-증축허가- 호(2017.09.)]시 의제처리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노원구청 건축과(☎2116-3897)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0월 19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26-2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2) 사업의 명칭 : 삼육대학교 살렘관, 브니엘관 증축사업
다. 사업시행규모
  1) 사업시행면적 : 173,141㎡
  2) 전체 건축물 규모 : 28개동, 연면적 합계 112.007.75㎡
  3) 용도/공사종별 : 교육연구시설(대학교)/증축
  4) 증축내용 : 2개동, 연면적합계 8,872.10㎡
    (살 렘 관)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4,452.22㎡, 기숙사(남)
    (브니엘관)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4,419.88㎡, 기숙사(여)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학교법인 삼육학원
  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길 11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 착수년월일 : 허가일(실시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
  2) 준공예정일 : 착수일로부터 330일 이내
바. 위치도 및 인가도면 : 노원구청 건축과 비치도면과 같음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지 번	지 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지역지구
26-21	대	173,141	173,141	학교법인삼육학원	자연녹지지역

아. 고시 방법 : 시보 게재

◈ 마포구고시 제2017-146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마포구 공고 제2017-870(2017.09.12)로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 완료한 『성산유수지 복개 녹지 및 주차장조성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치수과(☎3153-9812)에 비치하여 토지 및 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0월 19일
마 포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445(성산유수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 명 칭 : 성산유수지 복개 녹지 및 주차장조성 사업
다. 사업규모
○ 녹지조성 : A=1,260㎡
○ 주차장 건설 : 주차장 조성 A=740㎡(34면)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0. 06. 30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붙임

토 지 조 서

○ 사업명 : 성산유수지 복개 녹지 및 주차장조성 사업

연번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계			2,785	2,785							
1	성산동	445	유지	2,785	2,785	유수지	마포구	마포구 월드컵로 212				

물 건 조 서

연번	소 재 지 (위 치)		물건의 종류	구조 규격	편입 내역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번지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산동	445	배 수 펌 프 장	철근 콘크리트조	306.6㎡	마포구	마포구 월드컵로 212				
			단독주택	벽돌조	160.38㎡						
			공공이용 시 설	벽돌조	68.92㎡						

◈ 양천구고시 제2017-72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건설부고시 제6호(1984.1.7.)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실시계획승인에 의해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로 결정된 신정동 322-10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체육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양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87(신정동 322-10)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체육시설) 사업
- 명 칭 : 양천구민체육센터 헬스장 증축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양천구청장 김수영
- 주 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신정동 321-4)
라.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대지면적 : 6,877.1㎡(변경없음)
- 건축규모 : 지하2층, 지상3층(변경없음)
연면적 : 7,982.78㎡ → 8,062.78㎡(증 80㎡)
건폐율 : 38.35%(변경없음) / 용적률 : 50.33% → 51.42%(증 1.09%)
- 변경내용

구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용 도	면 적	용 도	면 적	
지상2층	운동시설	1,525.92㎡	운동시설	1,605.92㎡	증 80㎡

마. 시행기간
- 사업착수일 : 2017월 10월
- 준공예정일 : 2018월 02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변경없음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아. 위치도, 계획평면도, 설계도서 : 양천구청 문화체육과, 건축과 비치도면과 같음.(생략)
※ 기타 상세한 사항은 양천구 문화체육과(☎02-2620-3413), 건축과(☎02-2620-35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고시 제2017-163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구로구 구로동 557-19 ~ 557-61번지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구 로 구 청 장

1. 결정 취지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 구로동 산1-3번지(제중병원) 신축으로 확보되는 통행로(B=4m, L=76m)와 새말로 12길과의 도로 연계를 통한 주민 편의 제공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1)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	4	국지도로	23	구로동 557-19	구로동 557-61	일반도로	-	

2) 결정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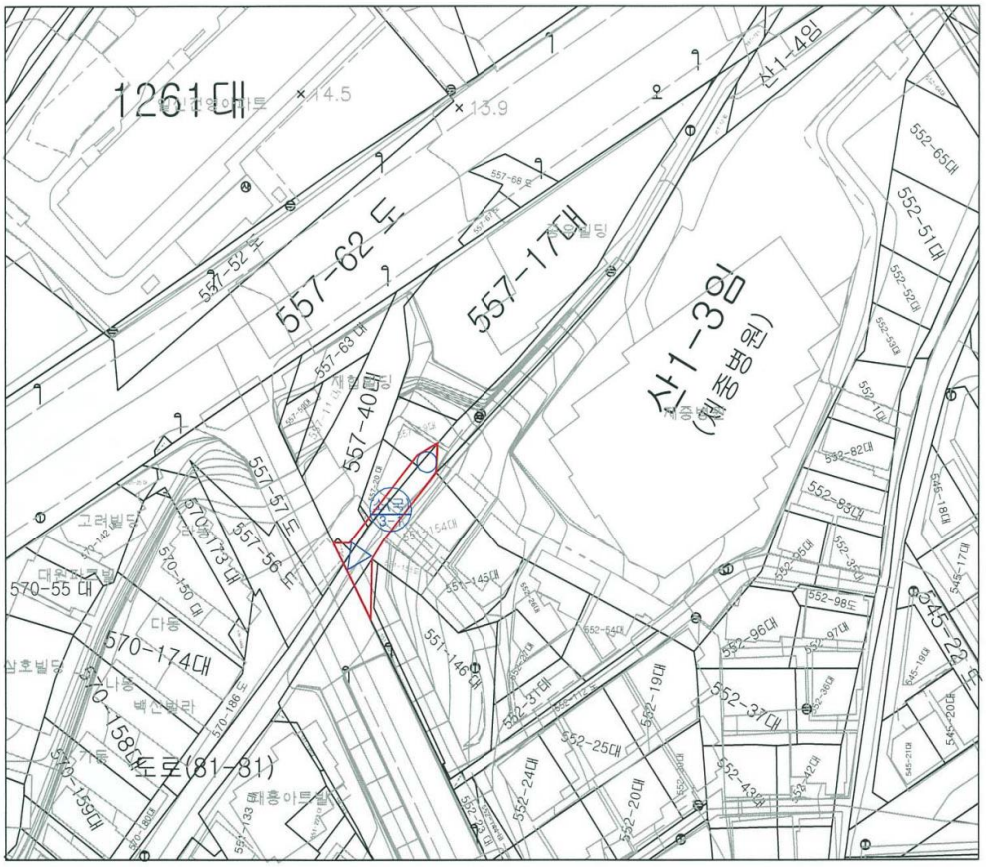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도로	• 신설 - B(폭)=4m, L(연장)=23m	구로동 산1-3번지(제중병원) 신축으로 주택가 통행로(B=4m, L=76m)가 확보되나 새말로 12길과 전체 구간이 연결되지 않고 잔여구간(B=1~2m, L=23m)이 남게 되어 도로의 연계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함.

3. 지형도면의 작성
구로구 도시계획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습니다.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 도시계획과(☏860-2955)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S = 1:600



구 분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 속	구로구 도시계획과	구로구 도시계획과	구로구 도시계획과
직 위	–	도시계획 팀장	도시계획 과장
직 명	지방시설 주사보	지방시설 주사	지방시설 사무관
성 명	양청일	김 태	이근식
확인인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안)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3	–	4	국지 도로	23	구로동 557-19	구로동 557-61	일반 도로	-	

■ 결정사유서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도로	- 신설 [폭(B)=4m, 연장(L)=23m]	구로동 산1-3번지(제중병원) 신축으로 주택가 통행로(B=4m,L=76m)가 확보될 계획이지만 새말로 12길과 전체구간이 연결되지 않고 잔여구간(B=1~2m,L=23m)이 남게 되어 도로의 연계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결정하고자 함.

범 례 : 도로신설 ——

◈ 금천구고시 제2017-89호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04호(2006.6.8.)로 결정되고, 제2015-52호(2015.2.26.)로 변경 결정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금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17.9.28.)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금 천 구 청 장

1. 결정(변경)취지
   ○ 금천구 시흥동 992-20 외 2필지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변경
   - 주민제안에 의한 공동개발 지정 및 최대개발규모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사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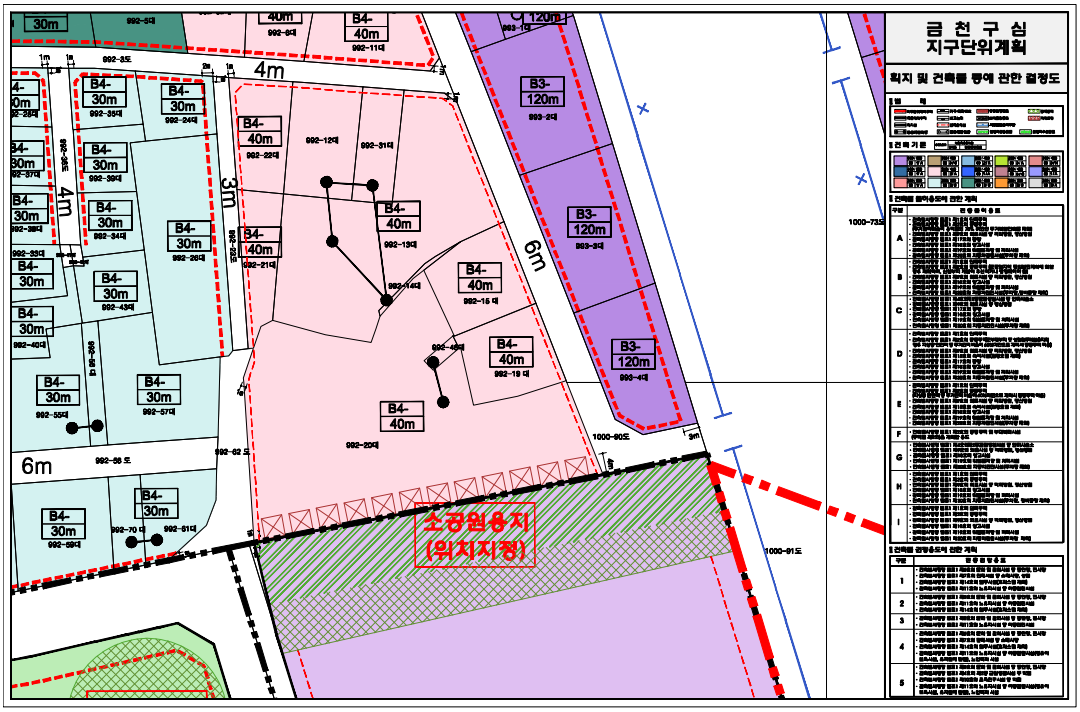
2.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
   ○ 필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위 치	면 적 (㎡)	계획내용		비 고
			기 정	변 경	
B4	992-19, 20, 46대	2,249.8	① 992-20,46대 공동개발 지정 ② 992-19대 단독개발	992-19, 20, 46대 공동개발 지정	· 토지이용합리화 위하여 시흥동 992-19호 추가하여 공동개발 지정으로 변경 · 최대개발규모 2,250㎡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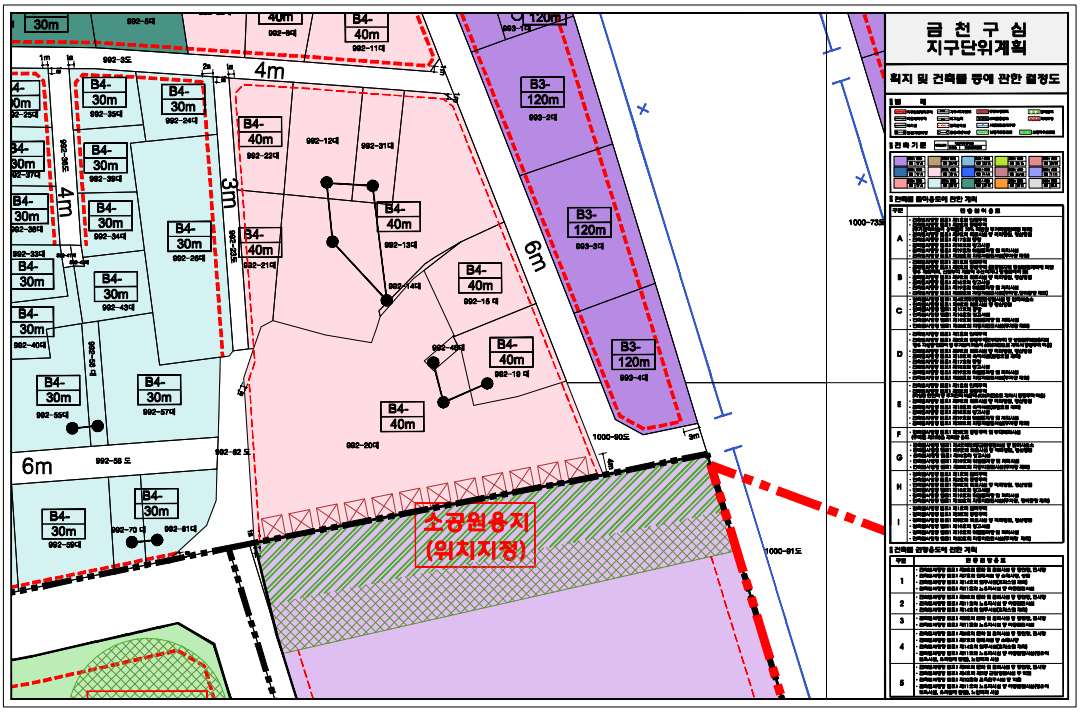
3. 관계도서는 금천구청 도시계획과(☏ 02-2627-2064)에 관련도서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첨부된 도면 등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첨부 :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기정)도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관악구고시 제2017-76호

도시관리계획 [서울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289호(2008. 8. 28.)로 결정된 「서울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중 획지계획(공동개발) 변경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관 악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서울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내 신림동 246-61호 외 1필지의 획지계획(공동개발) 변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서울대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기정		변 경	
지번	획지계획	면적(㎡)	획지계획	면적(㎡)
신림동 246-61	공동개발 (지정)	404	단독개발	235.0
신림동 251-19			단독개발	1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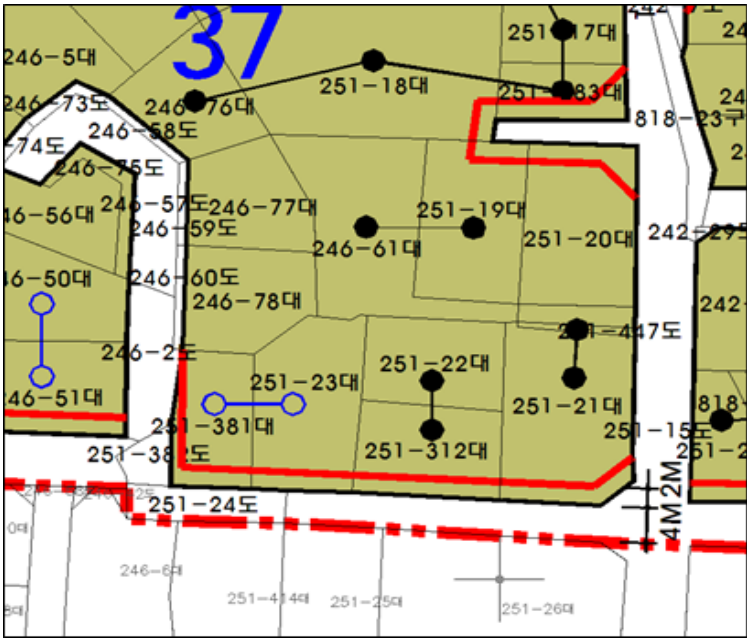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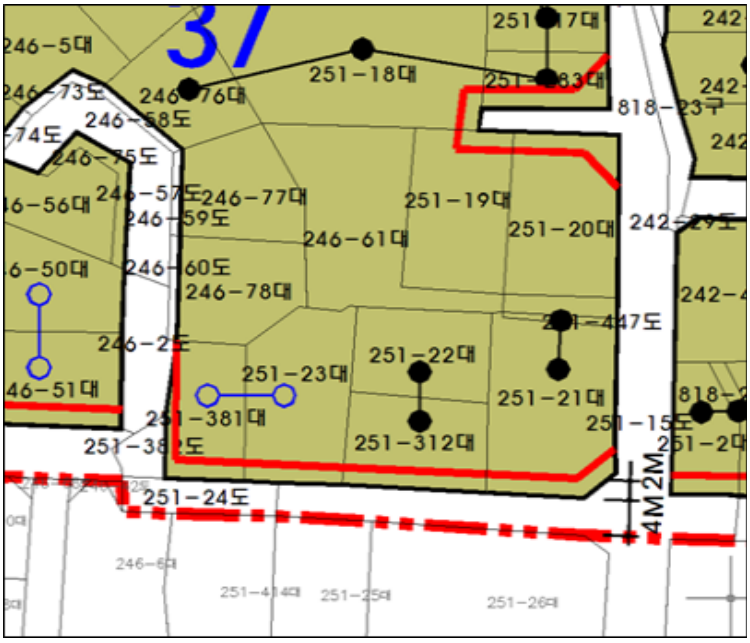
3. 지형도면 : 붙임 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기타 세부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

5. 열람 및 열람 장소
   ○ 세부내용은 관악구 도시계획과(☎02-879-636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시도시계획포털 (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 에 게시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신림동 246-61, 251-19호]

기 정

변 경


◈ 강남구고시 제2017-131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534호(1983.9.7.)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1호(2012.1.19.)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 강남구 고시 제2017-3호(2017.1.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한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개포로 403 일대 달터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변경)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개포로 403(변경 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없음)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 사업의 명칭 : 달터근린공원 조성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변경)
○ 기정 : 10,163㎡
○ 변경 : 13,195㎡(증3,032㎡) ※ 지장물 등 58동
라. 사업시행자(변경 없음)
○ 성명 : 강남구청장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마. 사업기간(변경)
○ 당초 : 실시계획 작성 고시일로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 실시계획 작성 고시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변경사유 : 기 실시계획 대상 지장물 소유자와 보상협의 등 사업 추진중

강남구고시 제2016-1호 및 서울시보 제3329호(2016.1.7.) ‖ 강남구고시 제2016-27호 및 서울시보 제3337호(2016.3.3.) ‖ 강남구고시 제2016-60호 및 서울시보 제3348호(2016.5.4.) ‖ 강남구고시 제2016-96호 및 서울시보 제3357호(2016.7.7.) ‖ 강남구고시 제2016-51호 및 서울시보 제3366호(2016.8.18.) ‖ 강남구고시 제2016-141호 및 서울시보 제3376호(2016.10.27.) ‖ 강남구고시 제2017-3호 및 서울시보 제3390호(2017.1.12.)

바.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지장물) 조서(추가) : 붙임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해당없음
아. 설계도서(변경없음) : 별첨
자.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변경없음) : 별첨
차.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변경없음) : 해당없음
카.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변경없음) : 해당없음
타.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도시선진화담당관(☎02-3423-6993)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사용 또는 수용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1	강남구 개포동 156	공원	17,658.1	17,658.1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2	강남구 개포동 175	공원	18,812.8	17,658.1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	강남구 개포동 175-4	공원	17,741.6	17,658.1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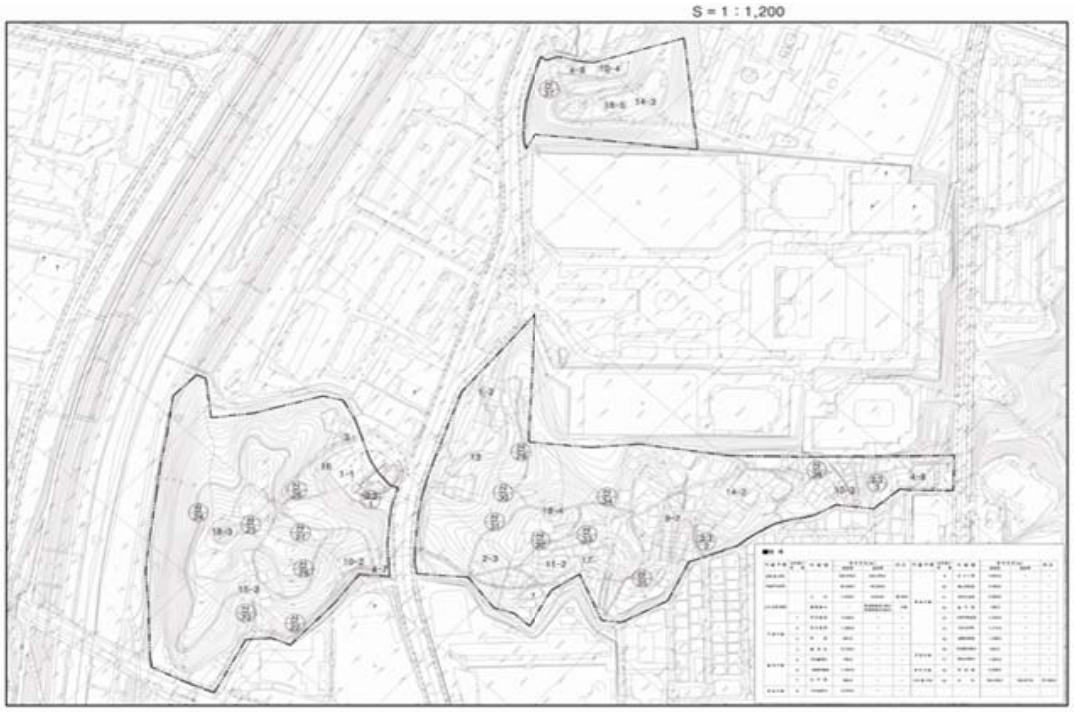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 현 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50.2㎡)	1	주거	김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26
2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6.9㎡)	1	주거	박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27
3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16.5㎡)	1	주거	한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28
4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10.5㎡)	1	주거	고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29
5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59.0㎡)	1	주거	조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36
6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25.8㎡)	1	주거	오 * * 이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 소유권 확인에 따라 처리		1-41
7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53.2㎡)	1	주거	이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51
8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53.3㎡)	1	주거	이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55
9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70.0㎡)	1	주거	강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58
10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45.5㎡)	1	주거	김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60
11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69.2㎡)	1	주거	이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61
12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24.2㎡)	1	주거	전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67
13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138.5㎡)	1	주거	정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77
14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12.9㎡)	1	주거	배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79
15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37.3㎡)	1	주거	김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1지구
16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55.6㎡)	1	주거	백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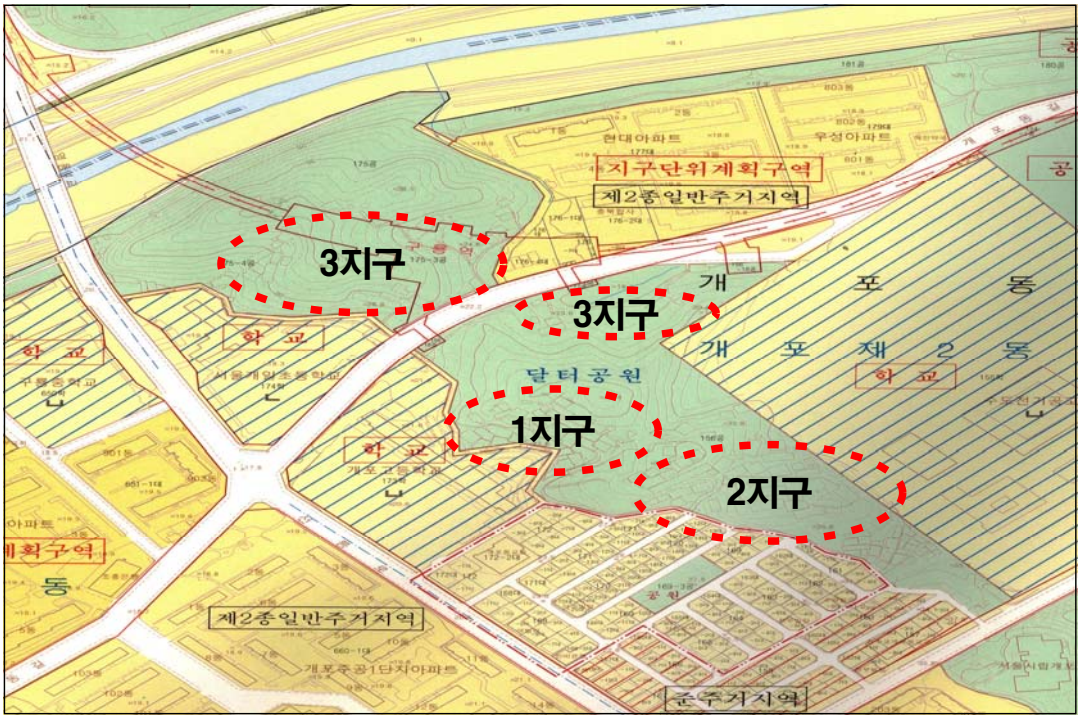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7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23.8㎡)	1	주거	백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4
18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39.2㎡)	1	주거	전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8
19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36.0㎡)	1	주거	전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9
20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33.2㎡)	1	주거	박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10
21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56.3㎡)	1	주거	김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14
22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41.5㎡)	1	주거	오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16
23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시멘트(60.9㎡)	1	주거	정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22
24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64.1㎡)	1	주거	최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26
25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56.8㎡)	1	주거	김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27
26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34.3㎡)	1	주거	김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28
27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94.2㎡)	1	주거	조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29
28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88.4㎡)	1	주거	이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30
29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64.8㎡)	1	주거	주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31
30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시멘트(64.0㎡)	1	주거	김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32
31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79.7㎡)	1	주거	진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33
32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37.8㎡)	1	주거	이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53
33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78.4㎡)	1	주거	박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54
34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68.8㎡)	1	주거	황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29-1
35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63.9㎡)	1	주거	박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55
36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65.0㎡)	1	주거	노 * * 김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 소유권 확인에 따라 처리		2-56
37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49.1㎡)	1	주거	김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57
38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48.3㎡)	1	주거	문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59
39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31.9㎡)	1	주거	윤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정 * *	좌동	2-60
40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59.4㎡)	1	주거	이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61
41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SP(30.8㎡)	1	주거	은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63
42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24.0㎡)	1	주거	고 * *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64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이용현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43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41.8㎡)	1	주거	정**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65
44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33.6㎡)	1	주거	박**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67
45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75.8㎡)	1	주거	황**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68
46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합판(94.7㎡)	1	주거	박**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69
47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56.4㎡)	1	주거	황**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70
48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40.1㎡)	1	주거	이**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79
49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142.6㎡)	1	주거	이**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95
50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64.2㎡)	1	주거	이**	강남구 선릉로18길 15	이**	좌동	2-96
51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102.3㎡)	1	주거	박**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97
52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39.5㎡)	1	공가	박**-1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97 옆
53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53.1㎡)	1	주거	박**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101
54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43.6㎡)	1	주거	곽**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137
55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32.9㎡)	1	주거	김**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138
56	강남구 선릉로18길 15	건물	스레트/목재(19.0㎡)	1	주거	김**	강남구 선릉로18길 15			2지구 (천불사)
57	강남구 개포로 403	건물	스레트/SP(51.2㎡)	1	주거	김**	강남구 개포로 403			3-36
58	강남구 개포로 403	건물	스레트/목재(17.5㎡)	1	주거	탁*	강남구 개포로 403			3지구

▌설계도서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송파구고시 제2017-140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폐지) 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변경결정(폐지)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송 파 구 청 장

1. 변경결정(폐지) 취지
   ○ 마천동 26번지 일대 화인아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 기능이 상실되는 도로에 대해 해당 도시계획시설(도로)을 폐지하는 사항임.
2.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폐지)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폐지)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3	-	4.0	국지 도로	28.4	송파구 마천동 26-3	송파구 마천동 26-1	일반 도로	-	-	

   ○ 변경결정(폐지) 사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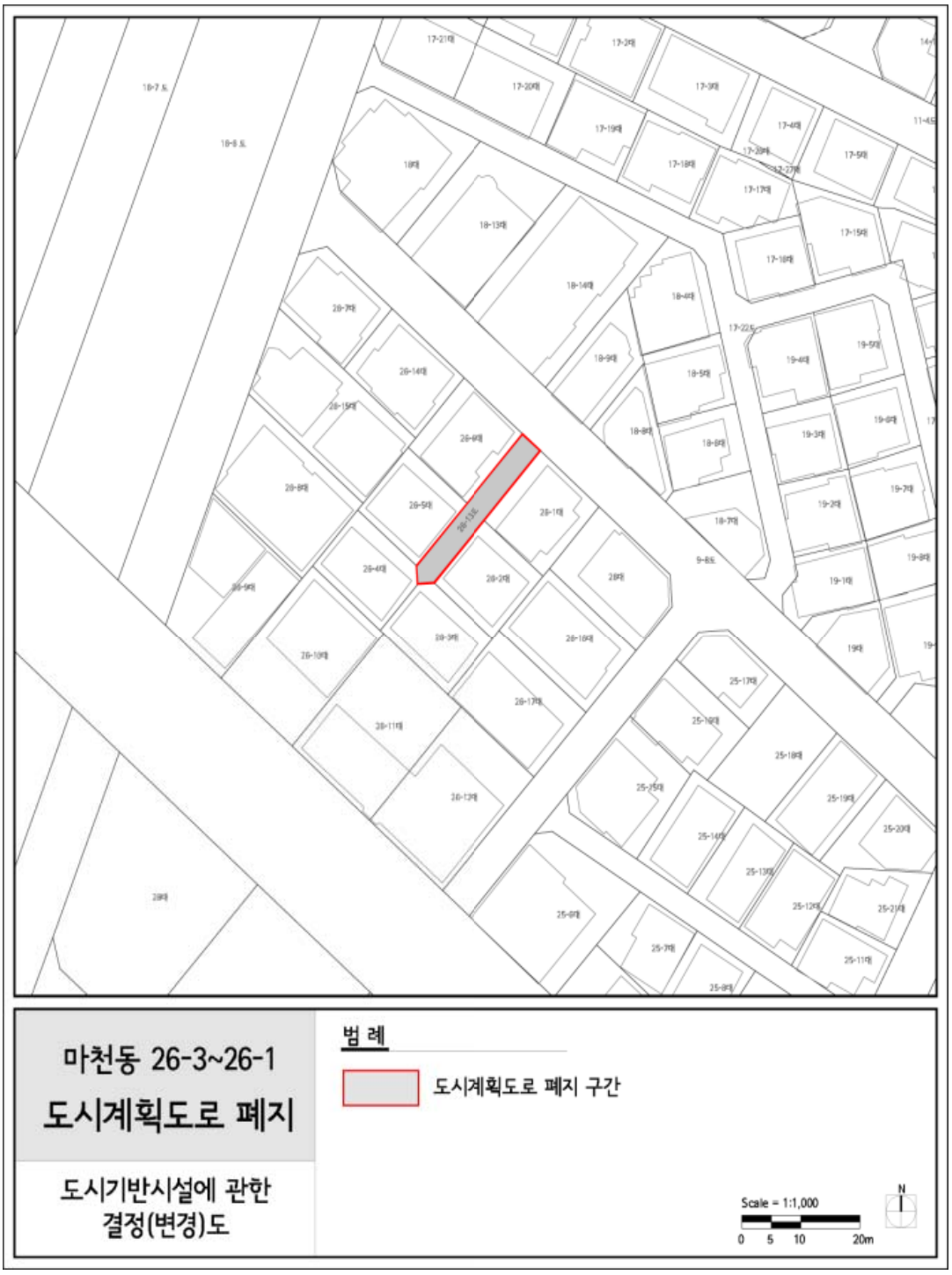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소로 3-	-	· 도로 폐지 - 폭 :4.0m, 연장28.4m	· 마천동 26번지 일대 화인아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도로 기능 상실

3. 결정도면 : 붙임 참조
   ※ 붙임 결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 송파구청 도시계획과(☎2147-2995)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결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폐지)도

(위치: 마천동 26-3~6-1, 축척: 1/1,000)



◈ 강동구고시 제2017-173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77호(2017. 7.27.)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로 결정 고시되고 강동구공고 제2017-1176호(2017. 9.14.)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 공고한 강동구 상일동 394-4 ~ 상일동 405 전기공급을 위한 전력구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및 제10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강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394-4 ~ 강동구 상일동 405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나. 명 칭 : 강동~하남 전기공급설비 전력구공사
3. 사업의 내용
   가. 사업면적 : 1,713㎡(대심도 터널)
   나. 공사연장 : 500m
   다. 폭원 : 3.25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경기건설지사
   나.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창룡대로 236-3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사업착수일 :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나. 준공예정일 : 2019.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조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m^2)		토지소유자	비 고
				공부상면적	사용면적		
1	강동구 상일동	8-2	도	13,583	584.2	국토교통부	광장중복
2	강동구 상일동	12-9	도	13.1	7.4	서울특별시	
3	강동구 상일동	12-3	도	25,705	353.8	국토교통부	
4	강동구 상일동	13	도	29	14.3	국토교통부	광장, 도로중복
5	강동구 상일동	12-2	도	17,508	398.1	서울특별시	
6	강동구 상일동	394-4	도	8,905	231.7	국토교통부	
7	강동구 상일동	405	잡	5,692	124	한국전력공사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 도시계획과(3245-60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공 고

◈ 용산구공고 제2017-128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506호(2009.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20호(2009.12.17)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1호(2013.3.28)로 결정 및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용산구고시 제2017-36호(2017.3.30)로 실시계획 인가된 우리구 용산동3가 1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 제96조 및 제97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동법 제91조, 동법 시행령 제100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 서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394)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보입니다.

2017년 10월 19일
용 산 구 청 장

가. 변경인가 내용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 칭 : 국방부 서문 개선 사업
2) 사업 시행지의 위치 : 용산구 용산동3가 1번지외 28필지
3)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국방부(국방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4) 사업기간
   ○ 실시계획변경인가일 ~ 2018. 8. 31.
5)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공사면적 : 1,075㎡
   ○ 공사규모 : 아스콘포장(3,750㎡), 옹벽설치(H=2~3.5m, L=91.42m) 등
   ※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 및 건축물 범위 변경없음

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별첨】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계				384,064.9	276,970.9		
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	대지	63,718.0	63,718.0	국방부장관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92	도로	2,891.3	782.9	국방부장관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93	도로	543.1	543.1	국방부장관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4-1	대지	23,655.2	23,655.2	국방부장관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4-3	대지	2,756.0	2,756.0	국방부장관	
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4-4	대지	1,901.5	1,901.5	국방부장관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4-5	대지	2,199.7	2,199.7	국방부장관	
8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5-1	대지	33,588.9	32,141.6	국방부장관	
9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6	대지	15,299.7	15,259.4	국방부장관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6-4	도로	17,070.3	13,455.4	국방부장관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9	대지	30,476.0	30,476.0	국방부장관	
12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1-1	대지	17,300.2	7,851.8	국방부장관	
13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1-2	대지	13,255.2	13,255.2	국방부장관	
14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1-3	대지	1,510.7	1,510.7	국방부장관	
15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2-1	대지	58,021.3	3,452.3	국방부장관	
1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2-4	대지	10,145.4	10,145.4	국방부장관	
17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2-5	대지	3,071.1	3,071.1	국방부장관	
18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3가	12-6	대지	416.5	416.5	국방부장관	
19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5	대지	1,471.1	109.6	국방부장관	
20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2-65	대지	4,393.5	3,418.0	국방부장관	
21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3-1	대지	39,661.0	14,956.5	국방부장관	
22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3-2	대지	4,934.0	4,934.0	국방부장관	
23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4	대지	7,206.6	7,206.6	국방부장관	
24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5-1	대지	859.7	859.7	국방부장관	
25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6-1	대지	10,637.0	10,637.0	국방부장관	
26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6	대지	6,576.2	2,114.7	국방부장관	
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7-2	대지	284.9	284.9	국방부장관	
28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7	대지	7,083.7	2,721.0	국방부장관	
29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5가	19-781	도로	3,137.1	3,137.1	국방부장관	

◈ 강북구공고 제2017-1136호

도시계획시설(북한산 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건설부고시 제465호(1971.8.7.)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및 서울시 고시 제561(1987.8.1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공원) 결정으로 공원결정 및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55호(2004.8.10)로 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7-231호(2017.3.2)로 도시계획시설(북한산 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7-45호(2017.3.30)로 도시계획시설(북한산 도시자연공원)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하고자 합니다.
2. 본 공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송달 불능 등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강 북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강북구 미아동 산108-54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017년 도시계획시설(북한산 도시자연공원)사업
다. 사업의 내용: 공원 조성(토지보상)
라. 규 모 변 경: 당초 토지보상4,529㎡ → 변경 토지보상 3,100㎡(감1,429㎡)
마. 사업의 시행자: 강북구청장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사업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2년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및 물건조서: 별첨 조서
아. 토지 소유자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별첨 조서
자.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차. 열람장소 : 강북구청 공원녹지과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푸른도시과(☎901-6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명 : 2017년 도시계획시설(북한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

(변경전)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지분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필지			4,529	4,529								
1	미아동 산108-54	임야	4,529	4,529	4529분의 323.96		강남구 서초동 20-1 삼익아파트 1-307	김순자				
					4529분의 323.96		서초구 서초동 20-1 삼익아파트 1-307	김본기				
					22645분의 624.78		동대문구 장안동 322-1 삼성연립 나-205	전병희				
					22645분의 416.52		동대문구 장안동 322-1 삼성연립 나-205	박정준				
					4529분의 115.7		서초구 원지동 402-1	김창례				
					4529분의 539.96		서대문구 연희동 351-1 미도빌라 3-203	이숙현				
					4529분의 99.17		성북구 석관동 340-393	남궁춘화				
					4529분의 109.09		송파구 풍납동 326-4 태양연립 다-2	양윤복				
					4529분의 109.09		강남구 일원동 688 공무원아파트 906-502	이삼랑				
					4529분의 92.57		동대문구 휘경동 42-1	김영숙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지분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	미아동 산108-54	임야	4,529	4,529	4529분의 109.09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3 진흥아파트 127-1205	홍양표				
					4529분의 231.39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3 진흥아파트 127-1205	백임순				
					4529분의 108.16		종로구 명륜4가 127-21	채규성				
					4529분의 99.17		도봉구 창4동 주공아파트 1902-702	남궁유나				
					4529분의 99.14		강남구 삼성동 38-9 501호	김진영				
					4529분의 105.78		성북구 정릉동 239 정릉풍림아이원아파트 116-1402	윤숙자				
					4529분의 125.62		중랑구 양원역로12길37(망우동)	최성자				
					4529분의 214.94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45 선경아파트 103-205	이원영				
					4529분의 107.9		송파구 오금동 2 대림아파트 1-404	강정민				
					4529분의 33.06		영등포구 신길동 339 신미아파트 라-504	우종인	2016.4.18.압류 (38세금징수과-9328)	서울특별시	압류	
									2012.7.17.압류 (주차문화과-15924)	영등포구	압류	
					4529분의 185.11		원주시 개운동 581-1 휴먼시아원주개운1단지 102-201	엄상옥				
					4529분의 105.79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48, 506-1001(강변마을 월드메르디앙)	최지연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지분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	미아동 산108-54	임야	4,529	4,529	4529분의 109.09		구로구 시흥동 911-16	우정석				
					4529분의 216.06		구리시 교문동 220-4	장정숙				
					4529분의 115.7		송파구 잠실동 27 아파트 528-207	백재영				
					4529분의 323.96		강남구 대치동 902 동아아파트 가-506	정우택				
					4529분의 215.8		도봉구 쌍문동 525	박명숙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79-4	(주)동아상호신용금고	근저당	공동담보
									2007.5.18압류(세무과-11226)	서울특별시 강북구	압류	
									2006.9.28가압류 결정(2006카단6035)	의정부농업협동조합	압류	
					4529분의 96		중랑구 면목동 181-20	신칠성				
					4529분의 115.7		광명시 너부대로45번안길1, 비01호 (광명동 신진빌라)	박신현				

(변경후)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지분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필지			4,529	3,100								
1	미아동 산108-54	임야	4,529	3,100	4529분의 323.96		강남구 서초동 20-1 삼익아파트 1-307	김순자				
					4529분의 323.96		서초구 서초동 20-1 삼익아파트 1-307	김본기				
					22645분의 624.78		동대문구 장안동 322-1 삼성연립 나-205	전병희				
					22645분의 416.52		동대문구 장안동 322-1 삼성연립 나-205	박정준				
					4529분의 115.7		서초구 원지동 402-1	김창례				
					4529분의 539.96		서대문구 연희동 351-1 미도빌라 3-203	이숙현				
					4529분의 99.17		성북구 석관동 340-393	남궁춘화				
					4529분의 109.09		송파구 풍납동 326-4 태양연립 다-2	양윤복				
					4529분의 109.09		강남구 일원동 688 공무원아파트 906-502	이삼랑				
					4529분의 92.57		동대문구 휘경동 42-1	김영숙				
					4529분의 109.09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3 진흥아파트 127-1205	홍양표				
					4529분의 231.39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97-3 진흥아파트 127-1205	백임순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지분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	미아동 산108-54	임야	4,529	3,100	4529분의 108.16		종로구 명륜4가 127-21	채규성				
					4529분의 99.17		도봉구 창4동 주공아파트 1902-702	남궁유나				
					4529분의 99.14		강남구 삼성동 38-9 501호	김진영				
					4529분의 105.78		성북구 정릉동 239 정릉풍림아이원아파트 116-1402	윤숙자				
					4529분의 125.62		중랑구 양원역로12길37(망우동)	최성자				
					4529분의 214.94		안산시 상록구 사동 1345 선경아파트 103-205	이원영				
					4529분의 107.9		송파구 오금동 2 대림아파트 1-404	강정민				
					4529분의 33.06		영등포구 신길동 339 신미아파트 라-504	우종인	2016.4.18.압류 (38세금징수과-9328)	서울특별시	압류	
									2012.7.17.압류 (주차문화과-15924)	영등포구	압류	
					4529분의 185.11		원주시 개운동 581-1 휴먼시아원주개운1단지 102-201	엄상옥				
					4529분의 105.79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48, 506-1001 (강변마을 월드메르디앙)	최지연				
					4529분의 109.09		구로구 시흥동 911-16	우정석				
					4529분의 216.06		구리시 교문동 220-4	장정숙				

연번	소 재 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지분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권리의 내 용	
1	미아동 산108-54	임야	4,529	3,100	4529분의 115.7		송파구 잠실동 27 아파트 528-207	백재영				
					4529분의 323.96		강남구 대치동 902 동아아파트 가-506	정우택				
					4529분의 215.8		도봉구 쌍문동 525	박명숙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79-4	(주)동아상호신용금고	근저당	공동담보
									2007.5.18압류(세무과-11226)	서울특별시 강북구	압류	
									2006.9.28가압류 결정(2006카단6035)	의정부농업협동조합	압류	
					4529분의 96		중랑구 면목동 181-20	신칠성				
					4529분의 115.7		광명시 너부대로45번안길1, 비01호 (광명동 신진빌라)	박신현				

◈ 노원구공고 제2017-842호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열람 공고

1. 노원구 중계동 453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고시 제2016-52(2016.06.16)호 관련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된 사업을 제2017-100(2017.09.21)호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공공공지)사업으로 변경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교육지원과에 비치하여 공고일(시보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열람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은 열람기간 내에 노원구청 교육지원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9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공공공지) 사업
○ 사업의 명칭 : 중계동 453일대 청소년수련시설 건축 및 공공공지 사업
나.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453일대
다. 사업시행자
○ 성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 (상계동701-1)
라.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19.12.31
마. 사업내용
○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및 공공공지 조성
- 청소년수련시설 : 2,726 m^2
- 공공공지 : 942 m^2
바.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교육지원과
사. 공고방법 : 시보, 구 홈페이지 및 해당 동 게시판
아. 열람공고기간 : 시보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교육지원과(☎ 2116-3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토지조서

1. 청소년 수련시설

연번	위치	면적(㎡)	소유주	비고
계	노원구 중계동	2,726.0	-	
1	중계동 산4-2	257.0	서울특별시 노원구	

연번	위치	면적(㎡)	소유주	비고
2	중계동 산5	177.5	서울특별시 노원구	
3	중계동 157-65	92.6	국(건설부)	
4	중계동 451-5	54.0	서울특별시 노원구	
5	중계동 451-25	78.0	서울특별시 노원구	
6	중계동 452-4	3.0	서울특별시	
7	중계동 452-13	8.0	서울특별시 노원구	
8	중계동 452-15	14.0	서울특별시 노원구	
9	중계동 452-16	103.0	서울특별시 노원구	
10	중계동 452-22	15.0	서울특별시 노원구	
11	중계동 452-23	72.0	서울특별시 노원구	
12	중계동 453	722.0	서울특별시 노원구	
13	중계동 453-1	92.9	서울특별시 노원구	
14	중계동 453-2	18.0	서울특별시 노원구	
15	중계동 453-9	267.0	서울특별시 노원구	
16	중계동 453-10	353.0	서울특별시 노원구	
17	중계동 453-39	41.0	서울특별시 노원구	
18	중계동 453-41	341.0	국(건설부)	
19	중계동 453-42	17.0	서울특별시 노원구	

2. 공공공지

연번	위치	면적(㎡)	소유주	비고
계	노원구 중계동	942.0	-	
1	중계동 453-36	20.0	서울특별시 노원구	
2	중계동 453-37	18.0	서울특별시 노원구	
3	중계동 453-38	770.0	서울특별시 노원구	
4	중계동 453-40	21.0	서울특별시 노원구	
5	중계동 453-38	113.0	서울특별시 노원구	

◈ 노원구공고 제2017-845호

도시계획시설사업(경춘제2녹지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429호(1978. 8. 30.)로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2호(2016. 1. 14.)로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변경) 되었으며, 서울특별시노원구 고시 제2016-67호(2016. 7. 21.)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업(경춘제2녹지조성)에 대하여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본 고시로 갈음하며, 관련내용은 노원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고 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9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노원구 공릉동 103-5번지 일대 (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경춘제2녹지조성) (변경없음)
다. 면 적 : 67,038㎡ (변경없음)
라. 사업의 내용 : 토지 및 물건 등 보상, 녹지 조성 (변경없음)
마. 사업 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변경없음)
바.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8. 12. 31 (변경)
사.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부터 20일간
아. 열람장소 : 노원구청 공원녹지과(☎ 2116-3975)

◈ 서대문구공고 제2017-1030호

도시계획시설(경의제2녹지)사업 실시계획변경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429호(1978.8.26.)로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780호(1980.5.26.)로 지적승인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고시 제2017-117호(2017.8.3.) 실시계획 인가고시 한 경의제2녹지에 대하여, 사업구역 내 토지의 도시계획선에 의한 지적분할이 발생됨에 따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경의제2녹지)실시계획 변경사항을 작성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열람 공고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이며 본 사업시행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 서대문구청(푸른도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용할 토지 및 물건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고 미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11 등 4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녹지)사업
  2) 사업의 명칭 : 경의제2녹지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 당초 : 158.7㎡ ○ 변경 : 165.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대문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고시일 ~ 2018.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물건의 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조서참조
  ※ 조서상의 물건은 현황 측량한 철거될 지장물로 보상 시 물건의 종류와 면적이 조서상의 물건 및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사. 사업의 주요내용 : 토지 및 건물 보상, 녹지조성 등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푸른도시과(☎330-1711)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토지 등의 감정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공고되는 내용과 달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보상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조서

□ 토지 현황 : (변경 전) 4필지 158.7㎡ → (변경 후) 4필지 165.6㎡

연번	소 재 지 (변경 전→변경 후)	지 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소유권이 외의권리 내용	변경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1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5-5	대	9.9	9.9	9.9	9.9	박영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24, 브라운스톤금호 102-1401				
2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5	대	28.8	28.8	28.8	28.8	박영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24, 브라운스톤금호 102-1401				
3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9	도로	75	5.6	66	0	구유지					도시계획선에 따른 지적분할
4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11	도로	0	69.4	0	69.4	구유지					도시계획선에 따른 지적분할
5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9-24	도로	79.9	22.4	54	0	시유지					도시계획선에 따른 지적분할
6	서대문구 충정로3가 129-29	도로	0	57.5	0	57.5	시유지					도시계획선에 따른 지적분할

□ 건물(지장물) 현황 : 변경내용 없음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실제이용 상황	건축물관리 대장면적 (㎡)	현황측량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변경			변경내용	비고
							성 명 (변경전→변경후)	주 소 (변경전→변경후)	성명	주소	권리의 내용		
1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5-5	점포 (횟집)	세멘조	점포 (자갈치횟집)	39.6696	110.6	박영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매봉길 24, 브라운스톤금호 102-1401	양금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5-5	세입자 (점포)	변경없음	
2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2	점포 (분식집)	세멘조	점포 (철길떡볶이)	-	39.7	허덕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2				변경없음	

□ 영업권조서 : 변경내용 없음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류	상호	실제이용상황	소 유 자		변경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1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5-5	영업권	세멘조	점포 (음식점)	양금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55-5	변경없음	
2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2	영업권	세멘조	점포 (음식점)	허덕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143-2	변경없음	

◈ 양천구공고 제2017-1229호

도시관리계획[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3호로 결정(변경)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정동 972-5,6호와 관련하여 양천구 공고 제2017-714호(2017.06.08.)로 열람공고 한 신정네거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2017년 제12차(2017.07.26) 및 재15차(2017.09.27)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수정가결)을 반영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열람공고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양 천 구 청 장

1. 열람기간 : 2017. 10. 19 ~ 11. 03(15일간)
2. 열람장소 : 양천구청 7층 균형개발과(☎2620-3513)
3. 지구단위계획(변경) 사항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다.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
   (가) 가구계획 : 변경없음
   (나) 획지계획 : 변경
   □ 공동개발 지정 및 권장에 관한 결정 : 변경

가구 번호	도면 번호	면적 (㎡)	위 치	면적 (㎡)	계 획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13BL	3	1,968.1	양천구 신정동 972-4	577.6	972-5(권장)	972-5(권장)	
			양천구 신정동 972-5	572.8	972-4(권장) 972-6(지정)	972-4(권장)	972-6와의 공동개발(지정) 해제
			양천구 신정동 972-6	817.7	972-6(지정)	-	972-5와의 공동개발(지정) 해제

※ 그 외 변경사항 없음

   (다) 최대개발규모 계획 : 변경없음
   (2) 건축물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건축물 용도계획 :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밀도계획 : 변경없음
   (다) 용적률 완화항목 및 내용 : 변경
   □ 용적률 완화 - 근린상업지역(지하철 출입구 인접지역) : 변경없음
   □ 용적률 완화 - 근린상업지역 : 변경

· 대상지역 : 13, 25, 26-1, 29-1BL
· 기준/허용용적률 : 300%이하/500%이하(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 200%)
· 입지 특성 : 지구중심기능 및 공공공간 확보를 위한 공동개발 유도 지역
· 주요인센티브 : 권장용도, 대지내공지, 공동개발 등

구분	항목		세분	완화기준	계획목표	비 고
기정	유도형	건축물 용도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0.6	지구중심 기증유도	연면적 30%이상
		도시경관	건축물등형태	기준용적률 × 0.02	도시경관 향상유도	우수디자인 등 유도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의무면적 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 2.0(피로티 1.0)	공공공간 확보	
		공동개발	권장	기준용적률 × 0.15	적정개발 규모유도	
	규제형	공동개발	지정	기준용적률 × 0.15	규제형 항목	
		대지내공지	침상형 쌈지형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0(피로티 0.5)		위치준수 및 45㎡이상 조성
			건축 한계선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2		
	의무형	환경친화	자연지반 보존, 옥상녹화,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녹색주차장 등		의무형 항목	
변경	유도형	건축물 용도	권장	기준용적률×(권장용도면적÷주차장을 제외한 건축연면적) × 0.6	지구중심 기증유도	연면적 30%이상
		도시경관	건축물등형태	기준용적률 × 0.02	도시경관 향상유도	우수디자인 등 유도
		대지내공지	공개공지	기준용적률 × {(설치면적-의무면적, 의무면적 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 ÷ 대지면적} × 2.0(피로티 1.0)	공공공간 확보	
			보차혼용통로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4.0(필로티 2.0)		신설
		공동개발	권장	기준용적률 × 0.15	적정개발 규모유도	
	규제형	공동개발	지정	기준용적률 × 0.15	규제형 항목	
		대지내공지	침상형 쌈지형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1.0(피로티 0.5)		위치준수 및 45㎡이상 조성
			건축	기준용적률 × (제공면적 ÷		

구분	항목		세분	완화기준	계획목표	비 고
			한계선	대지면적) × 0.2		
	의무형	환경친화	자연지반 보존, 옥상녹화,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녹색주차장 등		의무형 항목	

□ 용적률 완화 - 준주거지역(간선변) : 변경없음

□ 용적률 완화 - 준주거지역(이면부) : 변경없음

□ 용적률 완화 - 제3종일반주거지역(간선변) : 변경없음

□ 용적률 완화 -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면부 8m이하 도로변) : 변경없음

□ 용적률 완화 -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면부 6m이하 도로변) : 변경없음

□ 용적률 완화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변경없음

※ 공통사항 : 변경없음

(라) 건축물의 높이 : 변경없음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 변경

(가) 건축물 배치 : 변경없음

(나) 대지내 공지 : 변경

□ 대지내 공지에 관한 결정 : 변경

· 대지내 전면공지를 활용한 보행공간 및 휴게공간 확보

· 지구 내 동선체계의 효율성 확보

구분	적 용 대 상	기정	변경	비고
전면 공지	· 간선도로, 이면도로변의 건축한계선으로 확보	· 인도/차도 부속	· 인도/차도 부속	- 변경없음
공개 공지	· 보행환경을 위하여 간선변 및 가각부 등 주요 보행결정점 주변에 지정 · 침상형 공지는 지하철 연결 통로 설치 권장	· 8개소 (위치지정)	· 7개소 (위치지정)	- 쌈지형 공지 - 침상형 공지 - 감)1개소 (사유:공동개발(지정) 해제)
공공보행통로	· 보행통로 단절부 및 보행공간 확보 필요지역	· 1개소	· 1개소	- 변경없음
보차혼용통로	· 주차출입이 불가능한 대지를 위한 통로 확보	-	· 1개소 (신정동 972-6내)	- 신설(신정동 972-6내) - 폭6m, 높이6m 확보 - 972-5 주차장진출입 차로

주) 1. 특별계획구역은 별도의 계획에 따름

(다)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변경없음

(라) 교통처리 : 변경

□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 : 변경

· 간선 가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차량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이면부 차량진출입이 불가한 간선변 대지에 한하여 일부구간 허용

· 보행 편의성 제고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에 공공보행통로 지정

구 분	적용지역	계 획 내 용	비 고
차량진출입 금지구간	· 강서로변 · 신월로변	· 주요 간선도로변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지정 · 교차로에 면한 대지의 경우 교차로에서 10m 이내에 주차출입구 설치 금지 ※ 공동개발 미이행에 따른 일부 차량진출입 허용구간 지정	
공동주차 출입구	· 이면부 진출입동선계획이 불가한 간선가로변 대지	·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에 연접필지와의 경계부에 공동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주차진출입은 연접필지와 공동으로 설치하여야 함	
공공보행 통로	· 기존의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보행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 주요 가로 및 이면 주거지와의 보행흐름 연계 ·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되는 보행공간으로 지정된 폭원 이상으로 조성하여야 하며,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설치 금지 (특히, 여성 및 노약자, 장애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성)	
자전거도로 계획	· 신월로, 강서로, 복개도로변	· 지하철역, 관공서, 주요 교차로 등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망 계획의 수립 -B=1.5~2m, L=3,656m (신월로, 강서로 B=1.5m, 복개도로 B=2m)	
보차혼용 통로	· 주차출입이 불가능한 대지를 위한 통로 확보	· 보행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되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내에 조성	- 신설 1개소 (신정동 972-6내) - 폭6m, 높이6m 확보 - 972-5 주차장진출입 차로

주) 1. 공동개발 권장계획 이행시 공동주차출입구 조정 가능
2. 가림길은 향후 주변지역 개발이 완료되어 노상주차장 등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부서(양천구 교통지도과)와 협의하여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안)을 시행토록 함

라.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 변경없음

마.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4. 세부조서 및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

5. 본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천구청 균형개발과(☎2620-3513)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공고 제2017-1446호

문래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안) 열람공고

1. 총독부고시 제208호(1940.3.12.) 및 건설부고시 제172호(1982.4.28.)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94호(1985.5.3.)호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후, 서울시고시 제

2008-163호(2008.5.15.)로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된 영등포구 문래동3가 66번지 일대 문래근린공원에 대하여

2.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고자 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영 등 포 구 청 장

가. 공 원 명 : 문래근린공원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66번지 일대
다. 면 적 : 23,611㎡
라. 조성계획변경(안)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23,611.0	7,668.2	2	354.95	351.80	121	23,611.0	8,826.2	3	618.95	747.8	175	증1,158.0㎡
기반시설	소 계	3,835.3	3,835.3	-	-	-	-	4,533.4	4,533.4	-	-	-	-	증 698㎡
	도 로	(3,147.2)	(3,147.2)	-	-	-	-	(3,357.2)	(3,357.2)	-	-	-	-	증 210㎡
	광 장	(688.1)	(688.1)	-	-	-	-	(1,176.2)	(1,176.2)	-	-	-	-	증 488.1㎡
조경시설		506.6	506.6	-	-	-	6	606.2	606.2	-	-	-	5	증 99.6㎡
휴양시설		266.0	266.0	-	-	-	54	470.0	470.0	-	-	-	101	증 204㎡
유희시설		198.4	198.4	-	-	-	1	539.0	539.0	-	-	-	5	증 340.6㎡
운동시설		937.5	937.5	-	-	-	7	844.3	844.3	-	-	-	8	감 93.2㎡
교양시설		9.0	9.0	-	-	-	-	273.0	273.0	1동	264.0	396.0	-	증 264㎡
편익시설		1,595.4	1,595.4	1	35.0	35.0	-	1,240.4	1,240.4	1동	35.0	35.0	3	감 355㎡
관리시설		319.95	319.95	1	319.95	316.8	52	319.95	319.95	1동	319.95	316.80	52	-
녹지 및 기타		15,942.8	-	-			1	14,784.8	-	-	-	-	1	감 1,158.0㎡

마. 관계도서 : 열람장소에 비치
바.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로부터 14일간
사.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푸른도시과(☎2670-3758)
아. 본 공원조성계획변경(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래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가. 총괄표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66번지 일대)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비 고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동수(동)	바닥면적(㎡)	연면적(㎡)		
계		23,611.0	7,668.2	2동	354.95	351.80	121	23,611.0	8,826.2	3동	618.95	747.8	175	증 1,158.0㎡
기반시설	소 계	3,835.3	3,835.3	-	-	-	-	4,533.4	4,533.4	-	-	-	-	증 698㎡
	도 로	(3,147.2)	(3,147.2)	-	-	-	-	(3,357.2)	(3,357.2)	-	-	-	-	증 210㎡
	광 장	(688.1)	(688.1)	-	-	-	-	(1,176.2)	(1,176.2)	-	-	-	-	증 488.1㎡
조경시설		506.6	506.6	-	-	-	6	606.2	606.2	-	-	-	5	증 99.6㎡
휴양시설		266.0	266.0	-	-	-	54	470.0	470.0	-	-	-	101	증 204㎡
유희시설		198.4	198.4	-	-	-	1	539.0	539.0	-	-	-	5	증 340.6㎡
운동시설		937.5	937.5	-	-	-	7	844.3	844.3	-	-	-	8	감 93.2㎡
교양시설		9.0	9.0	-	-	-	-	273.0	273.0	1동	264.0	396.0	-	증 264㎡
편익시설		1,595.4	1,595.4	1동	35.0	35.0	-	1,240.4	1,240.4	1동	35.0	35.0	3	감 355㎡
관리시설		319.95	319.95	1동	319.95	316.8	52	319.95	319.95	1동	319.95	316.80	52	
녹지·기타		15,942.8	-	-	-	-	1	14,784.8	-	-	-	-	1	감 1,158.0㎡
공원시설율(법정 40%)		(7,668.2㎡ / 23,611.0㎡) x 100% = 32.5%						(8,826.2㎡ / 23,611㎡) x 100% = 37.38%						
공원건폐율(법정 20%)		(354.95㎡ / 23,611.0㎡) x 100% = 1.5%						(618.95㎡ / 23,611㎡) x 100% = 2.62%						

나. 시설조서(변경결정)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 계				23,611.0	7,668.2		2동	355	352	121			23,611.0	8,826.2		3동	618.95	747.80	175	증 1,158.0㎡
기반시설	소 계			3,835.3	3,835.3								4,533.4	4,533.4						증 698㎡
	도 로	-	전지역	3,147.2	3,147.2						-	전지역	3,357.2	3,357.2						증 210㎡
	광 장	가	4개소	688.1	688.1						가	5개소	1,176.2	1,176.2						증 488.1㎡
	모임광장	가-1	문래동66-3외2필지	(532.4)	(532.4)	화강석					가-1	문래동66-3외2필지	(731.5)	(731.5)	고무칩					증 199.1㎡
	진입광장	가-2	문래동66	(31.8)	(31.8)	화강석					가-2	문래동66	(31.8)	(31.8)	화강석					
	휴게광장1	가-3	문래동61	(95.0)	(95.0)	점토블럭					가-3	문래동61	(95.0)	(95.0)	점토블럭					
	휴게광장2	가-4	문래동61	(28.9)	(28.9)	점토블럭					가-4	문래동61	(28.9)	(28.9)	점토블럭					
	다목적광장										가-5	문래동66-3외2필지	(289.0)	(289.0)	소형고압블럭					신설
조경시설	소 계			506.6	506.6					6			606.2	606.2					5	증 99.6㎡
	방지습지	나	문래동66외2필지	357.0	357.0						나	문래동66외2필지	360.6	360.6						증 3.6㎡
	생태개울	다	문래동66외1필지	149.6	149.6						다	문래동66	149.6	149.6						
	막구조파고라	①	라.휴게소			STS+막				1	①	아-5.체력단련장			STS+막				1	
	조합파고라	②	가-3.휴게광장1			목재				1	②	가-3.휴게광장1			목재				1	
	팔각정자	③	문래동66			목재				1	③	라-2.휴게소			목재				1	
	사각파고라	④	가-1.모임광장			목재				1	④	라-1.휴게소			목재				1	
	목교1	⑤	문래동66			목재				1	⑤	문래동66			목재				1	
	목교2	⑥	문래동66			목재				1										폐지
	그늘시렁		문래동66-3외1필지																	폐지
	데크로드		문래동66-3외1필지								⑧	문래동66외1필지	96.0	96.0						신설
휴양시설	소 계			266.0	266.0					54			470.0	470.0					101	증 204㎡
	휴게소	라	문래동66-3외2필지	(266.0)	(266.0)	점토블럭					라	문래동66-3외2필지	349.0	349.0	점토블럭					증 83㎡
	휴게쉼터										하	4개소	121.0	121.0	점토블럭					신설
											하-1	문래동66-3	(30.0)	(30.0)	점토블럭					신설
											하-2	문래동66	(49.0)	(49.0)	점토블럭					신설
											하-3	문래동66	(21.0)	(21.0)	점토블럭					신설
											하-4	문래동66-3	(21.0)	(21.0)	점토블럭					신설
	스탠드	⑦	문래동66			석재				1										폐지

구분	시 설 명	변경전 부 호	변경전 위치	변경전 부지면적(㎡)	변경전 시설면적(㎡)	변경전 구조	변경전 규모	변경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전 건축물(㎡) 연면적	변경전 공작물(기)	변경후 부 호	변경후 위치	변경후 부지면적(㎡)	변경후 시설면적(㎡)	변경후 구조	변경후 규모	변경후 건축물(㎡) 바닥면적	변경후 건축물(㎡) 연면적	변경후 공작물(기)	비고
휴양시설	앉음벽	⑧	가-2.진입광장			목재+석재				2	⑧	가-2.진입광장			목재+석재				2	H450xW400
	조형앉음벽										㉘	문래동66외1필지			목재+석재				2	H450xW1000
	웨이브벤치	⑨	문래동60외1필지			목재+석재				9										폐지
	등의자	⑩	전지역			목재				28	⑩	전지역			목재				83	
	평의자	⑪	전지역			목재				12	⑪	전지역			목재				12	
	관찰데크	⑫	문래동74외2필지			목재				1	⑫	문래동74외1필지			목재				1	
	전망데크	⑬	문래동66외1필지			목재				1	⑬	문래동66외1필지			목재				1	
유희시설	**소 계**			**198.4**	**198.4**					**1**			**539.0**	**539.0**					**5**	증 340.6㎡
	어린이놀이터	마	문래동66외1필지	198.4	198.4	고무블럭					마	문래동60외1필지	364.0	364.0	고무칩					증 165.6㎡
	조합놀이대	⑭	마.어린이놀이터			폴리에틸렌				1										폐지
	모래놀이터										카	문래동66	175.0	175.0	모래					신설
	경사미끄럼대										㉙	마.어린이놀이터			STS+PE				2	신설
	네트오르기										㉛	마.어린이놀이터			목재+로프				1	신설
	유아미끄럼틀										㉜	마.어린이놀이터			STS+PE				1	신설
	모험놀이대										㉝	마.어린이놀이터			목재+로프				1	신설
운동시설	**소 계**			**937.5**	**937.5**					**7**			**844.3**	**844.3**					**8**	감 93.2㎡
	청소년농구장	바	문래동66-3외2필지	289.0	289.0	우레탄														폐지
	배드민턴장	사	문래동73-1	539.8	539.8	우레탄					사	문래동73-1	430.0	430.0	우레탄					감 109.8㎡
	체력단련장	아	6개소	108.7	108.7	점토블럭					아	4개소	74.3	74.3	점토블럭					감 34.4㎡
	체력단련장	아-1	문래동76-9	(18.5)	(18.5)	점토블럭					아-1	문래동76-9	(18.5)	(18.5)	점토블럭					
	체력단련장	아-2	문래동66-3	(17.7)	(17.7)	점토블럭					아-2	문래동66-3	(17.7)	(17.7)	점토블럭					
	체력단련장	아-3	문래동74	(18.6)	(18.6)	점토블럭					아-3	문래동74	(18.6)	(18.6)	점토블럭					
	체력단련장	아-4	문래동66	(18.8)	(18.8)	점토블럭					아-4	문래동66-3	(19.5)	(19.5)	점토블럭					증 0.7㎡
	체력단련장	아-5	문래동66	(17.0)	(17.0)	점토블럭														폐지
	체력단련장	아-6	문래동73-1	(18.1)	(18.1)	점토블럭														폐지
	농구대	⑮	바.청소년농구장			철재				1										폐지
	오버턴스트레칭	⑯	아-1.체력단련장			철재				1	⑯	아-4.체력단련장			철재				1	
	체어웨이트	⑰	아-2.체력단련장			철재				1	⑰	아-2.체력단련장			철재				1	
	트리플트위스트	⑱	아-3.체력단련장			철재				1	⑱	아-1.체력단련장			철재				2	

구분	시설명	변경전									변경후									비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구조	규모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운동시설	크로스컨트리	㉖	아-4.체력단련장			철재				1	㉖	아-1.체력단련장			철재				1	
	트윈바디싱업	㉑	아-5.체력단련장			철재				1	㉑	아-2.체력단련장			철재				2	
	트윈위빙암	㉕	아-6.체력단련장			철재				1	㉗	아-3.체력단련장			철재				1	
	게이트볼장										타	문래동60-1외2필지	340.0	340.0	인조잔디					신설
교양시설	**소 계**			**9.0**	**9.0**								**273.0**	**273.0**		**1동**	**264.00**	**396.00**		증 264㎡
	동상	자	문래동73-1	9.0	9.0	박정희대통령상					자	문래동73-1	9.0	9.0	박정희대통령상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자									3	문래동60-2	264.0	264.0	박정희대통령상	1동	264.0	396.0		신설
편익시설	**소 계**			**1,595.4**	**1,595.4**		**1동**	**35**	**35**				**1,240.4**	**1,240.4**		**1동**	**35**	**35**	**3**	감 355㎡
	주차장(기존)	차	문래동60-2외4필지	1,520.0	1,520.0	아스콘					차	문래동60-2외4필지	1,154.0	1,154.0	아스콘					감 366㎡
	화장실	1	문래동60-2	75.4	75.4	슬라브위조적조	1동	35	35		1	문래동60-2	75.4	75.4	슬라브위조적조	1동	35	35		
	음수장										파	2개소	11.0	11.0						신설
											파-1	카.모래놀이터	7.0	7.0						신설
											파-2	문래동73-1	4.0	4.0						신설
	음수대										㉔				석재				3	
관리시설	**소 계**			**319.95**	**319.95**		**1동**	**319.95**	**316.80**	**52**			**319.95**	**319.95**		**1동**	**319.95**	**316.80**	**52**	
	관리사무소	2	문래동73-1	319.95	319.95	목재+아스팔트싱글	1동	319.95	316.80		2	문래동73-1	319.95	319.95	목재+아스팔트싱글	1동	319.95	316.80		
	종합안내판	㉘	문래동61			목재				1	㉘	문래동61			목재				1	
	조명등		전지역			STS				36		전지역			STS				36	
	휴지통	㉔	전지역			목재				5	㉔	전지역			목재				5	
	표지판																			폐지
	동상보호책					철재									철재					
	볼라드	㉙	문래동66-3외2필지			석재				9	㉙	문래동66-3외2필지			석재				9	
	조형담장	㉚	문래동74외1필지			석재				1	㉚	문래동74외1필지			석재				1	
녹지및기타시설	**소 계**			**15,942.8**						**1**			**14,784.8**						**1**	감 1,158.0㎡
	녹지		전지역	15,942.8								전지역	14,784.8							감 1,158.0㎡
	물레상징조형물	㉒	문래동74			목재				1	㉒	문래동74			목재				1	

다. 도로조서(변경결정)

구 분	등 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합계				1,326.3	3,147.2				
변경					**1,389.3**	**3,357.2**				
당초	소로	계			579.3	1,279.7				
변경					**483.0**	**928.0**				
당초		1	1	12.0	14.0	168.0	주진입로	서측경계부	가-1.모임광장	
폐지		**1**	**1**							
당초		2	1	9.0	18.5	166.5	주진입로	동측경계부	가-1.모임광장	
폐지		**2**	**1**							
당초		3	1	7.0	8.0	56.0	부진입로	동측경계부	산책로1	
변경		**3**	**1**	**7.0**	**8.5**	**59.5**	**부진입로**	**동측경계부**	**산책로1**	
당초		3	2	2.5	25.5	63.8	산책로	산책로5	산책로4	
변경		**3**	**2**	**3.0**	**21.0**	**63.0**	**산책로**	**산책로5**	**산책로4**	
당초		3	3	2.5	20.0	50.0	연결로	산책로5	소로3-4	
변경		**3**	**3**	**2.5**	**2.0**	**5.0**	**연결로**	**소로3-21**	**소로3-4**	
당초		3	4	2.0	35.0	70.0	연결로	산책로4	산책로4	
변경		**3**	**4**	**2.5**	**73.0**	**182.5**	**연결로**	**산책로4**	**산책로4**	
당초		3	5	2.0	5.0	10.0	연결로	산책로5	산책로4	
변경		**3**	**5**	**2.0**	**36.0**	**72.0**	**산책로**	**산책로5**	**산책로4**	
당초		3	6	2.0	10.0	20.0	부진입로	가-2.진입광장	산책로5	
변경		**3**	**6**	**2.0**	**5.0**	**10.0**	**산책로**	**가-2.진입광장**	**산책로5**	
당초		3	7	1.5	69.0	103.5	산책로	동측경계부	산책로5	
변경		**3**	**7**	**3.2**	**15.0**	**48.0**	**산책로**	**동측경계부**	**산책로5**	
당초		3	8	1.5	66.7	100.1	산책로	소로3-3	산책로5	
변경		**3**	**8**	**1.5**	**8.5**	**12.8**	**산책로**	**소로3-9**	**산책로5**	
당초		3	9	1.5	36.0	54.0	연결로	소로3-4	소로3-8	
변경		**3**	**9**	**1.5**	**32.5**	**48.8**	**연결로**	**소로3-4**	**소로3-2**	
당초		3	10	1.5	49.0	73.5	산책로	소로2-1	바.청소년농구장	
변경		**3**	**10**	**1.5**	**44.0**	**66.0**	**산책로**	**가.모임광장**	**바.청소년농구장**	
당초		3	11	1.5	14.0	21.0	연결로	소로3-12	라.휴게소	
변경		**3**	**11**	**1.5**	**15.0**	**22.5**	**연결로**	**소로3-14**	**소로3-15**	

구 분	등 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당초	소로	3	12	1.5	41.5	62.3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1	
변경		**3**	**12**	**1.5**	**33.0**	**49.5**	**산책로**	**산책로2**	**산책로1**	
당초		3	13	1.5	5.0	7.5	연결로	산책로1	소로3-11	
폐지		**3**	**13**							
당초		3	14	1.5	28.5	42.8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1	
변경		**3**	**14**	**1.5**	**53.3**	**80.0**	**산책로**	**산책로1**	**아-5.체력단련장**	
당초		3	15	1.5	20.0	30.0	산책로	소로3-14	산책로1	
변경		**3**	**15**	**1.5**	**51.0**	**76.5**	**산책로**	**소로3-12**	**아-5.체력단련장**	
당초		3	16	1.5	33.0	49.5	연결로	가-4.휴게광장2	소로3-21	
변경		**3**	**16**	**1.5**	**27.5**	**41.3**	**산책로**	**가-4.휴게광장2**	**소로3-19**	
당초		3	17	1.5	16.5	24.8	연결로	소로3-21	가-3.휴게광장1	
변경		**3**	**17**	**1.5**	**20.0**	**30.0**	**산책로**	**소로3-19**	**가-3.휴게광장1**	
당초		3	18	1.5	16.0	24.0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4	
폐지		**3**	**18**							
당초		3	19	1.5	37.5	56.3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2	
변경		**3**	**19**	**1.5**	**33.5**	**50.3**	**산책로**	**산책로1**	**산책로2**	
당초		3	20	2.5	10.6	26.4	산책로	산책로5	사.배드민턴장	
폐지		**3**	**20**							
신설		**3**	**21**	**2.5**	**4.2**	**10.5**	연결로	**산책로1**	**소로3-3**	
당초	산책로	계			747.0	1,867.5				
변경					**906.3**	**2,429.2**				
당초			1	2.5	158.5	396.3	산책로	1.화장실	소로2-1	
변경			**1**	**2.5**	**168.5**	**421.3**	**산책로**	**차.주차장**	**가-1.모임광장**	
당초			2	2.5	150.5	376.3	산책로	차.주차장	바.청소년농구장	
당초			3	2.5	9.0	22.5	산책로	바.청소년농구장	소로1-1	
변경			**3**	**2.5**	**9.5**	**23.8**	**산책로**	**바.청소년농구장**	**가-1.모임광장**	
당초			4	2.5	197.0	492.5	산책로	소로1-1	2.관리사무소	
변경			**4**	**3.0**	**201.0**	**603.0**	**산책로**	**가-1.모임광장**	**산책로5**	
당초			5	2.5	232.0	580.0	산책로	2.관리사무소	소로2-1	
변경			**5**	**3.0**	**208.0**	**624.0**	**산책로**	**가-1.모임광장**	**북측경계부**	
신설			**6**	**2.0**	**21.5**	**43.0**	**산책로**	**산책로5**	**산책로7**	
신설			**7**	**1.5**	**49.0**	**73.5**	**산책로**	**산책로6**	**산책로6**	

구 분	등 급	류별	번호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기 능	기 점	종 점	비 고
신설	산책로		8	2.0	1.5	3.0	산책로	산책로5	산책로7	
신설			9	2.0	15.5	31.0	산책로	산책로7	소로3-7	
신설			10	3.0	14.5	43.5	산책로	산책로5	2.관리사무소	
신설			11	4.0	28.0	112.0	산책로	산책로12	산책로12	
신설			12	2.0	3.5	7.0	산책로	산책로5	산책로11	
신설			13	1.5	10.0	15.0	산책로	소로3-2	산책로11	
신설			14	1.5	5.3	8.0	산책로	산책로4	산책로11	
신설			15	1.2	12.5	15.0	산책로	산책로4	서측경계부	
신설			16	4.0	7.5	30.0	산책로	산책로1	소로3-10	

조성계획도(변경전)

문래근린공원



■ 범 례



조성계획도(변경후)

문래근린공원



■ 범 례



◈ 금천구고시 제2017-1197호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71호(2013.7.2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되고 금천구 고시 제2016-59호(2016.8.9.)호, 제2017-1(2017.1.2.)호로 실시계획인가 및 조성완료된 금나래중앙근린공원에 대하여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금 천 구 청 장

1. 열람기간 : 2017. 10. 19. ~ 2017. 11. 2(14일간)
2. 열람장소 : 금천구청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2627-1653~5)
3. 주요내용
   가. 사업시행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1151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 명 칭 : 금나래중앙근린공원
   다. 사업의 규모 및 내용
      - 면 적 : 16,331.3㎡
      - 내 용 : 금나래중앙근린공원내 교양시설(조형물) 설치하여 이용주민의 문화예술활동 증진 및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교양시설 104.65㎡ ⇒ 1,012.65㎡ (조형물, 증 908㎡)
        · 기반시설 2,562.47㎡ ⇒ 2,579.87㎡ (도로, 증 17.4㎡)
        · 녹 지 11,392.96㎡ ⇒ 10,467.56㎡ (감 925.4㎡)
4. 관련도서 : 별첨(공원녹지과에 비치)
5. 의견제출 및 처리계획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열람기간내 금천구청 공원녹지과(02-2627-1653)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나래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1. 총 괄 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동수 (동)	바닥면적 (㎡)	연면적 (㎡)		
계		16,331.30	4,938.34	2	264.00	264.00	93	16,331.30	5,863.74	2	264	264.65	93	부지면적 증) 925.4㎡
기반시설	소 계	4,321.26	4,321.26				-	4,338.66	4,338.66				-	증) 17.4㎡
	도로	2,562.47	2,562.47				-	2,579.87	2,579.87				-	증) 17.4㎡
	광 장	1,758.79	1,758.79					2,074.69	2,074.69					
조경시설		54.98	54.98					54.98	54.98					
휴양시설		191.06	191.06				38	191.06	191.06				38	
운동시설		46.00	46.00				6	46.00	46.00				6	
교양시설		104.65	104.65	1	104.65	104.65		1,012.65	1,012.65	1	104.65	104.65		증) 908㎡
관리시설		182.40	182.40	1	159.35	159.35	2	395.91	395.91	1	159.35	159.35	2	
편익시설		37.99	37.99				47	37.99	37.99				47	
녹지 및 기타		11.392.96	-				-	10,467.56	-				-	감) 925.4㎡
시 설 율 (제한 없음)		(4,938.34/ 16,331.3) × 100 = 30.24 %						(5,864.74/ 16,331.3) × 100 = 35.91 %						
건 폐 율 (법정 20%)		(264.00 / 16,331.3) × 100 = 2.67 %						(264.00 / 16,331.3) × 100 = 2.67 %						

2. 시설조서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바닥면적	건축물(㎡) 연면적	공작물(기)	
합 계				16,331.30	4,938.34	264.0	264.0	93			16,331.30	5,863.74	264.00	264.00	93	시설율 35.91%
기반시설	소계			4,321.26	4,321.26						4,338.66	4,338.66				증 17.4
	도로		전지역	2,562.47	2,562.47					전지역	2,579.87	2,579.87				증 17.4
	광장	가-1		883.49	883.49				가-1		883.49	883.49				
		가-2		427.18	427.18				가-2		427.18	427.18				
		가-3		264.00	264.00				가-3		264.00	264.00				
		가-4		82.55	82.55				가-4		82.55	82.55				
		가-5		101.57	101.57				가-5		101.57	101.57				
조경시설	소계			54.98							110.50	110.50				
	폰드	나-1		42.00	42.00				나-1		205.40	205.40				
		나-2		12.98	12.98				나-2		54.98	54.98				
휴양시설	소계			191.06	191.06			38			42.00	42.00			38	
	휴게소	다-1		71.06	71.06				다-1		12.98	12.98				
		다-2		16.00	16.00				다-2		191.06	191.06				
		다-3		16.00	16.00				다-3		71.06	71.06				
		다-4		16.00	16.00				다-4		16.00	16.00				
	데크	다-5		72.00	72.00				다-5		16.00	16.00				
	파고라	①	전지역					1	①	전지역	16.00	16.00			1	
	앉음벽	②	전지역					28	②	전지역	72.00	72.00			28	
	등의자	③	전지역					9	③	전지역					9	
운동시설	소계			46.00	46.00			6			46.00	46.00			6	
	체력단련장	라		46.00	46.00				라		46.00	46.00				
	크로스컨트리	④	라					1	④	라					1	
	롤링웨이스트	⑤	라					1	⑤	라					1	
	트윈워밍암	⑥	라					1	⑥	라					1	
	체어웨이트	⑦	라					1	⑦	라					1	
	트윈트위스트	⑧	라					1	⑧	라					1	
	좌식사이클	⑨	라					1	⑨	라					1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부호	위치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바닥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교양시설	소계			104.65	104.65	104.65	104.65				1,012.65	1,012.65	104.65	104.65		
	커뮤니티센터	마		104.65	104.65	104.65	104.65		마		104.65	104.65	104.65	104.65		건폐율 1.48%
	조 형 물	마-1							마-1		908	908				
편익시설	소계			182.40	182.40	159.35	159.35	2			182.40	182.40	159.35	159.35	2	
	화장실/관리실	바-1		159.35	159.35	159.35	159.35		바-1		159.35	159.35	159.35	159.35		건폐율1.19%
	계단	바-2		11.39	11.39				바-2		11.39	11.39				
		바-3		4.05	4.05				바-3		4.05	4.05				
		바-4		4.03	4.03				바-4		4.03	4.03				
	자전거보관대	⑩						1	⑩						1	
	음수대	⑪		3.58	3.58			1	⑪		3.58	3.58			1	
관리시설	소계			37.99	37.99			47			37.99	37.99			47	
	공원등		⑫					34		⑫					34	
	CCTV		⑬					4		⑬					4	
	폴리		⑭	37.99	37.99			9		⑭	37.99	37.99			9	
녹지 및 기타				11,392.96							10,467.56					감 925.4

◈ 서초구공고 제2017-1302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재 열람공고

1. 서초구 잠원동 66-2 일대 도시계획시설(학교) 폐지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과 관련하여 2017년 제15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7.9.27.)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 초 구 청 장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잠원동 66-2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초구 잠원동 66-2 외 1	-	증)13,176.9	13,176.9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나)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학교	초등학교	강남구 잠원동 66-2 외 1	13,176.9	감)13,176.9	-	1983.7.5. (서울시고시 제336호)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 참조)

나. 열람기간 : 2017.10.19.~2017.11.2.(14일간)

다. 열람장소 : 서초구청 도시계획과(☎2155-6785)

라. 관련도서 : 게재 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9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장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계내 한강 (가양대교, 행주대교)	선박 2척	가양대교, 행주대교 정밀안전진단	2017.10.16.~ 2017.11.17.	2017. 10.1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7-19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한강사업본부장 (수상안전과)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서울시계내 한강(광나루 등 9개소)	3,665㎡	관공선 사무실, 선착장 및 한강아라호 임시 선착장	2017.10.25.~ 2020.10.24.	2017. 10.13.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19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12층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원
   - 면 적 : <당초> 영구 14,266㎡, 일시 1,096㎡
     <변경> 영구 17,393㎡, 일시 1,616㎡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올림픽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및 여의교 확장공사
   - 내 역 :

당 초
○ 올림픽 대로~여의도간 진입램프 – 여의도 진입램프 : L=712.6m(교량 L=235.0m, 옹벽 L=477.6m), B=6.4m – 올림픽대로 이설 : L=980m(1개 차로 추가 확보) ○ 여의교 확장공사 – 여의교 기존교량 확장 : 차로폭 8차로 → 9차로 – 보도교 신설 : 연장 240m, 폭 4.6~5.2m(보도폭 : 4.0m) * 기존교량과 분리된 독립보도교 형식
변 경
○ 상동 ○ 올림픽대로 이설 : L=980m(1개 차로 추가 확보)옹벽 L=710m – 공사중 임시보도육교 2개소

5. 점용기간(공사기간) : 허가일~영구(허가일~2019.10.3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7-220호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실시계획(변경)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 주 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귀곡동 555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당인동 312-2번지 일원(312, 312-1, 312-2번지)
   - 면 적 : 1,269㎡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발전소 기자재 운송을 위한 임시 선착장 및 가설도로 설치
   - 내 역 : · 임시 선착장(지주 H-Pile, 보받침 H-Beam, 주형보 I-Beam) : B=8m, L=10m
     · 가도설치 B=8m, L=53.89m 등
5. 공사기간 : <당초>2015.09.30.~2017.03.31.
   <변경>2015.09.30.~2017.12.31.

정 정

◈ 정 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63호

서울시보 제3430호(2017.10.10.)에 게재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의 내용에 오류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017년 10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정정 전】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02-2133-7232) 및 각 자치구 해당과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자치구 열람부서

구역명	구 별	열람부서	연락처	주 소
충정로1구역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330-1556	서대문구 연희로 248
동선4구역	성북구	주거정비과	2241-2873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3구역	종로구	주거정비과	2241-2875	성북구 보문로 168

【정정 후】

4.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02-2133-7232) 및 각 자치구 해당과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자치구 열람부서

구역명	구 별	열람부서	연락처	주 소
충정로1구역	서대문구	도시재정비과	330-1556	서대문구 연희로 248
동선1구역	성북구	주거정비과	2241-2873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3구역	**성북구**	주거정비과	2241-2875	성북구 보문로 168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람

공람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시민소통기획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02-2133-6441 **문의 : ☎120**